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789-01
연구보고	2016-44

연구보고
2016-44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2016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6-44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2016. 12.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치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여성가족부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스토킹·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며,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해 그 피해가 지속된다. 2013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스톱킹 피해자 중 가해자에게 2회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66.7%로 그 피해가 1회에 그친 경우의 두 배를 웃돌았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분석 결과, 스톱킹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피해자와 과거 데이트를 했던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스톱킹이 심해지면서 스톱킹·데이트 폭력을 막을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스톱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2012년 3월 전면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는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포제 아래 스톱킹을 하는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을 내리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피해가 발생한 뒤 형사처벌만 내릴 수 있도록 해 스톱킹·데이트 폭력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 처벌이 가벼워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하고, 더 강력한 2차 범행이 발생할 위험도 안고 있다. 스톱킹·데이트 폭력이 형법상 폭행(제260조), 협박(제283조), 주거침입(제317조)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도 법을 집행할 시점에는 피해자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과 관련된 폭력을 막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고 관련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하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스톱킹·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스톱킹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고, 전국 모든 경찰서에 데이트 폭력을 막기 위한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만드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 역시 스톱킹·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근본적으로 여성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스톱킹·데이트 폭력의 실태와 특징, 관련법과 외국 입법례를 분석하고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을 위한 제도적·법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첫째, 스토킹·데이트 폭력의 실태와 추이, 특징을 검찰청 및 전국 상담소에서 발행한 통계 및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둘째, 형법 각칙, 특별형법,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스토킹·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현행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스토킹·데이트 폭력 수사 관계자들을 심층 면접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대한 조치 경험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 관련 지원 경험과 지원상 어려움을 파악한다.

셋째, 영국, 미국, 독일 등 외국의 스토킹·데이트 폭력 관련 입법례를 살펴본다. 이들 국가에서 스토킹의 개념, 주관적 구성요건,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비교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기존의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와 지원 현황,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가해자 처벌안과 재범 방지 방안을 탐색한다.

끝으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할 법제 정비 방안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이후 스토킹 범죄 처벌,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정안 시안을 제시한다.

II. 스토킹·데이트 폭력 실태 및 특징

1. 스토킹·데이트 폭력 발생 실태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상담 중 데이트 폭력에 대한 상담이 2007년 27.7%에서 2014년 40.5%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9월 시행한 온라인 조사 결과에서 ‘데이트 관계에서 일정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여성 응답자(1,017명)의 61.6%(6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서도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41호)」에 의해 처벌된 사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약 300여건을 웃도는

수준이고, 2016년은 7월 현재 검거수가 300여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 중 연인사이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수도 2006년 6,970명에서 2010년 7,881명으로 증가했다. 이 통계는 2010년 이후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2014년 7,474명)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연인간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살인, 폭행, 상해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미루어볼 때, 전반적으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범죄에 대한 의식 역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현황

「경범죄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의 신고비율도 매우 낮았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4.8%에 불과했으며, 신고를 했을 때도 경찰이 사건을 사소한 일로 취급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53.3%). 또한 소극적으로 수사하거나(33.3%) 가해자와 합의를 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10%)고 응답한 이들도 많았다.

3.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유형

스토킹 가해자들의 폭력 유형은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정서적 폭력(폭언, 협박, 위협적 분위기 조성 등)을 한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이 그 뒤를 이었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크게 심리적 피해, 사회적 피해, 신체적 피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피해자들은 우울감, 무력감을 느끼거나 대인관계를 기피하기도 하고, 상해를 입어 건강과 생명이 훼손되거나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4. 스토킹·데이트 폭력의 특징

스토킹·데이트 폭력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가해자 다수가 남성,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폭력은 대부분 (전)애인, (전)배우자, 직장 관계자 등에서 나타났다. 이는 스토킹이 주로 친밀하거나 안면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연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이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인에게 폭력 범죄를 행한 이들 중 전과자 비율(76.6%)이 비전과자(23.3%)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III. 스토킹·데이트 폭력 대응 현행 법제 현황 및 한계

1. 형사법적 적용 가능성 및 한계

가. 형법 각칙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개별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형태에 따라 형법상의 협박죄(제283조), 특수협박죄(제284조), 명예훼손죄(제307조) 등 폭력행위와 관련된 여러 범죄구성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스토킹은 행위태양이 점점 강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살해, 폭력 등의 전 단계에서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현재는 가해자가 폭행, 주거침입, 강간, 살인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야 형사처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더구나 가해자에게 협박죄 또는 상해죄를 적용하려면 협박, 상해의 고의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단순한 괴롭힘으로는 범죄의 성립이 불가능해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현행 형법 각칙에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나. 특별형법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한계

이 법률의 제74조(벌칙) 제1항3호는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게 해 다양한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과 한계

이 법의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법은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킨다는 목적을 요구하고,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만을 처벌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과 한계

이 법의 제2조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3호에서 가정폭력범죄를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가해자가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족구성원이더라도 제2조제3호의 죄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벌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 발생한 데이트 폭력의 경우,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방치돼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 「경범죄처벌법」 적용과 한계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2012년 3월 21일 전부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토킹 관련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의 제3조제41호에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따라다니기·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불안감을 느꼈더라도 명시적 거절의사 표현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규정을 어기더라도 범칙금이 8만원에 불과한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2. 경찰법적 적용 가능성 및 한계

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이 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구호대상자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한 상태, 자살을 시도하거나 미아, 병자, 부상자일 경우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해자의 행위를 막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도 현장에서 스토킹 관련 상황이 끝났다

면 관계인에게 경고·제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힘들다. 상황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현행 법률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긴급임시조치에 따라, 경찰관은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건넌방)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임시조치는 가해자가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IV. 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한 관련 법제도의 적용 현황 및 한계

1. 심층면접 방법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 7명과 수사기관 관계자인 경찰 3명을 심층면접해 스토킹·데이트 폭력 관련 수사와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향후 관련 법을 만들 때 검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의견을 들었다.

2. 수사기관 관계자 심층면접 결과

가. 스토킹·데이트 폭력 관련 대응 현황

스토킹은 형사법적 근거가 없어 주로 지구대/파출소에서 다뤄지고 있다. 112에 신고하면 지역경찰이 출동 후 사건을 파악하고, 현행범이 아니면 상담조치, 현장귀가, 즉심 청구(즉심심판)나 경범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나. 현행 제도의 한계: 법적 근거 미비의 문제점

형법상 범죄명에 해당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위태양별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행위가 형법상 폭행, 상해, 협박 등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보통신법이나

경범죄법 등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이렇다보니 피해자를 위한 신변보호조치도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뿐, 사법적 조치를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스토킹이 경범죄상 과태료 수준의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점도 가해자의 재범을 막기에는 부족하다. 더불어 관련 통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 스토킹·데이트 폭력 관련 대응이 필요한 이유

기존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도 형사처벌을 내리기 어려운 단계에서는 개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스토킹·데이트 폭력은 방치할 경우 그 강도가 점점 세질 수 있어 경미한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상대방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범죄 재발 가능성이 크다는 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범죄 초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현재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경우, 재범이 발생해도 누범적용이 안 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라. 향후 법제 정비 방향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을 하나의 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데이트 폭력은 주로 이별폭력에서 발생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매달리다가 분노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된다. 이때 개입해서 막지 않으면 살인, 감금, 협박 등의 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초기에 행위 자체만 보면 다른 범죄에 비해 사소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형사처벌보다는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가해자를 제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 심층면접 결과

가. 현행 대응체계의 문제점

경찰에서 스토킹을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여기거나 자세히 파악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스토킹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도 한계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성폭력피해상담소 업무에 포함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지원은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다.

나. 스토킹·데이트 폭력 관련 법 제정 필요성

스토킹 피해자들은 물리적 폭력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상을 감시당한다는 사실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경범죄상 과태료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 형법, 성폭력 관련법 등이 포괄하지 못하는 가해행위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강력한 경고와 피해자 신변보호를 통해 더욱 심각한 범죄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다. 법률 제정 관련 쟁점

첫째, 스토킹은 행위 유형이 다양할 수 있어 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때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상의 스토킹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스토킹을 정의할 때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없도록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항목을 ‘동의 없이’라고 명명해야 한다.

셋째, 스토킹은 재범률이 높고 가해자 처벌이 가벼울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재범 방지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

넷째, 스토킹 범죄는 접근금지, 분리, 격리, 초기응급조치가 핵심으로 경찰의 태도가 재발 여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찰관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스토킹 행위자가 친밀한 관계인 경우, 개인정보를 활용한 스토킹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전달체계를 활용·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일곱째, 피해자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상담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여덟째, 기존 여성폭력 관련 법률의 하위법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존 법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V. 스토킹·데이트 폭력 관련 외국의 입법례 분석

1. 각국의 스토킹 규제 관련법의 일반적 특징

가. 스토킹 개념의 포괄성과 그 적용상의 한계

스토킹의 구체적인 개념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련의 행위’나 ‘반복적 행위’ 등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전제한다는 점은 같다. 또한 괴롭힘(Harassment)이나 쫓아다님(Pursuit)처럼 개방적인 개념을 사용해 스토킹의 다양한 양상으로 모두 포괄하려는 점도 비슷하다. 특히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은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를 열거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대부분의 주처럼 관련법을 스토킹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다.

반면, 스토킹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가들의 경우 경찰 조사단계부터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판단해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거나 이를 근거로 처벌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입법 유형의 차이: 형법에 의한 규제와 특별법에 의한 규제

각국의 스토킹에 대한 법적 규제 방식은 크게 형법에 의한 규제와 특별법에 의한 규제 두 가지로 나뉜다. 많은 국가에서는 기존 형법에 스토킹 관련 조항을 새로 도입해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영국과 일본, 아일랜드처럼 따로 특별법을 제정해 스토킹의 정의나 처벌, 스토킹 피해나 피해자 보호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도 있다.

다. 피해 결과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포함하는가의 여부

스토킹의 경우 거동범(學動犯)으로 접근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다. 거동범은 ‘일정한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는 요구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미국의 많은 주들, 캐나다, 호주 대부분의 주 등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주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일정한 행위만으로 스토킹 여부를 판단한다. 반면, 독일과 아일랜드, 폴란드는 가해자의 행위 외에도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스토킹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제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찰이나 기타 사법기관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 가해자의 의도 판단 여부

스토킹 여부를 판단할 때, 고의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는지 반영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다. 미국 29개주, 콜롬비아 특별구,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인정할 때 행위자의 스토킹 의지를 고려한다. 이와 달리 한국, 독일 등은 고의 정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스토킹 행위 자체가 특정한 목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전제됐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행위자의 의지적 요소를 스토킹 행위 그 자체와 분리해서 보지 않는다. 영국, 몰타, 아일랜드는 스토킹 행위의 과실여부를 고려해 과실범까지 처벌한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고의 정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의 유용성을 살펴볼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마. 친고죄 여부

일본, 벨기에, 룩셈부르크, 헝가리, 폴란드, 네덜란드는 스토킹을 친고죄로 규정한다. 독일은 특별한 공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Relatives Antragsdelikt) 형태를 갖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고소와 직권에 의한 기소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경고를 경찰에 요청해야 하지만, 경고 이후에도 가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와 영국의 모든 스토킹 범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

바. 형량의 범위

스토킹에 대한 최대형량은 3개월에서 10년 이상까지 다양하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단일한 형량을 정하는 경우,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을 나누어 형을 달리 정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 피해자의 보호

미국의 경우, 사법관은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장에 기반해 피해자에 대한 급박하고

현존하는 스토킹 위협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피해자는 법원에 이 명령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호주는 스토킹 처벌 규정 외에, 거의 예외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본래 가정폭력사건을 막기 위해 마련됐던 보호명령제도를 스토킹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단일한 법률에 의거해 관할 형사법원에서 접근금지의 민사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스토킹 사례에 대처하는 방식을 기술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스토킹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위협방지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함께 규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에 대한 경고를 구하는 신청을 할 경우, 경찰행정청은 행위의 반복을 금지하는 취지의 경고를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공안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해자에 대해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행위의 반복을 금지하는 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해자가 경고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공안위원회가 행위의 반복을 금지하는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독일에서는 각 주의 경찰작용법에 따라 피해자가 위협 방지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협방지’라는 보호법익에 근거해 범죄 발생 전 단계에서 주경찰법상의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스토킹에게 일정기간 특정 장소에 체류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또 경찰은 스토킹이 피해자 주거에 대기하거나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퇴거 명령과 퇴거 명령을 내린 지역으로 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스토킹 규제 관련 각국의 입법례

가. 미국

미국은 스토킹을 범죄화한 최초의 국가다. 캘리포니아주를 최초로 스토킹 금지법을 제정한 뒤 1993년까지 미국의 50개주에서 스토킹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입법화했다.

캘리포니아주 형법은 “괴롭힘”, “일련의 행위”, “믿을 만한 위협”, “전자통신기기” 등의 개념과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에 대해 규정한다. 「형법」 제653조는 전화나 전자통신장비를 통해 외설적인 언사를 하거나 반복적인 전화, 접촉 등을 하는 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스토킹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민법에도 그대로 원용되고 있다.

한편, 미시간 주의 스토킹 방지법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을 지닌 스토킹 방지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형법을 통해 오프라인과 사이버 스토킹을 모두 규제하고 있다.

나. 호주

호주 퀸스랜드에서는 고의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2회 이상 혹은 1회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한다. 공익을 목적으로 행해진 노사관계, 정치논쟁 혹은 공적인 논쟁이나 합법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적어도 2회 이상,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본다. 또한 가해자가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다. 영국

영국은 1997년 제정된 「괴롭힘 방지법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에서 스토킹을 규율하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사람에 대한 괴롭힘과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두 번 이상 반복되어야 하며, 언어적인 괴롭힘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법은 스토킹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 11월 스토킹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라. 일본

일본에서는 2000년 5월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해 그해 11월부터 시행했다. 이 법률은 스토킹 행위의 처벌요건과 피해자의 원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스토킹 행위를 “따라다니기 등 행위”와 “스토커 행위”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다른 대응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나도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2013년 스토킹 규제법 금지 행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원치 않는 전자메일을 보내는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되는 등 규제 범위와 피해자 보호 범위가 넓어졌다.

마. 독일

독일은 2004년 논의를 시작한 ‘스토킹 방지법’안에 기초해, 형법 개정을 통해서 2007년 「스토킹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을 제정했다. 개정된 형법에 따라 물리적 접근, 전기통신수단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제삼자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는 행위 등을 집요하게 행해 타인의 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면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건강침해의 위협이 있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반적인 스토킹은 친고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만 소추가 가능하도록 구성해 놓고 있다. 형사소추기관이 특별한 공익에 의해 직권으로 형사소추를 하는 것이 허용된 때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바. 기타 국가

이 밖에도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체코공화국, 폴란드는 각국의 형법 규정에 따라 스토킹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3. 데이트 폭력 관련 각국의 입법례

가. 미국

미국은 1994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통해 데이트 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에 적용하던 ‘보호명령(Protection Order)’제도를 스토킹 행위나 데이트 폭력에도 확대 적용하면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주력해왔다.

미국에서 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보호명령(Domestic Protection Orders), 스토킹/괴롭힘 보호명령(Stalking/Harassment Protection Orders), 성폭행피해자 보호명령(Sexual assault Victim Protection Orders)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스토킹, 성폭력, 성희롱 등에 대한 보호처분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가 증명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스토킹 행위가 이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은 1회 이상의 성폭행 피해 경험이 발생했어야 한다.

나. 영국

영국은 남자친구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가정폭력 정보공개제도(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일명 클레어법(Clare’s Law)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데이트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전과기록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데 있다. 정보공개는 기초조사-대면면담-종합위협성 심사 등의 단계를 거친 후, 지역정보공개결정위원회(The Local Decision-making Forum)의 심의를 거쳐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뤄진다.

다. 일본

일본은 가정 내의 폭력 또한 범죄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2001년 「DV(Domestic Violence)방지법」을 시행했고, 이후 2004년, 2007년, 2013년 총 세 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이 개정을 통해 폭력의 유형을 신체적 폭력에서 정신적, 성적 폭력으로 확대하고 경제적 폭력, 자녀를 이용한 폭력도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고려했다. 또한 폭력뿐만 아니라 협박 행위도 보호 명령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가해자의 직접적 접근은 물론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사용해 접근하는 행위도 접근금지 명령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의 범위에 데이트 상대까지도 포함시켜 가정폭력 방지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VI.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

1.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과 문제점

현행법 하에서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은 「경범죄처벌법」, 형법 등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는 경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고, 그 외의 행위는 형법 및 기타 특별 형법에서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나 가정폭력으로 분류될 때만 각 법률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스토킹·데이트 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시설이 제한적이고 그 보호가 일시적이라는 점, 스토킹 행위가 「범죄신고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가해자의 정보를 필요한 만큼 얻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에도 근거 규정이

미비해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가. 상담소 및 보호·지원시설

스토킹에 대한 규제와 연구가 초창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스토킹·데이트 폭력 특별법을 마련하는 초기에는 기존의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산발적으로 운영됐을 때 발생할 문제를 고려해 최소한 중앙센터를 한 곳이라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만하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스토킹 상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스토킹 관련 정책의 마련 등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정보가 추가로 제공돼, 더 강력한 2차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관련 특별법을 만들 때는 현행 「범죄신고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측 변호인의 피해자 신분관리카드 열람, 신고자나 친족 등의 보복 우려 상황에만 열람을 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더욱 제한할 필요가 있다. 보복 우려를 배제하고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승낙, 위험성 평가 등 별도의 열람 허가 기준을 마련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신변안전조치

스토킹 신고 뒤 응급조치 외에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스토킹은 지속되는 행위의 특성상 스토킹 신고자는 물론, 직접적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 따라서 신고자 외에 피해자에게도 신변안전조치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스토킹 규제는 행위자의 지속적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신고 이

후 피해자가 안전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의 진행 상황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추가 요건 없이 피해자가 원한다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마.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보호 및 지원

신뢰관계인 동석, 화상증언, 차폐시설을 이용한 증언 등 현행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이 규정하는 조치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원활한 진술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스토킹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의 대면에서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감안해 보호 및 지원 조치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

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스토킹은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하거나, 직장 외 관계라도 상대방이 피해자의 직장과 관련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스토킹 그 자체뿐만 아니라 스토킹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성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방지법」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스토킹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Ⅶ.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벌 방안

1. 가해자 조치 현황 및 문제점

현행법 체계 하에서 스토킹·데이트 폭력에 대한 제재는 크게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한 보호처분, 그 외의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스토킹이 따라다니기, 지켜보기 등 중대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이뤄졌을 때는 가볍게 평가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유형과 피해의 정도가 매우 다양한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한 것도 문제지만, 8만원이라는 범칙금 액수 또한 스토킹

킹을 중단하고 재범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면 보호처분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2. 가해자 처벌 및 재범 방지 방안

가. 응급조치

스토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스톱킹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응급조치 이행 의무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접근금지, 퇴거명령 등 가해자를 구속하는 응급조치가 사후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면, 행위자가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나. 보호명령

스토킹 규제를 형사처벌 중심으로 구성할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추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자의 불안이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법 중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그 모델이 될 수 있다.

다.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스토킹은 대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그 행위가 반복·지속되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위자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해자가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 또한 명령을 불이행했을 때도 처벌 규정을 두어 재범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라. 벌칙

그동안 스톱킹 처벌과 관련된 법안을 살펴보면, 처벌 범위가 1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까지 다양하다. 범죄의 구성요건, 기존의 다른 범죄의 법정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스톱킹의 법정형은 적어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Ⅷ.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제 정비 방안

1.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가. 형법 개정

독일처럼 형법을 개정해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도입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형법 각칙의 ‘협박의 장’에 스토킹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형사특별법의 난립을 막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형법에 다양한 스토킹 행위 유형을 담기엔 한계가 있고, 특히 형법상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책을 성폭력 피해자 지원책과 함께 형법에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형법 각칙만으로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피해자의 법감정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에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을 추가해 개정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가정의 유지’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보호처분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스토킹이 가정폭력에 준하는 범죄로 해석되면 여전히 여성폭력이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으로 치부된다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이 법의 보호처분 역시 실효성 논란이 있다. 결과적으로, 스토킹 처벌이 여성폭력을 처벌하고 예방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처벌법」 내 보호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스토킹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개정 방식은 「성폭력처벌법」상의 피해자 보호나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를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

영)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폭력처벌법」상의 성폭력범죄에 ‘스토킹’의 행위 태양을 규율하기 어렵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 유형을 추가하여 「성폭력처벌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은, 기존의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유형과 정합성이 없으며, 스토킹 행위를 모두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라. 특별법 제정

특별법 형식을 취하면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가 가능하다. 스토킹을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까지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범죄 처리 과정 등에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2. 제19대 국회 이후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및 과제

가. 스토킹 정의

제19대 국회 이후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스토킹은 행위자의 행위 그 자체나 생명, 신체적 위협을 주는 행위까지 그 범위가 넓다. 다만, 대부분의 외국 입법 사례를 보면, 스토킹은 법적으로 ‘일련의 행위’나 ‘반복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법적 정의는 괴롭힘이나 쫓아다님처럼 개방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스토킹 행위 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도 포함할 보충적 규정 검토도 필요하다.

나. 스토킹 행위자 규제

제19대 국회 이후 발의된 관련 법안에서는 스토킹 행위자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응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 가해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수강명령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발의된 특별법안 대부분이 형법상 협박죄와 비교해 징역형의 법정형은 낮지만 벌금형은 높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은 행위로 하는 협박임을 고려할 때 협박죄를 기준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은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마련하는 초기에는 기존의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시설,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되, 최소한 한 곳의 중앙센터를 설치해 스토킹 관련 피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19·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정보가 추가로 제공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응급조치 외에 따로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두어, 신고자 외에 피해자에게도 신변안전조치 신청 권한을 주고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이상의 지원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3.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최종적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제1장 총칙	i) 목적 ii) 정의 i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iv) 스토킹 실태조사
제2장 스토킹 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i) 응급조치 등 ii) 신변안전조치, iii)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등 iv)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등	i)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ii) 피해자보호명령 iii)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iv) 임시보호명령 v) 다른 법률의 준용
제4장 피해자보호조치 등	i)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ii) 불이익 처우의 금지 iii)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 통지 iv)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v)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
제5장 벌칙	i) 벌칙 ii)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iii) 응급조치 등의 불이행죄 iv)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죄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7
II. 스톱킹·데이트 폭력 실태 및 특징	9
1. 스톱킹·데이트 폭력 발생 실태	11
2. 스톱킹·데이트 폭력 처벌 현황	16
3. 스톱킹·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유형	17
4. 스톱킹·데이트 폭력의 특징	20
5. 소결	22
III. 스톱킹·데이트 폭력 대응 현행 법제 현황 및 한계	25
1. 형사법적 적용 가능성 및 한계	27
가. 형법 각칙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27
나. 특별형법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28
다. 「경범죄처벌법」 적용과 한계	30
2. 경찰법적 적용 가능성 및 한계	32
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32
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긴급입시조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34
3. 소결	35

IV. 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한 관련 법제도의 적용 현황 및 한계	37
1. 심층면접 방법	39
2. 수사기관 관계자 심층면접 결과	39
가. 스톡킹·데이트 폭력 관련 대응 현황	39
나. 현행 제도의 한계: 법적 근거 미비의 문제점	40
다. 스톡킹·데이트 폭력 관련 대응이 필요한 이유	43
라. 향후 법제 정비 방향	45
3.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 심층면접 결과	48
가. 현행 대응체계의 문제점	48
나. 스톡킹·데이트 폭력 관련 법 제정 필요성	51
다. 법률 제정 관련 쟁점	53
4. 소결	59
V. 스톡킹·데이트 폭력 관련 외국의 입법례 분석	61
1. 각국의 스톡킹 규제 관련법의 일반적 특징	63
가. 스톡킹 개념의 포괄성과 그 적용상의 한계	63
나. 입법 유형의 차이: 형법에 의한 규제와 특별법에 의한 규제	68
다. 피해 결과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포함하는가의 여부	70
라. 가해자의 의도 판단 여부	71
마. 친고죄 여부	72
바. 형량의 범위	73
사. 피해자의 보호	75
2. 스톡킹 규제 관련 각국의 입법례	79
가. 미국	79
나. 호주	84
다. 영국	86
라. 일본	87
마. 독일	89

바. 기타 국가	91
3. 데이트 폭력 관련 각국의 입법례	94
가. 미국	95
나. 영국	98
다. 일본	99
4. 소결	100
VI. 스톱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	101
1.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과 문제점	103
가. 지원 현황	103
나. 문제점	117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120
가. 상담소 및 보호·지원시설	120
나.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122
다. 신변안전조치	123
라.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124
마.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보호 및 지원	124
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125
3. 소결	125
VII. 스톱킹·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벌 방안	127
1. 가해자 조치 현황 및 문제점	129
2. 가해자 처벌 및 재범 방지 방안	130
3. 소결	134
VIII. 스톱킹·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제 정비 방안	137
1. 스톱킹·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139

가. 형법 개정	139
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140
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141
라. 특별법 제정	142
2. 제19대 국회 이후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및 과제	143
가. 스토킹 정의	144
나. 스토킹 행위자 규제	146
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150
3.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157
가. 법안의 구성체계	157
나. 법안의 주요 골자	158
다. 법안 시안	161
참고문헌	169
Abstract	175

표 목 차

<표 I-1> 애인관계에 의한 살인, 폭행치사, 폭행, 성폭력, 상해, 손괴범죄 현황	4
<표 II-1> 스토킹 피해 경험률	12
<표 II-2> 여성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률	13
<표 II-3>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지속적 괴롭힘) 발생 및 처리 현황	14
<표 II-4>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지속적 괴롭힘) 처벌 현황	16
<표 II-5> 경찰신고 유무 및 신고 후 경찰 사건처리 방식	17
<표 II-6> 스토킹 가해 유형	17
<표 II-7> 스토킹 피해 유형	19
<표 II-8> 데이트 폭력 피해 유형별 피해 경험 실태	20
<표 II-9> 스토킹 피·가해자 성별	20
<표 II-10>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21
<표 II-11> 연인 대상 폭력범죄(살인, 성폭력, 폭행 및 상해범죄) 범죄자의 전과	22
<표 III-1> 현행 「경범죄처벌법」시행령 규정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31
<표 V-1> 스토킹에 대한 각국의 정의	63
<표 V-2> 행위 양태 예시	67
<표 V-3> 형법상 규정례	69
<표 V-4> 특별법상 규정례	69
<표 V-5> 피해 결과 요구하는 유형의 입법례	70
<표 V-6> 두 가지 유형 접근례	71
<표 V-7> 친고죄 여부	73
<표 V-8> 형량의 범위	74

그림 목 차

[그림 II-1] 스톡·데이트 폭력 피해자 상담통계	12
[그림 II-2] 강력범죄자 수: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연인	14
[그림 II-3] 살인범죄자 수: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연인	15
[그림 II-4] 강력범죄자 수: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연인	15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는 근절되어야 한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데이트 폭력 역시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약하여 여성폭력에 대한 사각지대로 평가된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스토킹도 심각하고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에 의한 심각한 피해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스토킹·데이트 폭력 행위는 이 행위가 형법상 폭행(제260조), 협박(제283조), 주거침입(제317조), 주거 및 신체수색(제321조), 명예훼손(제307조), 모욕(제311조), 강요(제324조)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유형의 스토킹·데이트 폭력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형벌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표면적 행위의 외관만을 포착한 것이며 본질적인 측면의 규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스토킹·데이트 폭력과 같은 관계 속의 폭력의 경우, 현행법상 형벌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보다 빠른 시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폭력 범죄로 발전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2년 3월 21일 「경범죄처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3조제1항제41호에서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표제 하에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법률의 규율 내용에 포함되어, 비록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스토킹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 규정은 단지 사후적 대처의 일환으로 형사 처벌만 상정하고 있어 피해예방,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과되는 형량도 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

4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한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가해자가 경미하게 처벌되어 오히려 스토킹을 자극하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더 강력한 2차 범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스토킹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기에는 부족하다.

최근 5년간 애인관계에 의한 살인, 폭행치사, 폭행, 성폭력, 상해, 손괴범죄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I-1〉 애인관계에 의한 살인, 폭행치사, 폭행, 성폭력, 상해, 손괴범죄 현황

(단위: 건, %)

구분	살인범죄	폭행치사범죄	강력범죄(폭력)	성폭력범죄	상해범죄	손괴범죄
2010	114 (10.9%)	3 (2.3%)	7,280 (2.1%)	381 (2.2%)	3,956 (2.6%)	1,092 (4.1%)
2011	123 (10.2%)	4 (3.4%)	6,916 (2.0%)	413 (2.2%)	3,419 (2.6%)	1,065 (3.9%)
2012	100 (9.2%)	1 (0.8%)	7,534 (2.0%)	503 (2.5%)	3,542 (2.7%)	1,097 (3.7%)
2013	108 (10.2%)	9 (7.8%)	7,076 (2.1%)	729 (3.0%)	3,090 (2.6%)	1,122 (3.8%)
2014	108 (10.2%)	6 (5.1%)	6,558 (2.0%)	689 (2.7%)	2,718 (2.7%)	1,299 (4.2%)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자료, 홍영오·연성진·주승희(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재인용

한편, 경찰청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속적 괴롭힘” 처리 건수는 2013년 총 312건이었고 2014년 297건이었다(<표 I-3> 참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상담 건수 중 스토킹의 비율은 2010년 43건(3.3%), 2011년 26건(2.3%), 2012년 49건(3.7%), 2013년 37건(2.6%), 2014년 5건(3.4%)이다. 가해자는 이전에 데이트 했던 사람이 가해자의 58%를 차지하였다. 스토킹 유형은 지나친 전화, 문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협박, 모욕, 물리적 폭력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행위 태양이 전화 등 다소 소극적이 방식에서 협박, 물리적 폭력 등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고,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가 28%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성폭력실태조사(2013년)에 의하면 스토킹 피해가 1회에 그친 경우는 33.2%, 2회

이상이 66.7%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16.1.2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악 근절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을 확정, 스토킹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검토 등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전국 모든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근절 태스크포스(TF)’ 설치를 통해 데이트 폭력 사건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인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관련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 법안 마련 등 법제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1) 스토킹·데이트 폭력 실태 및 특징

공식 범죄통계 및 상담통계 자료 등 즉, 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과 전국 상담소의 상담통계, 성폭력실태조사 상 드러난 스토킹·데이트 폭력 실태 및 추이와 특징을 분석한다.

2) 스토킹·데이트 폭력 대응 현행 법제 현황 및 한계

우선, 형사법적 적용 가능성 및 한계를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첫째, 형법 각칙, 즉 협박죄(제283조), 특수협박죄(제284조), 명예훼손죄(제307조), 모욕죄(제311조), 강요죄(제324조), 상해죄(제257조), 주거침입죄(제319조), 주거·신체수색죄(제321조), 공갈죄(제350조), 재물손괴죄(제366조) 등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다. 둘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형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다. 셋째,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 41호의 “지속적 괴롭힘” 적용과 한계를 검토한다.

6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다음으로 경찰작용의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한 관련 법제도의 적용 현황 및 한계를 살펴본다. 스토킹·데이트 폭력 관련 수사 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관련 조치 경험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종사자 대상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 관련 지원 경험, 지원상 어려움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3) 스토킹·데이트 폭력 관련 외국의 입법례 분석

스토킹·데이트 폭력 관련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규율 방식과 스토킹의 개념,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의 결과, 주관적 구성요건, 친고죄 여부, 형량의 범위, 피해자보호 방안 등으로 나누어 비교 검토 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4)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와 예방 방안

피해자 신변안전 및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 관련 현황과 문제점 및 기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서의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등 구체적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5)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벌 방안

가해자 조치 현황 및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검토 한 후 가해자 처벌 방안 및 재범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6)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 정비 방안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와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특별법 제정을 포함 관련 법제 정비 방안의 장단점을 살펴본 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을 마련한다.

나. 연구방법

이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심층분석, 관계기관 TF 구성을 통한 전문가 회의이다.

1) 문헌연구

스토킹·데이트 폭력 관련 실태 및 법제와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법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스톱·데이트 폭력 규제 관련 비교법적 고찰을 위해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9대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스톱·데이트 폭력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2) 심층면접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관련 관계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 대상은 스톱·데이트 폭력 관련 수사 관계자(전담수사팀 등) 5명으로, 면접 내용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관련 조치 경험 및 문제점, 개선사항 등이다. 면접은 구조화된 질문지 활용, 개별면접 및 집단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관계자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 대상은 기존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종사자들이다. 면접 내용은 스톱·데이트 폭력 피해 관련 지원 경험, 지원상 어려움 및 문제점, 개선사항 등이었다. 면접은 구조화된 질문지 활용, 개별면접 혹은 집단면접으로 이루어졌다.

3) 관계기관 TF 구성을 통한 전문가 회의

관계기관(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스톱·데이트 폭력 대응 현행 법제의 한계와 관련 정책방안 및 법제 정비방안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받기 위해 관계기관 TF를 구성·운영하였다.

8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4) 현지조사

일본 현지 조사(관계자 면접 등)를 통해 법제 정비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하였다.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와 사회 문화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빨리 스톱킹·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 관련 법제를 정비하였다. 이에 일본의 법제 정비과정에서 논의된 쟁점과 법제 정비 이후의 적용 현황 등에 대한 조사는, 문헌연구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법제 정비방안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II

스토킹·데이트 폭력 실태 및 특징

1. 스톡킹·데이트 폭력 발생 실태	11
2. 스톡킹·데이트 폭력 처벌 현황	16
3. 스톡킹·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유형	17
4. 스톡킹·데이트 폭력의 특징	20
5. 소결	22

이 장에서는 스톡킹·데이트 폭력 발생 실태와 처벌 현황을 살펴본 후에 스톡킹·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유형, 스톡킹·데이트 폭력의 특징을 살펴본다.

1. 스톡킹·데이트 폭력 발생 실태

스톡킹·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이러한 유형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통계자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스톡킹·데이트 폭력은 여성에게 행해지는 다양한 폭력의 유형 가운데 하나이면서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성을 매개로 하는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성폭력실태조사, 여성단체들의 상담통계, 기타 국책 연구기관들의 폭력관련 연구 등을 통해 스톡킹·데이트 폭력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성폭력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스톡킹·데이트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0년에는 0.6%, 2013년에는 0.2%로 나타났다.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톡킹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에는 4.7%, 2013년에는 1.7%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2013년 조사결과를 보면, 2013년에는 2010년에 비해 스톡킹·데이트 폭력 피해율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¹⁾

1) 그런데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 기간 동안 스톡킹 관련된 입법조치나 정책적인 변화가 없었음에도 스톡킹·데이트 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것은 조사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송단희(2016), “한국의 스톡킹 피해 실태 및 특징”,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회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교토여자대학교 공동주최, 한일 심포지엄: 스톡킹 피해 실태 및 법적 대응 자료집(2016.8.25.). p.28 참조.

〈표 II-1〉 스토킹 피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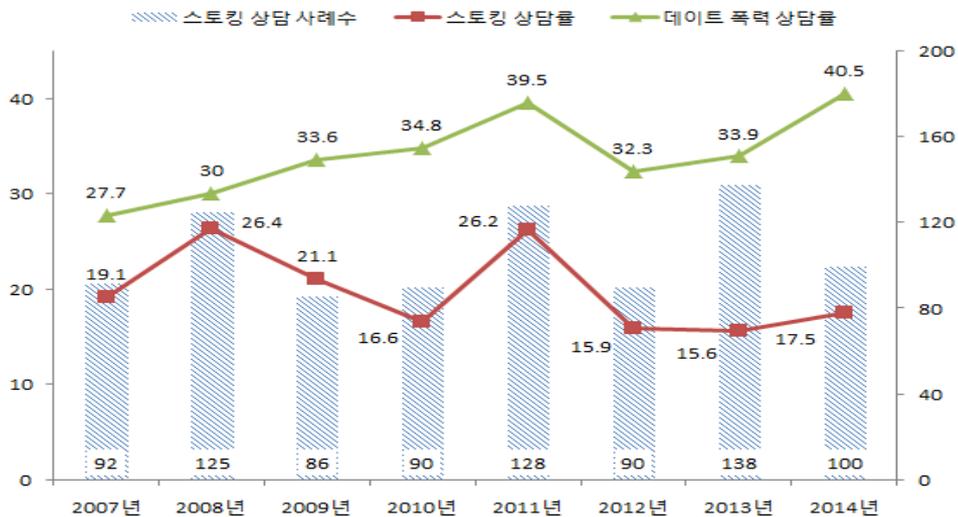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3년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지난 1년간 스토킹 피해 경험률	0.6	1.0	0.2	0.2	0.5	0.0
평생 스토킹 피해 경험률	4.7	6.1	3.1	1.7	2.9	0.6
분석대상자수	(2,200)	(1,583)	(617)	(3,500)	(1,715)	(1,785)

주: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전국 19세~64세 미만 성인(인구주택총조사 기반 표본추출)
 - 조사방식: 방문·면접조사(자기기입식)
 - 조사기간: 2013. 8. 1.~10. 31.(3개월)
 - 조사기관: 한국갤럽
 2) 스토킹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백분율 및 빈도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된 값.
 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3년 성폭력실태조사」, pp.126~127 발췌 인용.

한국여성의전화의 상담통계자료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상담사례가 2007년에는 전체 상담사례의 27.7%, 2014년에는 40.5%로 나타났다. 스토킹으로 인한 상담건수는 2008년 125건, 2011년 128건, 2013년 138건으로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으로 인한 상담사례들이 조금씩 증가해온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건수, %)



[그림 II-1]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상담통계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피해자 상담통계; 송란희(2016), “한국의 스토킹 피해 실태 및 특징”, 한일 심포지엄: 스토킹 피해실태 및 법적대응 자료집(2016.8.25.), p.31 발췌 인용.
 한국여성의전화(2015), “여성대상폭력에 대한 연구”, p.138 발췌 인용.

또한 한국여성의전화는 2016년 9월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온라인을 통해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을 조사한 바 있다. 온라인 조사결과, 데이트 관계에서 일정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 응답자의 61.6%로 나타났다. 이는 총 응답자 1,082명 가운데 여성응답자수 1,017명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을 분석한 결과로, 626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이 매우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2〉 여성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률

(단위: %, (명))

구분		2016년	
		비율	여성 응답수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률	폭력피해(통제, 언어적/정서적/경제적, 신체적, 성적) 중 한 종류라도 피해경험 있음	61.6	(626)
	폭력피해(통제, 언어적/정서적/경제적, 신체적, 성적) 네 종류 모두 피해경험 있음	11.5	(118)
분석대상자수		-	(1,017)

주: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60세 성인(데이트 관계 경험자)

- 조사방식: 온라인 설문조사(페이스북 활용)

- 조사기간: 2016. 9. 12.~9. 21.(10일)

2) 설문응답자 중 93.9%(1,017명)가 여성으로, 성별에 따른 응답수의 차이가 커, 유의미한 비교 분석에 한계가 있어 여성 응답수만 분석하여 제시

출처: 손문숙조재연(2016), “데이트 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의전화.

검찰청과 경찰청의 사건처리 결과 및 통계를 통해서도 스톡킹·데이트 폭력의 실태를 가늠해볼 수 있다. 현행법상 스톡킹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에 의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하면서 만남이나 교제를 시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괴롭힘’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다.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검거된 사례는 2013년 312건, 2014년 297건, 2015년 363건,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동안 336건으로 나타난다. 지난 3년간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례가 해마다 약 300여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6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의 검거수가 300여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스톡킹·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고소고발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

으며, 이러한 유형의 범죄 발생건수 및 범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II-3〉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지속적 괴롭힘) 발생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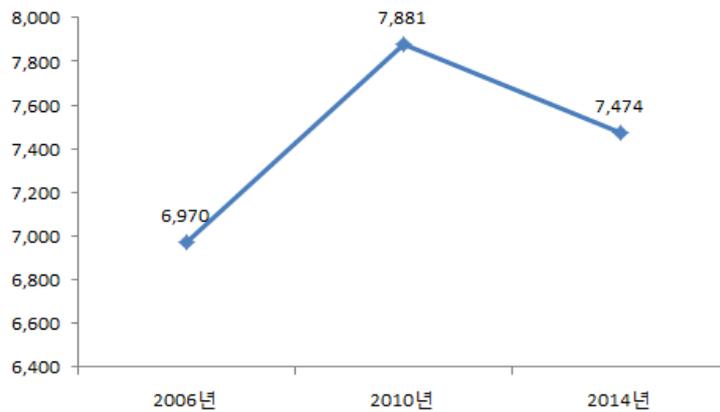
기간	발생		검거		검거(계) (명)	검거(계)(명)			계
	발생건수	발생비	검거건수	검거율(%)		남	여	미상	
2013년	312	-	312	100	312	-	-	-	312
2014년	297	-	297	100	297	-	-	-	297
2015년	363	-	363	100	363	-	-	-	363
2016년 1~7월	336	-	336	100	336	-	-	-	336

출처: 정춘숙 의원실, 2016년 8월12일자 경찰청 답변 내용; 송란희(2016), “한국의 스토킹 피해 실태 및 특징”, 한일심포지엄: 스토킹 피해실태 및 법적대응 자료집(2016.8.25.), p.30 재인용.

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 중 연인사이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수도 점차 증가하여, 2006년 6,970명에서 2010년에는 7,881명으로 증가했다. 2010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2014년에는 연인대상 범죄자 수가 7,47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인간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양상으로 살인, 폭행, 상해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연인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폭력의 유형 또한 가벼운 형태의 폭력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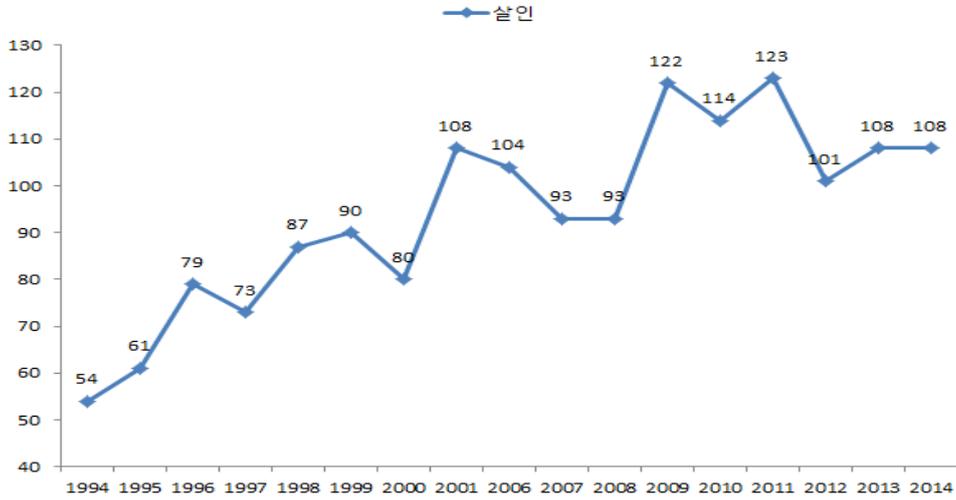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II-2] 강력범죄자 수: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연인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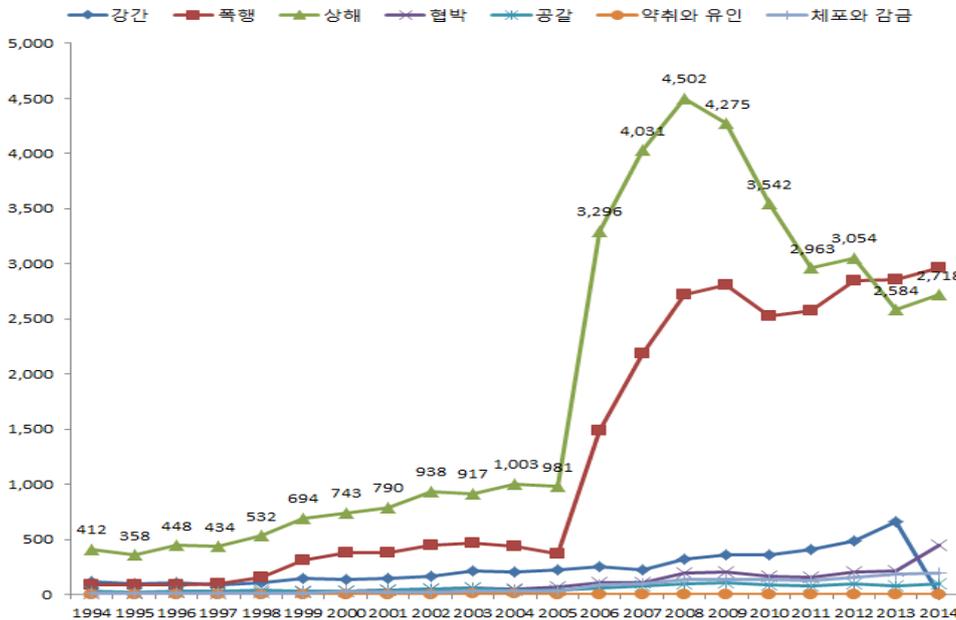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II-3] 살인범죄자 수: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연인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조회.

(단위: 명)



[그림 II-4] 강력범죄자 수: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연인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조회.

2. 스톱킹·데이트 폭력 처벌 현황

「경범죄처벌법」은 스톱킹·데이트 폭력과 같은 형태의 범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II-4〉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지속적 괴롭힘) 처벌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7월	
훈계방면		0	0	0	0	
즉결심판청구		58	48	62	94	
즉결 심판 결과	청구기각	6	6	10	5	
	무죄	0	0	0	0	
	선고유예·형 면제	3	2	7	9	
	구류	2	3	0	0	
	벌금	건수	43	36	44	79
		금액 (건별 평균금액)	5,410 (126)	3,680 (102)	4,530 (103)	5,055 (64)
	과료	건수	2	0	0	1
		금액	70	0	0	40
	정식재판청구		2	1	1	0
범칙금 부과	건수	254	249	301	242	
	금액 (건별 평균금액)	20,320 (80)	19,920 (80)	24,080 (80)	19,360 (80)	

출처: 정춘숙 의원실, 2016년 8월12일자 경찰청 답변 내용; 송란희(2016), “한국의 스톱킹 피해 실태 및 특징”, 한일심포지엄: 스톱킹 피해실태 및 법적대응 자료집(2016.8.25.), p.30 재인용.

데이트 폭력의 경우 이에 대한 신고비율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4.8%에 불과했으며, 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찰이 이러한 사건을 사소한 일로 취급하거나(53.3%), 소극적으로 수사하거나(33.3%), 합의를 중용하는(10%) 모습을 보였다고 응답한 이들이 많았다.

〈표 II-5〉 경찰신고 유무 및 신고 후 경찰 사건처리 방식

(단위: %, 명/중복응답)

경찰신고 유무	2016년	
	비율	응답수
있다	4.8	30
· 사소한 일로 취급하였다	53.3	16
·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지원했다	40.0	12
· 사건수사를 소극적으로 했다	33.3	10
· 합의를 중용했다	10.0	3
· 고소하라고만 했다	10.0	3
· 기타	36.7	11
없다	95.2	597
· 계	100	627

출처: 손문숙·조재연(2016), “데이트 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의전화.

3. 스톡킹·데이트 폭력 가해 및 피해 유형

스톡킹 가해자들의 폭력의 유형으로는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폭언, 협박, 위협적 분위기 조성 등 정서적 폭력을 행한 경우가 42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구타, 상해 등 신체적 폭력의 유형이 110건, 성적 위협이나 폭행 등의 성적 폭력 75건, 금전을 매개로 한 경제적 폭력 20건으로 나타났다.

〈표 II-6〉 스톡킹 가해 유형

(단위: 건, %/중복응답)

스톡킹 가해 유형		2016년 상반기	
		건수	비율
정서적 폭력	· 소계	424	100.0
	· 폭언, 멸시, 욕설	53	12.5
	· 협박	84	19.8
	· 통제, 고립	17	4.0
	· 감시·미행·반복적 연락 등	136	32.1
	· 명예훼손	9	2.1
	· 자해·자살협박 및 시도	26	6.1

18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스토킹 가해 유형		2016년 상반기	
		건수	비율
경제적 폭력	소계	20	100.0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	3	15.0
	갈취	6	30.0
	낭비, 채무(빚)	3	15.0
	지불 강요(데이트비용청구 등)	8	40.0
성적 폭력	소계	75	100.0
	강간	9	12.0
	유사강간	0	0.0
	성추행	8	10.7
	카메라 등 이용 촬영	25	33.3
	통신매체 이용 음란	6	8.0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1	1.3
	성적모욕·비난	6	8.0
	성적의심(의처증)	4	5.3
	성관계 강요	12	16.0
	변태적 성행위	1	1.3
	미파악	1	1.3
	기타	2	2.7
신체적 폭력	소계	110	100.0
	손발로 구타	28	25.5
	목조름	12	10.9
	흉기로 위협	7	6.4
	흉기로 상해	2	1.8
	물건 던짐	15	13.6
	당기거나 밀침	17	15.5
	침입	6	5.5
	납치	1	0.9
	감금	6	5.5
	힘으로 제압	14	12.7
	잠 못 자게 하기	1	0.9
	기타	1	0.9

출처: 한국여성인권전화 상담통계; 송란희(2016), “한국의 스톱킹 피해 실태 및 특징”, 한일심포지엄: 스톱킹 피해실태 및 법적대응 자료집(2016.8.25.), pp.35~36 재인용.

스토킹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는 피해의 유형으로는 심리적 피해, 사회적 피해, 신체적 피해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우울감, 무력감을 경험하거나 대인관계 기피하게 되는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신체적 건강과 생명이 훼손되거나 위협받기도 했다.

〈표 II-7〉 스토킹 피해 유형

(단위: 건, %/중복응답)

스토킹 피해 유형		2016년 상반기	
		건수	비율
심리적 피해	소계	160	100.0
	우울감·무기력	28	17.5
	불안감	68	42.5
	공포·두려움	64	40.0
사회적 피해	소계	28	100.0
	대인관계의 어려움·단절	6	21.4
	학교·직장등생활의 어려움·중단	21	75.0
	기타	1	3.6
신체적 피해	소계	19	100.0
	사망	1	5.3
	상해	10	52.6
	질병·장애	2	10.5
	임신	2	10.5
	유산	0	0.0
	낙태	4	21.1

출처: 한국여성성전화 상담통계; 송란희(2016), “한국의 스토킹 피해 실태 및 특징”, 한일심포지엄: 스토킹 피해실태 및 법적대응 자료집(2016.8.25.), pp.36~37 재인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홍영오 외(2015))를 통해서도 데이트 폭력의 피해가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물리적, 성적 피해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다.

〈표 II-8〉 데이트 폭력 피해 유형별 피해 경험 실태

(단위: 명, (%)/중복응답)

구분	응답수
통제	1,519 (76.0)
심리적·정서적 폭력 피해	703 (35.2)
신체적 폭력 피해	387 (19.4)
성추행 피해	710 (35.5)
성폭력 피해	406 (20.3)
상해 피해	135 (6.8)
계	2,000 (100.0)

출처: 홍영오 외(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259.

4. 스토킹·데이트 폭력의 특징

스토킹·데이트 폭력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폭력을 행하는 가해자와 폭력의 피해자의 성별이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점이다. 가해자의 다수가 남성인 반면,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이다.

〈표 II-9〉 스토킹 피·가해자 성별

(단위: 명)

구분		피해자		
		여성	남성	계
가해자	여성	1	2	3
	남성	138	0	138
	계	139	2	141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송란희(2016), “한국의 스토킹 피해 실태 및 특징”, 한일심포지엄: 스토킹 피해실태 및 법적대응 자료집(2016.8.25.), p.33 재인용.

스토킹 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대부분 (전)애인, (전)배우자, 직장 관계자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스토킹 행위가 친밀한 관계나 안면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표 II-10〉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6월		누계	
계		138		178		162		141		619	
친(의·양)부모, 친인척		2	1.4	4	2.2	6	3.7	2	1.4	14	2.3
(전)배우자		1	0.7	22	12.4	19	11.8	7	5	49	7.9
(전)애인		101	73.2	118	66.3	98	60.5	111	78.7	428	69.1
직장	관계자	12	8.7	8	4.5	16	9.9	11	7.8	47	7.5
동급생선후배		1	0.7	6	3.4	1	0.6	1	0.7	9	1.5
서비스	제공자	2	1.4	0	0	2	1.2	1	0.7	5	0.8
채팅	상대자	4	2.9	0	0	2	1.2	5	3.5	11	1.8
동네	사람	4	2.9	1	0.6	4	2.5	1	0.7	10	1.6
단순	대면인	4	2.9	2	1.1	2	1.2	0	0	8	1.3
모르는	사람	6	4.3	3	1.7	3	1.9	0	0	12	1.9
미파악		1	0.7	4	2.2	2	1.2	0	0	7	1.1
기타		-		10	5.6	7	4.3	2	1.4	19	3

출처: 한국여성성전화 상담통계; 송란희(2016), “한국의 스토킹 피해 실태 및 특징”, 한일심포지엄: 스토킹 피해실태 및 법적대응 자료집(2016.8.25.), p.34 재인용.

연인대상 폭력 범주의 경우, 범죄이력이 있는 이들이 다시 유사한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인대상 폭력범죄를 행한 이들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이 76.6%로 전과가 없는 이들이었던 23.3%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폭력의 가해자였던 이들이 다시 동일한 유형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인대상 범죄자의 특성은 스토킹·데이트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참조할 필요가 있다.

〈표 Ⅱ-11〉 연인 대상 폭력범죄(살인, 성폭력, 폭행 및 상해범죄) 범죄자의 전과

(단위: 명, %)

구분	2005년~2014년 누계	
	명	%
없음	16,666	23.3
1범	9,973	13.9
2범	7,730	10.8
3범	6,378	8.9
4범	5,130	7.2
5범	4,302	6
6범	3,386	4.7
7범	2,853	4
8범	2,336	3.3
9범	12,665	17.7
미상	107	0.1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 홍영오 외(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80. 재인용.

5. 소결

지금까지 여성단체, 국책연구기관, 범죄 처리현황 및 통계 등을 통해 스토킹·데이트 폭력에 대한 특징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스토킹·데이트 폭력에 대한 일관된 규정이나 사회적 인식의 부재 속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4조의 ‘지속적 괴롭힘’을 위반한 것으로 검거된 사례는 2013년 312건, 2014년 297건, 2015년 363건,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 동안 336건으로 나타난다. 지난 3년간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례가 해마다 약 300여건을 상회하며, 특히 2016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기간의 검거수가 300여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스토킹으로 인한 고소고발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 중 연인 간 강력범죄 발생건수도 점차 증가해 왔다. 특히, 연인간

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양상으로 살인, 폭행, 상해 등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이는 연인이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가벼운 형태의 폭력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여성에게 행해지는 또 하나의 폭력의 유형이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데이트 폭력에 대해 인식을 향상시키고, 이에 대한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III

스토킹·데이트 폭력 대응 현행 법제 현황 및 한계

1. 형사법적 적용 가능성 및 한계	27
2. 경찰법적 적용 가능성 및 한계	32
3. 소결	35

이 장에서는 스토킹·데이트 폭력 대응 현행 법제의 현황과 한계를 형사법적 적용 가능성과 한계, 경찰법적 적용 가능성과 한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형사법적 적용 가능성 및 한계

가. 형법 각칙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1) 현행 형법 각칙

개별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형태에 따라 형법상의 폭력행위와 관련된 여러 범죄 구성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법률에 규정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형법상의 협박죄(제283조), 특수협박죄(제284조), 명예훼손죄(제307조), 모욕죄(제311조), 주거침입죄(제319조), 주거·신체수색죄(제321조), 강요죄(제324조), 공갈죄(제350조), 재물손괴죄(제366조) 등이 그러한 규정들이다. 예를 들면 스토킹 행위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였다면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또는 스토킹 행위자의 반복된 전화나 추적행위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심각한 수면장애나 정신장애를 겪게 되었다면 상해죄의 구성요건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²⁾

2) 형법 각칙 적용의 한계

스토킹이 형법상 폭행, 주거침입, 강간, 살인 등과 같은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까지 나아가면 형사처벌은 훨씬 용이해진다. 그러나 스토킹의 경우 그 행위태양이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 상해, 폭력 등의 전 단계에서 개입하는데 의미가 있고 기존의 형법 규정만으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협박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협박,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단순한 괴롭힘 그 자체로는 이러한 범죄의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³⁾ 또한

2) 이건호(2004),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그 한계: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와 법률적 대응방법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p.138.

3) 김학태(2011), “독일과 한국에서의 스토킹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U연구』 제28호, p.186.

현행 형법 각칙에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다.

나. 특별형법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과 한계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제1항 3호는 “제44조의7 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⁴⁾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면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으므로 스토킹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 유형을 처벌하기에는 그 규제 범위가 너무 좁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과 한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협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킨다는 목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과 한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호에서 가정폭력범죄를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⁵⁾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3호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또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의2에 따르면,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적모)와 서자(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제2조의2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가족구성원에 해당하더라도 제2조제3호의 죄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 특히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 역시 그동안 부부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온 반면,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방치되어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법처리 위주로 처리하는 등 피해에 방이나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였음을 인식하고,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 전후의 갈등을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치안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⁶⁾

이처럼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에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적용대상과 적용되는 행위에서 한계가 있다.

다. 「경범죄처벌법」 적용과 한계

우리나라에서 현재 스토킹과 관련된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2013년 3월 22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이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41호에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따라다니기·잠복하여 기다리기

6) 경찰청 보도자료(2016.02.02.)에 따르면, 이를 위해,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 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폭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을 전국 경찰서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연인 간 폭력은 ‘가정폭력’과 같이 직접 개념 정의·행위 규제하는 법령 없이 살인·성폭행·상해·폭행 등 개별적인 행위유형별로 처벌(<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1&nttId=18111&menuNo=200067>) 최종접속일: 2016.12.20.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 「경범죄처벌법」상 스토킹 처벌기준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구체적인 처벌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명시적으로 거절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면회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1~2차례 이성에게 면회·교제를 요구하는 구애 수준의 행위는 처벌불가이며, 3회 이상 면회 교제를 요구하거나 2차례라도 상대방에게 공포·불안감을 줄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한다. 그리고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더라도 명시적 거절의사 표현이 없으면 처벌불가이며, 행위자가 스토킹 신고를 한 차례 이상 당했음에도 상대방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는 처벌가능이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⁷⁾

〈표 III-1〉 현행 「경범죄처벌법」시행령 규정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구분	범칙행위	범칙금
법 제3조제1항제40호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경우	8만원
법 제3조제1항제41호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경우	8만원
법 제3조제2항제1호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실거나 실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경우	16만원
법 제3조제2항제2호 (거짓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경우	16만원
법 제3조제2항제3호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원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6만원
법 제3조제2항제4호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16만원

현행 「경범죄처벌법」시행령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을 보면, 스토킹 행위인 제3조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규정을 위반하는 범칙자는

7) 경찰청 공식 블로그 참고(<http://polinlove.tistory.com/5189>). 최종접속일: 2016.12.20.

범칙금으로 8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의 범칙금은 출판물 부당 게재나 거짓 광고, 암표매매의 범칙금인 16만원보다도 적다. 과연 「경범죄처벌법」상 스토킹의 한 유형인 지속적 괴롭힘 행위가, 위와 같은 행위들보다 불법성이 낮은지, 이러한 처벌 규정으로 스토킹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다.⁸⁾

무엇보다 스토킹 행위는 단순히 범칙금 8만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스토킹은 피해자를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를 자살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을 정도의 심각한 범죄이다. 그런데 그런 스토킹 행위를 단순히 피해자를 성가시게 하는 정도로 법률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 따라서 현행 「경범죄처벌법」으로 스토킹을 처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2. 경찰법적 적용 가능성 및 한계

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

경찰관이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에 개입할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8)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시행 2016.7.19.] [대통령령 제27346호, 2016.7.19., 일부개정]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2조 관련).

9) 이원상(2013), “스토킹 처벌 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p.174.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적용의 한계

위와 같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들에 따르면, 경찰관은 구호대상자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이거나 미아, 병자, 부상자가 아니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이미 현장에서 스토킹과 관련된 상황이 종료되었다면 긴급성이 인정되기 힘들어, 관계인에게 경고를 하고 제지할 수 없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집행상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최근에도 30대 여성이 “동거 중인 남자 친구가 때린다”고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결국 이 여성은 남자 친구에게 살해된 사례가 있다. 또한 며칠 동안 피해 여성의 신고가 여섯 차례 이어지자 경찰은 전 남자 친구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 여성은 며칠 뒤 전 남자 친구에게 살해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결국 현행 법상 경찰관이 격리나 접근 금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 것이다.¹⁰⁾ 따라서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만으로는 경찰관

10) 한국경제(2016.4.30.), “경찰탐 리포트- 남자친구가 괴물로 변해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경고뿐”(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956711#AA.11617085.1) 최종접속일: 2016.12.20.

위 기사에 따르면, 2014년 말 대구에 사는 여성이 다급하게 112로 헤어진 남자 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다는 신고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다행스럽게 전 남자 친구의 폭행이나 방화 등은 없었다. 경찰관은 전 남자 친구에게 “더 이상 여성을 괴롭히지 마라”고 훈계한 뒤 현장을 떠났다. 이후로도 며칠 동안 피해 여성의 신고가 여섯 차례 이어지자 경찰은 전 남자 친구를 파출

이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에 개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긴급임시조치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는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소로 임의동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현행법은 격리나 접근 금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며칠 뒤 전 남자 친구가 휘두른 도끼에 맞아 살해됐다.

2016년 4월 12일에도 서울 방배동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여성이 “동거 중인 남자 친구가 때린다”고 신고하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 여성은 남자 친구에게 목이 졸려 살해됐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긴급임시조치 적용의 한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경찰관은 스톡 신고를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하여 임시조치를 하는 것은, 가해자가 제2조의2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3. 소결

현재 스톡 등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특수협박죄(제284조), 명예훼손죄(제307조), 모욕죄(제311조), 주거침입죄(제319조), 주거·신체수색죄(제321조), 강요죄(제324조), 공갈죄(제350조), 재물손괴죄(제36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갈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41호에 의하여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따라다니기·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스톡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반복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중요하기보다는 스톡으로 인한 살인, 상해, 폭력 등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 개입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위의 규정들만으로는 이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데이트 폭력은 현행 형법 각칙에 이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으며, 「가정폭력처벌법」 역시 가족구성원에 해당하여야 하면서도 특정한 행위에 한해서만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인관계 등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경찰관이 스톡·데이트 폭력에 개입할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구호대상자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이거나 미아, 병자, 부상자가 아니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힘들다. 또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이미 현장에서 스톡 등과 관련된 상황이 종료되었다면 긴급성이 인정되기 힘들어, 결과적으로 관계인에게 경고를 하거나 제지할 수 없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IV

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한 관련 법제도의 적용 현황 및 한계

1. 심층면접 방법	39
2. 수사기관 관계자 심층면접 결과	39
3.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 심층면접 결과	48
4. 소결	59

이 장에서는 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해 스톡킹·데이트 폭력 관련 법제도의 적용 현황 및 한계를 살펴본다.

1. 심층면접 방법

관계자 심층면접은 현재 스톡킹·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어떻게 수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향후 스톡킹,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법률 제정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 7명과 수사기관 관계자로 경찰 3명을 심층면접하였다.¹¹⁾

수사기관 관계자는 개별 인터뷰 방식으로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진행하였고, 1인당 한 시간 반 내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는 집담회와 개별 인터뷰를 혼용하였고 각각 모두 한 시간 반 정도로 진행하였다. 두 집단의 인터뷰 모두 각각의 기관에서 스톡킹·데이트 폭력 피해에 대해 어떻게 수사·지원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어떤 내용을 주요하게 검토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고려되거나 반영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토대로 진행하였고, 사전 동의를 얻어 면접 내용을 녹음하였다.

2. 수사기관 관계자 심층면접 결과

가. 스톡킹·데이트 폭력 관련 대응 현황

스톡킹의 경우 형사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형사과 보다는 지구대/파출소에서 다뤄지고 있다. 112에 신고하면 지역경찰이 출동해 사건을 파악한 뒤 현행범

11) 피해자 지원기관은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1366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이고, 수사기관은 스톡킹 및 데이트 폭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계자이다. 인용구에서는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는 A~G로 표기하였고, 수사기관 관계자는 가~다로 표기하였다.

이 아니면 상담조치, 현장귀가, 즉심청구(즉심심판)나 경범죄 적용 등이 가능한데, 실제 처벌하기는 어렵다.

보통 112에 신고된 경우에는 지역경찰이 먼저 사건 인지와 초동조치를 하고 출동을 한다. (나)

스토킹에 해당되는 양태는 대부분 지구대 파출소에서 직결심판을 한다. 근데 그것도 집 앞에 갔는데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으면 과연 그것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을까? 이 여자는 무섭다고 하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현장에서 귀가시키거나 필요하다면 「경범죄처벌법」으로 하거나.. 그렇게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다)

경찰서에서는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등과 관련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사건화 되면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2016년 2월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강력 대응하면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데이트 폭력은 그동안 수사과와 여성청소년과의 경계선에 위치한 업무영역이라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올해 초부터 수사과에서 대응 강화를 주도해오고 있으며, 여성 대상 범죄를 다루는 여성청소년과,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청문감사관실,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과에서 상담-수사-사후 피해자보호를 위해 공조하여 대응하고 있다.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여성을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일선 경찰서에서는 재발을 막자라는 취지로 특정 형사들뿐만 아니라 여성범죄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라든지, 피해자보호를 담당하는 청문감사관실이라든지 같이 협조해서 상담, 수사, 사후피해자보호를 종합적으로 같이한다 ... 중략 ... 일선 경찰서에서는 앞으로 연인관계에 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를 잘 해줄 테니 참지 말고 사소한 거라도 신고를 많이 하라고 홍보하기 위해 한 달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가)

여성(대상 범죄 관련한) 상담은 여기서 하고 ... 중략 ... 사건화 되면 여성청소년과, 형사과 이렇게 나뉘진다. 사건화 되지 않은 일반상담인 경우에는 상담부터 하게 된다. (나)

나. 현행 제도의 한계: 법적 근거 미비의 문제점

형사처리를 하려면 형법상 범죄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현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나 분류, 처분을 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행위태양별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가해행위 중 형법에 해당하는 폭행, 상해, 협박 등에

속하지 않는 행위가 많고, 「정보통신망법」이나 「경범죄법」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보통 형법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폭행, 상해, 협박 이런 테두리 안에 안 들어오는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데이트 폭력에 폭행이라든가 폭행의 피해정도 까지 안 갔어도 처벌을 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스토킹 해봤자 경범죄 처벌로 십만원 정도의 과태료 내는 거 밖에 안 되고... 정보통신망법이 있지만 지속적인 범죄행위여야 우리가 사건처리를 할 때 검찰이나 법원에서 영장이나 발부하는 거에 도움이 되고 사건이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 (나)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만 스토킹·데이트 폭력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형법 죄명을 적용한다. 그래서 현재는 그걸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행위별로 해서 보고 있다. 주거침입 이런 식으로... 다만 처벌에 있어서 그걸 고려해서 하고 모니터링 같은 사후처리만 할 뿐이지 처벌 자체에 대해서 강하게 할 수는 없다. 스토킹 같은 경우는 피해자한테 미치는 영향은 큰데...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피해자들을 위한 신변보호조치도 한계가 있다. 그동안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스마트워치 등)를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는데(장비와 인력 등의 한계), 현재는 신변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가해자의 집에 해당 경찰서장 명의로 경고장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예를 들어 가정폭력과 같은 접근금지 등)가 부재하여 재발방지 조치에 한계가 있다. 이는 행정적 조치일 뿐이고 사법적 조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많이 쓰는 신변보호조치는 스마트워치이다. 더 중하다고 생각하면 스마트워치보다도 임시숙소를 제공한다 ... 중략 ...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바로 경찰 출동할 수 있고 24시간 신변보호도 해준다. 그것도 어렵다 하면 가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임시숙소로 편의도 제공해준다. (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해서 가정폭력처럼 접근금지라든지 강제경위 등의 제도가 없다보니 재발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 중략 ... 그런 조치들은 중한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 보통 기존에 다 해왔던 것이다 ... 중략 ... 데이트 폭력이 중요한 범죄로 인식이 안 되다보니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이런 보호조치들이 잘 적용이 안 됐던 것이다. 왜냐하면 인력, 장비에 다 한계가 있으니 더 큰 중한범죄, 강도, 살인 피해자 위주로만 그동안 해왔기 때문이다 ... 중략 ... 가해자에 대해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없다 보니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게 경찰서장 명의로 경고장을 만들어 가해자 집으로 보내고 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당신을 지켜보겠다, 괴롭히지 말라, 다시 찾

아가지 말라는 내용의 구두 경고도 문자로도 보내면서 심리적으로 억제하고자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구속력도 없는 건데 하면서 찢어버리고 신경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다 ... 종략 ... 지금의 피해자보호는 사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게 아니고, 행정적 보호이다. 행정적 차원에서 그냥 해주는 것이다. 법에서 강제적으로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행정조치이다. 근데 가해자에 대해서 범죄 심리를 자제시키려면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 사실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구속 될 수도 있다는 사법적인 조치보다 더 센 것은 없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접근금지라는 게 법적으로 실효성 있는 게 아니다. 하지 말라고 구두 상으로 권유를 하는 것이지. (가)

가해자가 '왜 나를 범죄자 취급 하나, 이 여자도 문제가 있는데 왜 일방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범죄자 취급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우리도 할 말이 없긴 했다. 물론 그런 행태가 있었긴 했지만 솔직히 일방만의 이야기를 듣고 해버린 거니까... 일선에서는 조금 힘들었다. (나)

스토킹의 경우 현재 처벌규정은 경범죄상 과태료 수준인데, 과태료 몇 만원을 내는 것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경고 효과가 미미하다. 그나마도 모든 경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회 이상 지속되는 등 요건이 있고,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도 있다.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스토킹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구체적인 상황(장소, 일시 등)을 기억하거나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

스토킹에 대해서는 현재 처벌할 수 있는 게 「경범죄처벌법」상에 과태료 나가는 것 말고는 전혀 없다. 그것도 조금 귀찮게 했다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3회 이상 등 일정 조건들이 있다 보니 입증도 어렵다. 과태료 몇 만원 내는 것 가지고는 가해자들에 대한 경고 효과도 없다. (가)

본인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료만 갖고 있으면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6개월, 1년 전 거는 본인들조차도 일시와 장소를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다. 법에서 가장 우선되는 게 일시, 장소인데 그게 모호하여 상대방이 "거짓말했네"라고 나오면 거기에 대한 입증이 안 된다. (다)

현재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된 가해자의 경우 누범 여부, 관련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해서 가능한 상습성이나 관련성을 살펴보고 그에 근거하여 조치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데이트 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신고 내역부터 일단 확인해서 상습성을 밝혀내고 조금이라도 세계 처벌하고자 한다. 세계 처벌해야 재발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다른 법적으로 제재하는 게 없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가)

관련 통계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기가 어렵다.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금은 행정적 조치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별로 통계를 내고, 경찰서간 공유나 소통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초기니까 통계 집적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통계량이 증가하고 담당자가 교체되면 통계도 제대로 관리되기 어려울 것이다.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피해자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계속 누적해서 관리를 한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법적인 근거 없이 행정적 조치만으로 하다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체계적 관리가 될 수가 없다. 지금은 올해 처음 이런 걸 시작해서 반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누적해서 관리가 되는데 법 없이 1년, 2년 지나고 나면 담당자가 엑셀에다 정리한 것만 가지고 과연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느냐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은 일단은 각 경찰서별로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담긴 명단을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공유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양이 늘어나고, 담당자가 바뀌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된다. (가)

다. 스토킹·데이트 폭력 관련 대응이 필요한 이유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형사처벌이 되기 어려운 단계에서의 괴롭힘, 불안감 유발 등의 경우에는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단계의 괴롭힘, 불안감을 유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 종락 ...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려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거침입죄 정도밖에 없다. 그런데 가해자가 '나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이야기하기 위해 나오라고 문만 두드린 거다. 나는 전혀 들어갈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면 주거침입조차도 안 된다. 그럼 맨날 와서 문을 두드려도 이 사람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 게 몇 번 반복이 되면 경범죄상 불안감 조성으로 과태료 몇 만원 정도 내는 게 지금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여성피해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그런 것인데 말이다. (가)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은 방치하게 될 경우 폭력, 협박, 감금, 살인 등으로 점점 범죄행위의 강도가 세질 수 있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귀찮게 하고 따라다니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44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데이트 폭력 대응을 강화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스토킹 같은 귀찮게 하고 따라다니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치했을 경우에 점점 범죄의 강도가 세지면서 폭력, 협박, 감금, 살인까지 가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이것을 막는 근본적 방법은 스토킹 단계부터 차단을 시키는 것이다 ... 중략 ... 발생하고 나서 막는 것은 의미가 없다. 발생하고 났을 때의 사후보호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발생하지 않게 초기 단계부터 막아야하는데 그러려면 스토킹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은 사법처리 중심이기 때문에 스토킹처럼 행정 조치와 사법 처리의 중간단계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 격리조치를 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상대방을 어떻게 좀 해줬으면 한다. 우리도 하고 싶긴 하지만 법적근거가 없이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해자를 상담해보니까 보통 연애키스 중에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으면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 보다는 상대방 폭행 등이 재발 안 하게끔 했으면 하고 ... 중략 ... 아니면 이별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엔 상대방과 자기랑 관계를 끊어주셨으면 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근데 우리는 처벌위주로 가는 사법처리부서니까... 이 중간단계가 어렵다. (나)

스토킹은 다른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상대방을 잘 알고 있다는 점, 재발가능성이 크고, 중한 범죄행위가 될 가능성 등 때문에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동선, 주거지, 직장 등이 모두 노출된 상황이라 보복범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다 보니 상담은 하나 신고접수를 안한다. 사건접수나 고소를 하면 사건을 인지·배당하고 가해자를 불러 혐의를 확인한 뒤,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접수가 안 되면 수사가 어렵다.

이게 참 애매한 게 보복범죄가 또 우려가 되니까 여성분들이 신고접수를 꺼린다. 이 사람이 내 주거지랑 직장의 동선을 다 아는데 내가 이걸 경찰에 신고 했다고 어떻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때문에 상담은 하지만 사건접수를 꺼려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사건접수 없이도 신변보호조치가 가능하게끔 지침이 내려오고 우리 지침에는 가해자한테 경고조치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근데 경고조치를 괜히 선불리 했다가 또 보복범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일선에서는 경고조치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하는 입장이다. 사건이 진행이 되면 불려서 피신조사를 받거나 하면 되는데, 사건접수 없이 진행도 안 한 상태에서 괜히 경고조치했을 경우에 그런 범죄 우려가 높아서 선불리 행동을 못 한다. (나)

스토킹이나 연인 간 폭력은 상대방(가해자가 피해자를)에 대해 잘 안다는 것이다. 즉, 언제든지 똑

같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것보다 더 중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지금 상태에서는 형사나 여청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신변보호, 임시숙소와 같은 대안을 만들고 있긴 하는데 ... 중략 ... 어렵다. (다)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한다. 가해자가 처벌까지 가지 않고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록에는 있지만 형사처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재범이 발생해도 누범적용이 안 된다. 누범적용은 형사처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즉, 누적된 기록을 보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는데,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폭행, 협박은 반의사 불벌죄라서 여성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여성피해자는 잔정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만났던 사람이 처벌받는 거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남자분들도 그 당시에는 잘못했다고 본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성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수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이상 진행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재범이 계속 들어온다. 이게 사건 종결되고 송치된 사건이 아니라 내사종결된 사건이니까 누범 적용이 안 된다.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니깐. 징역 처분이나 그런 처분을 받아야지 누범이 적용이 된다. 기록에는 있어서 또 들어오면 사건이 심할 경우에는 구속영장도 신청하기도 하는데 ... 중략 ... 인식이 떨어진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가 어렵다. 우리는 재범위험성도 높고 살인까지 이어지는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하는데 실제로 발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려가 말 그대로 우려니까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근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나)

라. 향후 법제 정비 방향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을 하나의 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데이트 폭력은 주로 이별폭력에서 발생되고, 매달리다가 분노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개입해서 막지 않으면 살인, 감금, 협박 등의 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어지게 된다. 연인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와 연인관계가 형성되었다가 해소된 경우에 벌어지는 스토킹 양상은 다소 다를 수 있고,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는 이 둘(연인관계 전후의 스토킹 양상)과 사뭇 다를 수 있으나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연인관계, 모르는 관계, 연인이었다가 헤어진 관계 등 포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스토킹만 가지고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대여성범죄를 포괄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입법과정에서도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 한다. 스톱킹, 데이트 폭력 따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중략 ... 스톱킹 같이 귀찮게 하고 따라다니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치했을 경우에 점점 범죄의 강도가 세지면서 폭력, 협박, 감금, 살인까지 간다. 이것을 막는 근본적 방법은 스톱킹 단계부터 차단을 시켜야 하는 것이다 ... 중략 ... 데이트 폭력이랑 상당부분 중첩된다. 연인관계가 진행 중에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스톱킹하고 좀 다른 부분이고, 연인 관계 이전에 스톱킹 행위는 또 다른 영역이다.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스톱킹만의 영역이 있고 데이트 폭력만의 영역이 있는데 또 중복되는 영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영역이 있긴 하지만 각자 하는 것 보다 포괄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가)

스토킹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스톱킹의 경우는 처벌보다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처벌에 대한 내용을 포괄해야 한다면, 스톱킹에서 시작해서 폭행,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까지 포괄해서 언급해야 한다.

스토킹 행위만을 가지고서 처벌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된다. 스톱킹에서 강력범죄까지 더 발전했을 경우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법이 되어야 실효성 있을 것이다. 스톱킹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보통 스톱킹 행위라 한다. 거기서 더 발전해서 폭행, 살인, 강간 등의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그것은 스톱킹 단계가 아닌 일반 형사 범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스톱킹 관련된 법만 만든다면 이 스톱킹 단계를 넘어섰을 경우에 법 자체가 별 필요가 없어져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실효성이 있으려면 스톱킹에서 더 발전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까지 같이 아울러야 된다고 생각한다. (가)

스토킹·데이트 폭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이유로 처벌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행위의 경중으로 볼 때 처벌이 중하기도 어렵다. 상한을 높게 두고 스톱킹이나 데이트 폭력에 해당되는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고자 해도 실제 가중처벌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범죄에 비해 사소한 범죄로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에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보다는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처벌보다는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강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기존 법으로도 이미 처벌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여성 대상으로 범죄를 한 가해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는 없다. 처벌에 대한 특별법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가해자 처벌 외에 여성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가 필요하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난 후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불안감, 구속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불구속 됐을 때 다시 집에 찾아올 수도 있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 폭력 같은 경우는 아예 강제 격리조치가 되는데, 부부가 아닌 남녀관계에서는 가해자 처벌은 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 중략 ...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폭력 행위는 두 배까지 가중처벌 하겠다는 법을 만들고 상한을 아무리 높이 두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중처벌을 하기 쉽지도 않고, 한다 하더라도 행위만을 놓고 봤을 때 다른 것에 비해서는 사소한 범죄이다. 작은 것을 가중 처벌한다 한들 얼마나 세계 처벌이 되겠느냐하는 문제인 것이다. 직접적 형사처벌 보다는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피해자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 행정적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직접적인 형사처벌보다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처벌보다는 재발 우려나 불안감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접근금지, 통신금지, 임시조치 등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할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법적 조치가 제재효과가 있다. 한편, 가정폭력의 경우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접근금지 적용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과연 접근금지가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단순히 따라다니면서 때리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따라 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이런 것들조차도 피해자가 그걸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어떤 도움을 요청한다면 피해자보호를 해주고 가해자에게도 접근금지라든지 이런 법적 제재 조치를 해줘야 한다. (가)

우리는 처벌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보호가 대두되고 있고 많이 중요시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약한 것 같다. 만약에 입법화되면 피해자보호 관련해서도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 중략 ... 법이 입법화됐을 때 경고조치에 대한 제재 즉, 경찰관이 경고조치를 할 수 있고, 그런 경고조치에 대한 법적 제재, 과태료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수월할 것 같다. (나)

가정이라는 곳이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둘 다 집 울타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둘 다 자녀들을 다 만날 수 있고. 그런 가정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또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접근금지 제도를 만든 것이다.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데서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나, 어차피 남남이고 같은 집에 살지도 않는데 접근금지를 시킨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중략... 효과 없다. 전혀 없다. (다)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어야 하고, 다만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 보호는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다른 법과의 균형상 형법상 폭행죄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라면 반의사 불벌죄 수준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처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피해자보호조치는 해야 한다.(가)

3.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 심층면접 결과

가. 현행 대응체계의 문제점¹²⁾

피해자가 경찰에 가도 피해 내용을 자세히 파악도 안하는 경우도 있다. 자세히 수사하면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 수사기관이 그렇게 자세히 수사하지 않는다.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스토킹에 대한 개념이 없다보니, 경찰 판단에 의해 스토킹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경찰이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랑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맞나? 라는 질문을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 갚는다고 하니 돌려보냈다. 그 사건의 경우 연인 간 동영상 촬영, 유포, 강간이 다 중첩되어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신고 접수도 제대로 안 해주고 돌려보낸 것이다. 경찰에 수사권 있다하더라도 자기 담당 위주로만 사건 접수를 하면 피해자가 다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누락되어 경미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반복적으로 스토킹 한 것을 증명해야하는데, 신고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보니……. (A)

경찰에서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면 폭력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미 스토킹 피해자스러움/피해자다움이 형성되어 있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좋아한다고 하면 일단 사건 자체를 범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경찰이 가해자에게 경고조치라도 해주면 다행인데, 둘이 화해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경범죄 자체도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12) 피해자 지원기관의 관계자들은 내담자들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경찰의 대응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면 폭력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중략... 경찰에 가도 피해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 안 한다. 자세하게 조사하면 경범죄로 가지 않고 형법 안에서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로 가져갈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제대로 안 해주는 게 문제이다. 수사기관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둘 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C)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경찰은 '연인 사이에서 그럴 수 있지' 식으로 가볍게 보는 경찰의 시선 때문에 결국은 (범죄가) 심각해진다 ... 중략 ... 가장 먼저 신고하는 곳이 경찰인데, 경찰이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싸움으로 치부하는 것이 문제이다. (F)

가해자가 피해자를 좋아했던 사이면 일단 사건 자체를 범죄로 보지 않는 분위기이다. (C)

데이트 스토킹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를 경찰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해주는지, 자해를 하는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 인식 전환과 관련된 교육이 전제되어있지 않으면 법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F)

택배기사로 스토킹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사건 신고 시 경찰의 반응은 '가해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나서 신고하라. 가해자가 호감이 있어서 그랬다는데 좀 봐줘라, 한 번 용서를 해주렴. 피해자 널 좋아하는 게 어디냐'라는 반응이었다. 스토킹에서도 피해자다움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B)

경찰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들은 이후 대응할 때 경찰에게 알리지 않았다, 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경찰이 와서 가해자에게 경고라도 하면 다행인데, 둘이 오해이니 화해하라는 식으로 범죄로 인지로 안 한다. 스토킹법이 있더라도 경찰이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하지 않으면 경범죄법 적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 중략 ... 경찰에 신고하러 가면 정말 할 거냐고 묻고, 둘 사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다. 접수를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화로 물어보는 사례도 많다. 절차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상담도 안 받는다. (A)

스토킹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부여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신고를 하면 증거를 갖고 오라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연락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피해자 본인이 스토킹 행위자로 신고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데이트 폭력 역시 증거수집을 위해 헤어진 가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도리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스토킹 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연락을 계속 했는데, 가해자는 자신이 스토킹 피해자라고 하는 사례도 있다. 그래서 스토킹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고 중요하다. (A)

피해자에게 네가 다 입증해라, 증거 들고 오라는 게 현실이다.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만날 수밖에 없고, 또 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존재한다. (C)

50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피해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 경우는 스토킹법으로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B)

피해자 지원체계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업무 중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지원도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게 되고, 경제적 협박이나 갈취 등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예를 들어 법률지원 등)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의료지원이나 법률지원에 대한 언급 없이 상담지원만 언급되어 있어서 실제 지원도 상담만 가능하다. 현행 시스템에서도 젠더폭력으로 접근해서 포괄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성적폭력으로 협소하게 정의함으로써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토킹법이 제정된다면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어서 데이트 폭력까지 포괄하여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데이트 폭력 관련하여 다른 의료지원, 법률구조 등 아무것도 못하고 상담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범죄피해지원센터에 보내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스토킹법이 있다면 우선 여성가족부 운영 지침 안에 최소한의 법률구조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완과, 그것에 따른 추가 예산 배치가 있다면 해결될 것이다. (B)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주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등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하게 상담이 이루어진다. (C)

데이트 성폭력은 성적 폭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나, 성적 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욕설이나 협박 등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즉, 성폭력 피해자와 달리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상담소에서 병원에 연계하여 의료비 지원이 안 되거나 기존 형법, 법률 구조 지원으로 변호사 선임도 안 된다. 개인 상담소에서 법률 지원 체계가 있으면 상담으로는 지원을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자 동석 등의 지원은 성적 폭력이 없어서 어렵다. (B)

데이트 폭력의 특수성 고려했을 때 상담소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정도의 지원 조치는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데, 성적인 폭력만 제한하여 지원 가능한 상황이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경제적 갈취나 협박 등이 항상 동반되는데 상담으로 문제 해결하는 수준으로만 지원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보니 복합적인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폭력을 굳이 찾아내서, 법률 구조를 신청해주기도 한다(피해자가 성적 폭력 관련 문제 해결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법률 구조 같은 경우, 성폭력 고소건 아니면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익 소송 등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다. (C)

스토킹, 데이트 폭력 피해 시, 결과적으로 성폭력 피해가 있을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다. 데이트 폭력의 폭력 세트 중 하나가 성폭력인데, 성폭력이 들어 가있어야만 지원 대상이고, 폭력만 있을 경우 대상이 아니다. 제한적으로만 보는 것이다. 성폭력의 피해가 없는 데이트 폭력으로 전화 오면, 우리 기관 쪽에서 지원할 수 없고, 경찰과 이야기하라고 한다. (E)

사실 성폭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다. 성폭력을 성에 대한 폭력이 아닌 젠더폭력으로 본다면 충분히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지적해주면 법률적 근거가 없어도 충분히 운영 지침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B)

나. 스토킹·데이트 폭력 관련 법 제정 필요성

스토킹은 가시적인 물리적 폭력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일상 자체가 감시당한다는 두려움, 불안감,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에서는 경범죄상의 과태료 수준이라 가해자들도 신고하라는 식으로 나온다.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심각하고 위중하게 다뤄야 한다.

피해자들이 불안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무엇이 필요하다. 딱히 상담이 필요하진 않다. 스토킹이 지속되는 것은 협박 때문인데, 피해자들은 이 때문에 피해가 있는 걸 말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가해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데, 상담을 통해 그렇지 않을 것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 가족의 신변위협, 살해 위협이 제일 크다 ... 중략 ... 다른 성추행이나 강간보다 스토킹은 지속, 반복적으로 가해를 계속 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 불안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 중요하다. 상담소 사례를 봐도, 일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또 스토킹이 시작 돼서 오시는 분도 있다. 피해가 한 번 시작되면,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끝이 없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 ... 중략 ... 스토킹은 경범죄로 처벌할 사항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스토킹 행위로 인해 일상 자체가 항상 감시당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이다. 예를 들면 찾아와서 말을 걸고 직접적으로 위협하면 신고라도 하는데, 그냥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계속 쳐다보기만 하는 경우, 피해자는 신고를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 (A)

가벼운 스토킹은 연인 관계에서 헤어지고 나서 페이스북에 글 올린다거나 계속 메일 또는 카톡을 보낸다거나 집에 서 있는 경우이다. 가해자의 존재 자체가 공포를 준다. 여학생들이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더욱 심각하게 돌변을 하고. (D)

아무런 행위를 안 하고 계속 집요하게 문자, 전화한다거나 지켜본다거나, 집 다녀온 흔적을 남기는 등의 정서적 폭력은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형태이다. (F)

지금 법은 살인이나 성폭력과 같은 큰 피해가 있어야만 처벌, 보호가 되는 것이 문제이다. 세 번의 협박 문자 등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주관적 공포는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극단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경찰이 개입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것이다. 이것을 심각하게 다뤄줘야 한다. (E)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법이 있다고 말해도 가해자가 무서워하지 않고, 더 많은 가해를 할 것이 뻔하다,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식의 반응이다. 법에 도움을 청하더라도 경미하게 돌려보내니 가해자들도 신고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A)

스토킹이 경범죄고 과태료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니 가해자들은 '신고해, 나 벌금 낼게 대신 네 사진 뿌린다'는 반응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B)

스토킹이 가볍게 처벌 돼서 '벌거 아니네, 벌금 내고 말지'의 식이 되어버리니깐 피해자가 끝까지 사달리고 보호받지 못하고 살인까지 갈 수 있다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F)

스토킹 관련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스토킹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가는 전단계라는 의미보다는, 기존 형법, 성폭력 관련법, 가정폭력 관련법에서 포괄되지 않은 피해상황이나 가해행위(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지켜보고 찾아오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니 피해자는 차라리 죽도록 맞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동의 없이 피해자를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 중략 ... 스토킹이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가는 전 단계라는 의미보다는 기존 형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에 포섭되지 않는 피해를 다루고, 그런 피해들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제대로 적용이 어려울 때 스토킹 법 자체만으로도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C)

피해 양상이 증첩적으로 이루어진다. 강간은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이 되는데, 초기에 이런 식으로 협박, 동영상 내용 보내는 행위 자체가 두려움 느끼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규율로서 스토킹 법 필요하다 ... 중략 ... 만약 법이 만들어지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냥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계속 쳐다보기만 하는 경우 등과 같은 부분을 어떻게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 (A)

문제는 신고를 해도 그 정도는 연인 관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거라 치부되는 정서적으로 당하는 폭력이다. 가정폭력, 성폭력과 별도로 데이트 폭력, 스토킹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F)

현행 경범죄 수준의 경고조치로는 실질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경고조치함으로써 더 심각한 상황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형만이 아닌, 경고와 피해자 신변보호를 통해 보다 더 심각한 범죄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경찰이 경고조치하는 것만으로도 더 심각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다. 경고조치의 경우 말로 하거나 다른 나라는 서면 경고장을 보내

는 경우도 있다. 또, 구치소에 잠깐 있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에게 경고의 의미를 주고 더 큰 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 본다. 즉, 모든 것을 양형하는 방식이 아닌 수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지금도 경범죄로 경고조치를 하고 있지만, 경고로서의 실질적 의미는 없으므로 더욱 확실한 경고조치가 필요하다. 경고조치와 동시에 피해자 신변안전을 위해 접근금지명령까지 하여 다음 단계로 갈 수 없게 해야 한다. 경고와 동시에 피해자 신변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B)

다. 법률 제정 관련 쟁점

법률 제정에 있어서 쟁점은 우선 ‘스토킹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이다. 아는 사람/모르는 사람 등 행위자와의 관계, 온라인/오프라인 등 발생영역, 행위의 내용 등이 다양할 수 있어서 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또한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의 경계도 다소 모소한데, 스토킹의 경우 행태에 기반하고 데이트 폭력은 관계에 기반하여 정의되기 때문이다. 데이트관계 안에서는 스토킹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데이트관계가 종료된 후에 스토킹이라고 피해자 스스로 인지하고 명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스토킹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상당소마다 스토킹 개념이 통일된 게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 크게 스토킹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연락 오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 여러 차례의 기준을 2회, 3회로 해야 하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다 ... 중략 ... (낮선)차가 위협하거나 쫓아오는 경우 등도 스토킹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엇을 스토킹으로 볼 것인가(정의)에 대한 고민이 있다 ... 중략 ... 최근에는 스토킹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되다보니 피해자들도 이메일이나 문자가 반복적으로 온다하면 삼개월 이내에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것이 스토킹이라 인지하는 경우가 많고, 스토킹 가해 행위를 보면 스토킹과 협박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 중략 ... 전화를 안 받으면 회사 찾아와서 보고 있고, 성관계동영상을 공공 장소에서 틀기도 한다.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되고 피해가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 (A)

모르는 사람에 의한 스토킹은 음란전화를 몇 주 이상 계속 받는 경우 등이 많다. 그런 경우 주변에 알리기가 쉽고 신고를 빨리 하는 편인 반면 데이트 관계에서는 스토킹뿐 아니라 협박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피해를 빨리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A)

데이트 폭력을 현재 사귀는 사람뿐 아니라 헤어진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까지 크게 보면, 스토킹 가해자가 전남친인 경우, 데이트 폭력 안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그렇지 않은 스토킹은 동네 사람, 직장 상사,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경우이다 ... 중략 ...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관계 종료) 가해자의 연락이 지속되면 피해자 스스로가 스토킹이라 명명하고, 관계가 확실히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면 데이트 폭력이라 명명한다. 피해자가 헤어졌다/안 헤어졌다의 기준에 따라서 다

르게 명명하는 부분들이 있다. 관계의 중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들이 스토킹이다. 그런데 데이트 관계 안에서 내 의사를 무시하고 가해자가 찾아오거나 연락하거나 감시하는 스토킹도 있을 수 있다. (C)

연인관계에서 폭력이 오래 지속되었고, 조짐도 많았는데 여학생들이 그것을 성폭력이라 인식을 못한다. 그리고 나중에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식었을 때 그것을 강간으로 느끼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데이트 폭력은 관계가 깨졌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다. 관계가 지속되면 똑같은 수위의 행위라도 성폭력이라 인식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다. 상대에게 문자 100통 넘게 보내는 것이 스토킹으로 변질될 수 있다 하면 대학생들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 ... 중략 ... 안면 없는 사람이 SNS 스토킹 피해를 하는 경우도 많다. 친밀한 관계뿐 아니라 오히려 안면이 없는 사람에 의한 괴롭힘의 양상으로도 스토킹이 발생한다. 지금 여성혐오의 분위기에서 또 다른 형태의 스토킹이 생기고도 남을 것 같은데, 관계에 근거해서 정의를 하면, 포괄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성혐오를 포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나 최근 여성혐오 분위기가 스토킹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 중략 ... 온라인과 오프라인 분리할 수 없을 것 같다. (D)

개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 의한 스토킹, 직장 등 아는 관계 내 데이트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가 있다. (G)

스토킹은 온라인상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 sns를 해킹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상한 소문 퍼뜨리거나, 가계정을 만들어 피해자 관련된 글을 올리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 사이버 범죄로 수사해야 하는데, 경찰이 가해자가 나 또한 이 계정을 도용당한 것이다 주장하면 더 이상 수사 안 하고 처벌이 안 된다. 온라인상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심증으로는 이 사람이 했다는 것이 명백한데, 실제로는 목격자도 없고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처벌할 수 없는 과정이 되니까 피해자들의 고통이 엄청 크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처벌 안 받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피해자는 그 가해자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A)

스토킹에 대해 정의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라고 정의할 경우 얼마나 거절했는가를 증명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없도록, ‘동의없이’로 명명되어야 한다.

사실 스토킹 관련 정의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보통 스토킹 정의에 ‘의사에 반하여’ 이런 표현이 협소하다고 판단된다. 그렇게 법률을 제정하다 보면 얼마나 거절했는지와의 문제와 연동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증해야만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B)

스토킹은 재범율이 높고, 가해자들의 행위가 크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예방과 재범방지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다시 스토킹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서

면경고, 일시 구류 등을 통한 경고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해자 경고와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이라는 것이 실행, 집행유예 몇 년을 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 인식 개선이 같이 가야 한다. 사례를 보면, 가해자는 한 사람 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타겟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가해를 하기 때문에 스토킹은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이다. 처벌의 경우, 스토킹 가해자들의 행위가 크게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벌금 내고 더 가해를 하는 특징이 있다 ... 중략 ... 실제 법체계 안에서 성추행 등과 비교했을 때, 스토킹으로 실행이 나올 경우는 없고, 벌금형 정도가 나올 것이다. 법제화가 된다하더라도 큰 형을 내릴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처벌의 내용을 주로 담은 법이기 보다는 예방과 재범방지를 하기 위한 법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까 생각한다 ... 중략 ... 같은 위치에 같은 차가 있거나 그 앞에서 있는 식으로 가해자는 피해를 인지시킨다. 근데 이 경우에는 법에 안 걸리게 쳐다보기만 하고 간다. 처벌법으로 가면 법은 항상 피해갈 수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 재범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필요하다. (A)

피해자가 상담을 통해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은 신변보호이다. 보호시설에서 몇 년씩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피해자 행동반경을 다 알고 있고,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며, 피해자가 가족과 유대관계가 약한 것 등 어떻게 취약한지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해어지자하면 퍼뜨릴 거야”라는 식으로 계속 지속된다. (E)

모든 사람에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경찰이 경고조치하는 것만으로도 더 심각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다. 경고조치의 경우, 말로 하거나 다른 나라는 서면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또, 구치소에 잠깐 있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에게 경고의 의미를 주고 더 큰 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 본다. 즉, 모든 것을 양형하는 방식이 아닌 수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지금도 경범죄로 경고조치를 하고 있지만, 경고로서의 실질적 의미는 없으므로 더욱 확실한 경고조치가 필요하다. 경고조치와 동시에 피해자 신변안전을 위해 접근금지 명령까지 하여 다음 단계로 갈 수 없게 해야 한다. 경고와 동시에 피해자 신변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B)

피해자가 느끼는 신변위협에 대응하는 경찰의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접근금지, 분리, 격리, 초기응급조치가 핵심이다. 경찰의 태도가 가해자의 재발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피해자들이 신고했을 때 경찰이 증거를 수집해 오라고 수사진행을 거절하면, 피해자들은 다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된다. 피해자의 특성이나 범죄 양태 등을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은 아는 사람/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도 많이 알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변위협을 많이 느낀다. 실제로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스토킹이 신고 되

고, 가해자가 또 찾아와서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 경찰이 판단하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 재작년 안산 인질극도 지속적 스토킹 피해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신고하러 갔을 때, 경찰이 접수를 하고 신고를 했다면 그렇게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의 상황을 별일 아닌 걸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A)

스토킹 법안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조치는 접근금지나, 분리, 격리 조치 그리고 경찰의 초기 응급 조치이다. 경찰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피해자가 또 다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더 위험한 상황일 때 연락해라'는 식으로 대처를 한다면, 피해자는 '한 대 맞고 와서 신고를 해야 하나?' 등의 더 위험한 방법까지 생각하게 된다. (B)

최일선에서 신고 접수를 받는 경찰들이 스토킹을 범죄라고 인지해야 하고, 스토킹 사례라고 규정하고 수사 및 개입하는 것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경찰의 발언과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스토킹은 대부분 상담소 전 경찰에 신고했었으나 조치를 안 해줘서 상담소에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소가 두 번째 단계인 경우가 많다. (A)

경찰관 교육이 필요하다. 전담팀 있어도 계속 경찰이 바뀌기 때문에 전담팀의 제대로 된 역할이 어렵다 ... 중략 ... 피해자들이 신고하러 가서 경찰이 증거수집 해서 다시 오라며 거절을 한 번 당하면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다. (B)

스토킹 행위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데이트 상대, 배우자, 동거인, 친족 등)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스토킹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발의된 법률들 중 벌칙조항에 보면 데이트 상대, 배우자, 동거인, 친족 등 인적 신뢰관계에 폭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 스토킹 자체도 인적 신뢰관계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입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싶다. (C)

나의 개인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공개되거나 주변에 알려질까봐 대응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가족들까지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상황도 있었다 ... 중략 ... 최근에는 입사 전 직장 내 면접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고 가해를 하고, 피해자는 불이익의 두려움 때문에 응할 수밖에 없는 사례도 있었다. 스토킹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면접 과정에 추행이 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해자가 아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이 사실 법으로 규정은 어렵기 때문에 인식개선 교육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중략 ... 개인정보가 범죄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정보 보호 및 관리의 중요성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해를 하면 이중처벌 한다든지... 최근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높아짐에 따라 가해자도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가해를 하고, 피해자의 우려도 더 커진 것 같다. (A)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피해자를 위한 전달체계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 또 기존 범죄피해자 규정이나 지원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따로 만들면 너무 분절화 될 것이다. 여성폭력 맥락 속에서 다루지는 게 중요하다. 같이 하면 되지 않나. (A)

스토킹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도 스토킹 별도의 새로운 상담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중략 ... 여성단체들이 스토킹을 젠더폭력으로 보는 측면이 크니까 여성단체에서 상담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있긴 한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나 피해자의 규정 자체가 협소하지 않다면 그 시스템 안에서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다.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C)

지원체계 따로 만드는 건 예산낭비이다. 기존에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으로 세분화하지 않았고 지원체계가 없어서 뭉뚱그려했을 뿐이지 여성폭력에 대해 이미 다 하고 있다. 지금 체계로 충분하다 ... 중략 ... 이미 여성폭력 다 하고 있었다. 별도 체계 만들지 말고 더 잘할 수 있게끔 체계를 정비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G)

시스템의 문제는 기존 체계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시스템 정비도 특례법 안에서 다루주는 게 필요하다. (F)

상담지원을 할 때, 피해자의 두려움을 완화시켜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내적인 힘을 키워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담소의 역량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구분되어 지원체계가 운영되었는데, 기존 체계를 활용하면서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이라는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접근, 이를 위한 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스토킹 업무를 다룰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서 특정 상담소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기존 지원체계의 지역별 편차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상담할 때는 그 두려움에 대해 다루주는 게 1차적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상담을 한다. 여기에 오고, 전화한 것만으로도 힘이 있다는 전제하에 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 도움 될 만한 사람을 같이 찾아보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 수사진술의 두려움이 있을 때는 역할극을 통해 경찰 대응을 잘 할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한다. (B)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특례법」 지원체계 안에,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특례법」 지원체계 안

에서 지원된다 ... 중략 ... 현재 상담소가 데이트 폭력, 스토킹 다 끌어안고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관이다 ... 중략 ... 지역별 편차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이다. 지역에 따라 성폭력상담소만 있는 경우도 있고 가정폭력상담소만 있는 경우도 있다 ... 중략 ...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 시설로 가야하지 않을까.. 성폭력, 가정폭력 구분하지 말고 통합상담소로 가야하지 않을까 한다 ... 중략 ... 젠더에 기반 한 여성폭력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나누어 놓다보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젠더폭력에 기반한 시설 정비라고 생각한다 ... 중략 ... 법을 제정과 함께 여성폭력과 관련된 시설의 체제를 정비하고 통합적, 젠더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F)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는 게 나올 것 같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을 구분지어 생각하는 것을 바꿔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 중략 ... 과부하 걸릴 것 같다. 지역 상담소에서도 인력이 없고, 인건비가 낮은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이 상황에 만약 거점별로 하게 되면 인력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B)

기존 여성폭력 관련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별도의 법률로서 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관련 법들과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관련 법률을 준용한다고 해서 해당 범죄행위를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상담교정 등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이 범죄로 인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지도 있다. 기존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대상 폭력범죄 관련 법률체계와 상호모순적이지 않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위법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 자체가 너무 완결성 있으면 또 쪼개지는 것이니 최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 관련법을 준용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법 자체가 어떤 의미로 만들어진 건지 보여주고자 하는데, 법들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음을 법안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가정폭력을 준용했을 때 고민은 가정폭력 자체가 보호처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범죄로 안 보지는 부분이 있긴 하다. (C)

특례법이 제정된다하면, 개념 정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여타 기존법과의 충돌, 상충하는 지점을 최소화해야 한다 ... 중략 ... 여성폭력이 특례법의 형태로 계속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스토킹이 여타법과 어떻게 조화롭게 갈 수 있을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특례법들과 상호모순적이다. 그리고 하위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 스토킹 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된 부분을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스토킹 관련된 거 넣어야 한다. (F)

현재 여성폭력 관련된 법이 다 찢어져있는 상태인데, 형법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 최근의 논의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법률의 위치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어떤 위치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현장에 있다. (A)

현재 여성폭력은 다 쪼개져 있다. 별도로 특수성이 있는 것은 법안이 필요한 거 같으나, 사각지대

의 문제에 있어서는 데이트 폭력,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등 다 쪼개서 법안을 만드는 것 보다는 우선안을 짚을 수 있는 기본법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형법 안에서 젠더폭력의 별도의 장을 만드는 이야기도 논의 중이다. 사각지대 부분을 고민 중이다. (C)

4. 소결

이 장에서는 현재 스토킹·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피해자지원기관에서 어떻게 수사·지원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봤으며, 향후 스토킹·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법률 제정 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 7명과 수사기관 관계자(경찰) 3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제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킹·데이트 폭력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리를 하려면 형법상 범죄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현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나 분류, 처분을 하는 것이 어렵다. 대신, 각각의 행위태양별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가해행위 중 형법상에 해당하는 폭행, 상해, 협박 등에 속하지 않는 행위가 많고, 그렇다고 「정보통신망법」이나 「경범죄법」 등을 적용하기에도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피해자들을 위한 신변보호조치에도 한계가 있으며, 관련 통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현재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의 처벌규정은 과태료 수준이어서 과태료 몇만원 내는 것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경고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모든 경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회 이상 지속되는 등 요건이 있고,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해 기존에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기 어려운 단계에서의 괴롭힘, 불안감 유발 등의 경우에는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셋째, 수사기관과 피해자지원기관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스토킹·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게 될 경우 점점 범죄행위의 강도가 세지면서 폭력, 협박, 감금, 살인 등으로 발전할 수 있어서, 귀찮게 하고 따라다니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범죄는 가해자가 상대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점, 재발가능성이 크다는 점, 중한 범죄행위로 발전될 가능

성 등 다른 범죄와는 차별되는 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재 경찰체계는 사법처리 중심이기 때문에 스토킹 같은 중간단계에 있는 경우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넷째,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이 폭력행위나 양상에 있어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 처벌과 동시에 가해자 제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 재발우려나 불안감 해소가 중요하다는 점 등에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스토킹·데이트 폭력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가는 전단계라기보다는, 기존 형법, 성폭력 관련법, 가정폭력 관련법에서 포괄되지 않은 피해상황이나 가해행위(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외, 스토킹·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의, 피해자의 거절 또는 동의 여부,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 마련, 가중처벌 여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스토킹·데이트 폭력 관련 외국의 입법례 분석

1. 각국의 스톱킹 규제 관련법의 일반적 특징	63
2. 스톱킹 규제 관련 각국의 입법례	79
3. 데이트 폭력 관련 각국의 입법례	94
4. 소결	100

이 장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스토킹·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를 법률로서 규제하고 있는 국가들의 입법례를 살펴본다.

1. 각국의 스토킹 규제 관련법의 일반적 특징

가. 스토킹 개념의 포괄성과 그 적용상의 한계

스토킹 개념에 대한 통일적인 합의가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국가마다 스토킹의 구성요건, 스토킹의 규율양상이 상이할 수 있다.

〈표 V-1〉 스토킹에 대한 각국의 정의

국가	도입	용어	구성요건
미국 캘리포니아주	1990	Stalking	형법 제646.9조 (a) 의도적, ¹³⁾ 악의적,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의도적,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 (b)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까운 가족의 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일으킬 의도로 믿을만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
캐나다	1993	Harassment	형법 제264조 타인을 반복적으로 쫓아다니거나 타인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교신하는 행위, 타인이 방문, 생활 또는 일하고 있는 장소를 둘러싸거나 관찰하는 행위
호주 퀸스랜드주	1993	Unlawful Stalking	형법 제359조A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1회 이상 혹은 1회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1994	Unlawful Stalking	형사통합법 제19조AA(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s19AA) (a) 적어도 2회 이상 분리되어 행해진, 다른 사람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행위 (b)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해악이나 심각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유발할 의도를 가진 행위
호주 빅토리아주	1995	Stalking	형법 제21조A(Crime Act 1958 s21A)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피해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것이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일련의 행위
뉴질랜드	1997	Harassment	Criminal Harassment (Harassment Act 1997 ¹⁴⁾) 12개월 내에 2회 이상의 분리된 괴롭힘 행위로 (a) 다른 사람이나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에 대하여 공포를 일으킬 의도를 가진 것 (b) 다른 사람의 특정 상 황 하에서 다른 사람이나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만한 것을 아는 것

국가	도입	용어	구성요건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즈		Harassment	(a) 타인에게 괴로움을 주고 (b) 타인에게 괴로움이 되리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일련의 행위
아일랜드		Harassment	법령에 근거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특정한 수단을 통해 타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관찰하거나, 침입하거나 기다리거나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괴롭히는 것
벨기에	1998	Belaging	442의2조 이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
네덜란드	2000	Belaging	285b조 타인에게 특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거나 수인하게 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체계적, 고의적으로 타인의 생활영역을 침해하는 행위
몰타 공화국	2005	Stalking	251A조 (a) 다른 사람에 대한 괴롭힘이 되고 (b) 행위자가 그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일련의 행위 251B 일련의 행위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그 또는 그의 재산, 친족등과 그 재산에 대해 폭력이 행사될 것이라는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 251C, 251A와 251B의 괴롭힘은 불안이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포함함. ¹⁵⁾
오스트리아	2006	Beharrliche Verfolgung	107a조 타인에 대하여 위법하게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행위
독일	2007	Nachstellung	제238조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을 끈질기게 하여 그의 생활형상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 1. 그의 주변을 찾아가거나, 2. 전화통신수단 또는 기타의 통신수단을 사용하거나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그와의 접촉을 하려고 시도하거나, 3. 그의 개인관련정보를 오·남용하여 그에게 재화나 용역을 주문하거나 제3자에게 그와 접촉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4. 그 자신 또는 그와 가까운 관계의 자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 건강 또는 자유에 대한 침해를 위협하는 경우 5.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헝가리	2008	Zaklatás	제222조 타인의 사생활 및 일상생활에 대한 위협 또는 임의적 간섭을 목적으로, 특히 타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연락을 위한 통신수단에 의하여 조직적 또는 상시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행위

13) “willfully”: 범의의 종류 중 하나로 ‘willfully’ 개념은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법원들이 규정의 맥락에 따라 적절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훈(2003), “위법성 인식으로서의 Mens Rea”,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p.411 참조.

14) 뉴질랜드 Harassment Act 1997 참고(<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7/0092/latest/whole.html#DLM417732>) 최종접속일: 2016.12.20.

15) 몰타공화국 CRIMINAL CODE 참고(<http://www.justiceservices.gov.mt/DownloadDocument>).

국가	도입	용어	구성요건
이탈리아	2009	Atti persecutori	제612의2조 타인에게 반복적인 협박 혹은 추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
룩셈부르크	2009	Harcèlement obsessionnel	제442-2조 스토킹 행위로 대상자의 안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거나, 이 대상자에게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고통을 주는 행위
체코공화국	2010	Nebezpečné pronásledování	제354조 누구든지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타인과 친밀한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대한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
폴란드	2011	uporczywe nękanie	제190a조 타인 또는 타인과 친밀한 사람을 스토킹함으로써 타인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

국가마다 스토킹을 규정하는 구체적 내용이나 핵심적 요소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스토킹에 대한 규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일련의 행위’나 ‘반복적 행위’ 등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회적이거나 지속성을 갖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으로 인지하지 않는다. 또 다른 공통점은 괴롭힘(Harassment)이나 쫓아다님(Pursuit)과 같이 스토킹을 규정하는데 이러한 개방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방적인 개념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스토킹의 다양한 양상을 모두 포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스토킹의 구체적 의미를 포착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스토킹 행위주체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문제적이며 범죄라는 점을 자각하기 어렵게 하는 한계가 있다. 이 뿐 아니라 스토킹에 대한 포괄적 규정은 법적인 판단이나 법집행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를 확대시키면서 스토킹에 대한 법적 규제나 처벌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를 갖게 한다.

특히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는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는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처럼 스토킹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점으로서 법을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미국과 호주 대부분의 주, 일본은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¹⁶⁾

aspx?app=lom&itemid=8574&l=1) 최종접속일: 2016.12.20.

16) Lamplugh, D. and Infield, P.(2003), “Harmonising Anti-stalking laws”, *George*

독일 역시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네 가지의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토킹 행위에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로서 그 생활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형벌의 구성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2012년 개정 전까지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법률에 ‘괴롭힘(Harassment)’의 구체적 행위 유형에 대해 제시하지 않아,¹⁷⁾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2012년 5월 「자유보호법(the Protection of Freedoms Act 2012)」에 의해 제2A조와 제4A조를 신설하면서,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있다.

법률에 스토킹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명시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법률이 규율하는 스토킹 행위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뿐만 아니라 경찰의 조사단계에서부터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법을 근거로 이를 판단하여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위 유형의 예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거나 이를 근거로 처벌하기에 일정한 한계를 내포하게 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스토킹 규제법에 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서 메일을 통한 스토킹 행위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¹⁸⁾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34(4), pp.861-863쪽에서는 미연방 각 주의 입법 형식을 일본의 스토킹 방지법과 함께 열거형(list model)으로 분류하였다.

17) 이 때문에 저자들은 개정 전 영국의 괴롭힘 방지법을 “일반적 금지형(General Prohibition Model)”으로 분류한 바 있다. Lamplugh, D. and Infield, P.(2003), 위 논문, pp.863-856.

18) 2013. 7. 3. 개정으로 원치 않는 전자메일을 계속해서 보내는 행위 역시 규제대상에 포함되었다.

〈표 V-2〉 행위 양태 예시

국가	예시 내용
미국 미시건주	동의 없는 접촉 (i) 그 개인을 따라다니거나 그의 시야 내에 나타나는 것 (ii) 공공의 장소나 사적인 재산 내에서 그 개인에게 접근하거나 대면하는 것 (iii) 그 개인의 직장이나 주거에 나타나는 것, (iv) 그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거나 점유 중인 재산 내로 들어가거나 그것에 머무는 것, (v) 전화로 그 개인과 접촉하는 것 (vi) 그 개인에게 우편이나 전자통신을 발송하는 것 (vii) 그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거나 점유 중인 재산에 어떠한 물건을 놓아두거나 배달하는 것
호주 빅토리아주	(a)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을 따라다니는 행위 (b) 우편,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이메일 기타 전자통신 등 방법에 불구하고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연락하는 행위 (ba) 인터넷, 이메일, 그밖에 전자통신으로 (i)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에 관한 혹은 (ii)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에 관한 것이거나 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진술 등을 출판하는 행위 (bb)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컴퓨터에 허가받지 않은 컴퓨터 기능을 야기하는 행위 (bc)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의 인터넷이나 이메일, 기타 전자통신을 추적하는 행위 (c)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의 주거, 직장 기타 자주 다니는 장소 외부나 근처에 들어가거나 어슬렁거리는 행위 (d)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의 소유 하의 부동산에 침입하는 행위 (da)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 (db) 피해자에 대하여 혹은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모욕적·공격적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dc)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모욕적·공격적 행위를 하는 것 (dd) 모욕적·공격적 행위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하는 행위 (e) 공격적 물건을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주거나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두는 행위 (f) 감시행위
오스트리아	지속적인 추적 1. 피해자의 근처에 접근하거나 2. 통신 또는 다른 의사소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3.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물건 또는 급부를 주문하거나 4.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가 피해자와 접촉하도록 하는 것.
독일	1. 그의 주변을 찾아가거나, 2. 전화통신수단 또는 기타의 통신수단을 사용하거나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그와의 접촉을 하려고 시도하거나, 3. 그의 개인관련정보를 오·남용하여 그에게 재화나 용역을 주문하거나 제3자에게 그와 접촉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4. 그 자신 또는 그와 가까운 관계의 자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 건강 또는 자유에 대한 침해를 위협하는 경우 5.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국가	예시 내용
일본	"따라다니기 등 행위" (제2조제1항) 1.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진로에 가로막기, 주거, 근무처, 학교 기타 그 통상 소재지 부근에서 지켜보기 또는 주거 등에 억지로 들어가기, 2. 행동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토록 알리거나 알 수 있게 하는 것, 3. 면회, 교제 기타 의무 없는 일을 요구, 4. 현저히 거칠고 품위 없거나 난폭한 언동, 5.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없거나, 거절함에도 계속 전화를 거는 것 또는 팩시밀리, 메일을 통한 송신, 6. 오물, 동물의 사체 등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물건을 송부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7. 명예를 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8.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영국	제2A조제3항 (a) 특정 개인을 따라가는 것 (b) 특정 개인에게 연락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을 시도하는 것 (c) 특정 개인과 관련된 또는 관련이 있다고 위장하여 글이나 자료를 게시하는 것. 또는 특정 개인으로 위장하여 글이나 자료를 게시하는 것 (d) 특정 개인의 인터넷, e-메일 또는 전자 매체 수단 사용을 감시하는 것 (e) (공공 또는 사적 장소든 간에) 어떤 장소에서 배회하는 것 (f) 특정 개인의 소유물에 개입하는 것 (g) 특정 개인을 바라보거나 몰래 감시하는 것

나. 입법 유형의 차이: 형법에 의한 규제와 특별법에 의한 규제

각국의 스토킹에 대한 법적 규제방식도 크게 형법에 의한 규제와 특별법에 의한 규제로 양분된다. 많은 국가에서 기존의 형법에 스토킹 관련 조항을 새로이 도입하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범죄화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스토킹을 범죄화하기도 한다. 영국과 아일랜드, 일본 등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스토킹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예인데, 이 경우에는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스토킹의 정의나 처벌뿐 아니라 스토킹에 대한 피해나 피해자보호방안 등까지 법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V-3〉 형법상 규정례

국가	도입	해당 법규
미국 캘리포니아주	1990	형법 제646.9조
캐나다	1993	형법 제264조
호주 퀸스랜드주	1993	형법 제33A장 제359조A-F (Criminal Code Act 1899 ch. 33A)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1994	형사통합법 제19조AA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s19AA)
호주 빅토리아주	1995	형법 제21조A (Crimes Act 1958 s21A)
벨기에	1998	442의2조
네덜란드	2000	285b조
몰타 공화국	2005	251A-C조
오스트리아	2006	107a조
독일	2007	제238조
헝가리	2008	제222조 ¹⁹⁾
이탈리아	2009	제612의2조
룩셈부르크	2009	제442-2조
체코공화국	2010	제354조
폴란드	2011	제190a조

〈표 V-4〉 특별법상 규정례

국가	도입	해당 법규
뉴질랜드	1997	Harassment Act 1997 ²⁰⁾ 8. Criminal Harassment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즈	1997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²¹⁾
아일랜드	1997	Non-fatal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Section 10
일본	2000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19) 2008년 개정 당시 176/A조로 도입되었으나 형법 개정으로 현재 제222조에 위치한다.

20) 뉴질랜드 Harassment Act 1997 참고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7/0092/latest/whole.html#DLM417732>) 최종접속일: 2016.12.20.

21) 영국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참고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7/40/contents>) 최종접속일: 2016.12.20.

다. 피해 결과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포함하는가의 여부

또한 스토킹을 범죄화하는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나 손실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까지도 고려하면서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서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거동범(舉動犯)은 일정한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결과발생은 요하지 않는 범죄를 말하는데, 스토킹의 경우 이러한 거동범으로 접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는 스토킹을 범죄로 구성하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한 피해 결과를 요구한다.

독일의 경우, 스토킹 행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일상적 생활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피해나 침해가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규정의 적용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일랜드와 폴란드 역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만을 스토킹 행위로서 금지하는 경우, 실제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찰이나 기타 사법기관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²²⁾

〈표 V-5〉 피해 결과 요구하는 유형의 입법례

국가	조문
독일	제238조(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한 접촉) 제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집요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생활형성을 중대하게 침해함으로써, ...
아일랜드	(a) 다른 사람의 평온과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공포, 정신적 고통 및 해악을 야기하며, ...
폴란드	제190a조 1. 타인 또는 타인과 친밀한 사람을 스토킹함으로써 타인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자는 ...

미국의 많은 주들은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가해자로부터 폭력의 위협이 이루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황으로부터 야기되는 ‘살인이나 중상해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Reasonable Fear of Death or Grave Bodily Injury)’”까지 제시하고 있다.

22) Paul E. Mullen et al.(2000), *Stalkers and their victi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250.

캐나다, 호주 대부분의 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체코,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의 경우 피해자가 스토킹의 결과로 공포나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등 일정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스토킹 판단 시에 주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지 않는다. 미국의 모범법전에서도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람을 자신의 안전에 대하여 두려움에 처하게 하고 스토킹자가 의도를 갖고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그러한 두려움에 처하게 했던 일련의 행위들”로 정의함으로써 실제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묻지 않고 스토킹 행위 여부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영국과 헝가리, 몰타 공화국의 스토킹 규제법은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결과의 발생을 필수요소로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유형은 ‘사람으로 하여금 폭력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이런 행위는 중죄(Felony)로 여겨진다.

〈표 V-6〉 두 가지 유형 접근례

국가	조문
영국	1. 일련의 행위는 금지된다. (1) 다른 사람에 대한 괴롭힘이 되는
	4. 폭력의 공포 유발 (1) 일련의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최소한 2회 이상 폭력이 사용될 것이라는 공포를 유발한 자
헝가리	(1) 타인의 사생활 및 일상생활에 대한 위협 또는 임의적 간섭을 목적으로, 특히 타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연락을 위한 통신수단에 의하여 조직적 또는 상시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행위
	(2) 위협할 목적으로 a) 타인 또는 그의 친족에 대하여 폭력 또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하겠다고 하거나 b) 피해자 또는 그의 친족의 생명, 신체의 완전성이나 건강을 해하거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인상을 심으려는 행위

라. 가해자의 의도 판단 여부

각국의 입법례는 행위자의 고의성의 정도를 고려하면서 스토킹 행위 규정과 처벌을 논하는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스토킹의 가해자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을 두렵게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에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행위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즉 잘

못된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전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의도로 상대방에게 접근하고 일정한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²³⁾ 이러한 사실은 형사사법기관이나 법원이 스토킹 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한다.

미국 29개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서는 스토킹의 구성요건으로 스토킹 행위자의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역시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서 구성하는데, 행위자의 의지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지를 고려한다. 그러나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스토킹 행위 자체가 특정한 목적에 기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고, 스토킹 행위를 규정하는데 행위자를 의지적 요소를 스토킹 행위 그 자체와 분리해서 접근하지 않는다. 또한 영국, 몰타, 아일랜드는 ‘알 수 있었던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행위의 과실여부까지도 고려하여 과실범까지 처벌한다. 이러한 영국, 몰타, 아일랜드와 같은 사례는 고의의 정도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한국의 일반적 범죄체계에서는 그 시사점이나 유용성을 판단하거나 적용할 때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나 독일 등은 행위자의 고의의 정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마. 친고죄 여부

각국의 입법례는 죄를 처벌하거나 기소의 필요조건으로 피해자의 고소를 전제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이한 입장을 취한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헝가리, 폴란드, 네덜란드의 경우는 스토킹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스토킹은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는 범죄로 간주되는데, 다만 특별한 공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Relatives Antragsdelikt)의 형태를 띤다. 소추가 필요한 공익이 있는 경우로는 범인이 문제되는 사안의 피해자 외의 타인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한 전력이 있고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²⁴⁾ 제2항 또는 제3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탈리아

23) 여성부(2002),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p.102.

24) 김성룡(2007), “독일의 ‘스토킹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 18권 제4호, pp.149-150.

역시 고소에 의한 기소와 직권에 의한 기소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경찰에 가해자에 대한 공식적 경고를 발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가해자가 이 경고 이후에도 스톡킹 행위를 하는 경우 고소 없이 기소될 수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와 영국의 모든 스톡킹 범죄는 비친고죄이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2006년 107조의 a(Beharrliche Verfolgung)를 신설(2006년 7월 1일)하면서 스톡킹을 입법화하였을 당시에는 통신 또는 다른 의사소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는 양태의 스톡킹에 한하여 피해자의 고소를 요구하였으나 2007년 법 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모두 비친고죄가 되었다.

〈표 V-7〉 친고죄 여부

구분	국가
친고죄	일본, 벨기에, 룩셈부르크, 헝가리, 폴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비친고죄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등

바. 형량의 범위

스톡킹에 대한 최대형량은 3개월에서 10년 이상까지 다양하다. 스톡킹 범죄에 대한 단일한 형량을 정하는 경우와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을 나누어 형을 달리 정하는 경우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미국은 법정최고형이 1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중죄로, 법정 최고형이 1년 이하 6일 이상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경죄로 구분한다. 14개 주는 초범까지도 중죄로 별하며, 35개주에서는 재범 또는 가중 구성요건을 중죄로 정하였다. 가중사유는 법원의 명령, 보호관찰·가석방 조건 위반, 흉기휴대, 18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행해진 경우, 피해자가 이전의 범죄와 동일한 경우 등이다. 메릴랜드 주만이 모든 스톡킹 범죄를 경죄로 한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구체적으로 스톡킹 행위를 6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따라 형을 달리 정하고 있다.

〈표 V-8〉 형량의 범위

국가	형량	
미국	형량을 기준으로 경죄와 중죄로 구분하여, - 전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 후자는 대부분 3~5년의 자유형, 일부 주에서는 10~20년의 자유형	
	캘리포니아 ²⁵⁾	- 경죄: 1년 이하의 지역교도소 자유형 또는 1천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의 병과형 - 중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주립교도소 자유형 일시적 접근금지명령, 금지명령 등에 위반하여 동일한 상대방에 대하여 계속하여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4년 이하의 주립교도소 자유형
	사우스 캐롤라이나	- 기본적 구성요건: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1천달러 이하의 벌금 - 가중적 구성요건: · 이미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자의 스톱킹: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2천 달러 이하의 벌금 · 7년 이내 괴롭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스톱킹: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5천달러 이하 - 스톱킹의 가중적 구성요건: 5년/5천달러 -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자의 가중스톱킹: 7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7천 달러 이하의 벌금 - 7년 이내 스톱킹·괴롭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가중스톱킹: 15년 이하의 자유형 및 1만 달러 이하의 벌금
캐나다	10년 이하의 자유형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3년 이하 단, 범행 당시 가해자가 흥기를 휴대하고 있었거나 법원의 명령을 어긴 상태라면 5년 이하의 자유형
	퀸스랜드	5년 이하 단, 범행 당시 가해자가 흥기를 휴대하고 있었거나 법원의 명령을 어긴 상태라면 7년 이하의 자유형
	빅토리아	10년 이하
뉴질랜드	2년 이하의 자유형	
영국	- 경죄: 12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500파운드의 벌금 - 중죄: 7년 이하의 자유형	
아일랜드	- 약식절차: 1,500파운드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자유형 - 정식재판: 1,500파운드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자유형	
벨기에	15일 이상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50유로 이상 300유로 이하의 벌금	
네덜란드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제4범주(11,250유로 이하)의 벌금형	

국가	형량
일본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금지명령 위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
몰타 공화국	-251A: 1월 이상 3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2329.37 이상 4,658.75유로 이하의 벌금 -251B: 3월 이상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4658.75 이상 11,646.87유로 이하의 벌금
오스트리아	1년 이하의 자유형
독일	-기본적 구성요건: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사망 또는 중대한 건강침해의 위험이 야기된 경우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
헝가리	기본적 구성요건: 1년 이하의 자유형
	가중적 구성요건: - 전 배우자, 전 동거인 또는 전 동거인의 배우자에 대한 괴롭힘: 2년 이하 - 교육, 감독, 간호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한 괴롭힘: 3년 이하의 자유형
이탈리아	-기본적 구성요건: 6월 이상 4년 이하의 자유형 -법적 별거, 이혼, 피해자와 애정관계에 있는 자가 행한 경우 가중 -미성년자, 임신부, 또는 법률 제104호제3조(1992.2.5)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무기를 사용했을 경우 또는 가해자가 성도착자일 경우에는 형량을 최대 1/2 가중
폴란드	3년 이하의 자유형

사. 피해자의 보호

스토킹에 대한 ‘three P’라고 불리는 인권 관점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기소(Prosecution), 즉 범죄화뿐만 아니라 지원(Provisions of Support)과 보호책을(Protection) 포괄한다.

1) 미국

위험방지를 위한 예방적 경찰작용과 형사사법적 경찰조치가 구분되지 않는 영미법계의 특성상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작용의 경우도 형법에서 규율된 경우

25)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 범죄의 행위유형에 따라 경죄와 중죄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죄(Misdemeanor)는 County 교도소에서 집행되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양자를 병과할 수 있는 범죄이며(P.C. §17(b)), 중죄(felony)는 사형 또는 주교도소에서 집행되는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P.C. §17(a)).

가 많다.²⁶⁾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646.91조(a)항은 판사 등 사법관(Judicial Officer)은 경찰관(Peace Officer)이 피해자의 주장에 기해 피해자에 대한 급박하고 현존하는 스토킹의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명령(Emergency Protective Order)을 발할 수 있다. 피해자는 긴급보호의 연장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보호명령은 유죄판결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스토킹 피해에 대한 혐의만으로도 발령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적 대응이라기보다는 피해자 보호조치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²⁷⁾

2) 호주

호주의 경우 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 이외에 거의 예외없이 피해자를 스토킹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가 가능하다. 특히 본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마련되었던 보호명령제도가 스토킹 사안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빅토리아주의 보호명령제도를 예로 들자면, 당초 보호명령 기간 12개월의 기간제한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그 기간을 법원의 재량에 위임하였으며, 보호명령위반에 대한 벌칙도 강화되었다. 최초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자유형과 2,400달러 이하의 벌금 가운데 선택하거나 양자를 병과 할 수 있고, 이후 또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강화하였다. 피해자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명령을 내리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고소인이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명령(Interim Intervention Order)을 발할 수도 있다.²⁸⁾

3) 영국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는 스토킹을 단일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26) 이성용(2012), 「스토킹 방지를 위한 선제적 행정경찰 작용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pp.71-72.

27) 이성용(2012), 위 보고서, p.72.

28) 이기현(2002), “스토킹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2호, pp.346-347.

동 법률에 의거하여 관할 형사법원에서 접근금지의 민사적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²⁹⁾ 이러한 입법적 규율 외에도 영국 내무부와 런던경찰은 스토킹 사례에 대처하는 방식을 기술하는 안내자료³⁰⁾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³¹⁾

4) 아일랜드

아일랜드 법원 또한 형사처벌에 부가하여 또는 형사처벌을 대신하여 특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거나 직장주변 일정범위의 접근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³²⁾

5) 일본

일본의 「스토킹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위협방지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함께 규율하고 있다. 우선 제4조에 의하여 피해자가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에 대한 경고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경찰행정청은 그 행위의 반복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국가공안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행위의 반복을 금지하는 취지의 경고를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공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6조에서는 경찰행정청의 경고를 구하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반복의 우려가 있고 신청자의 신체의 안전, 주거의 평온 또는 명예훼손이나 행동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경찰행정청은 가해자에 대하여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행위의 반복을 금지하는 가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러한 가명령은 15일까지 유효하며(제3항), 공안위원회에서는 15일 이내에 의견청취를 하고 금지명령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제5항).

경찰행정청의 경고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반복될 우려를 고려하여 행위의 반복을 금지하는 등 공안위원회가 필요한 금지명령을 발할 수

29) 이성용(2012), 위 보고서, p.74.

30) Metropolitan Police Service(2000), Stalking and other forms of harassment: An investigator's guide 참고 (<http://www.hamishbrownmbe.com/img/stalking.pdf>). 최종접수일: 2016.12.20.

31) 이성용(2012), 위 보고서, p.75.

32) Non-Fatal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1997, 10(3).

있으며 이 경우 행위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제5조).

6)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민사집행법 제382b조는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법원은 가까운 친지에 대한 신체적 공격이나 이에 대한 위협, 심리적 건강상태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는 행동으로 더 이상의 동거를 수인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자에 대하여 주거와 주변지역에서의 퇴거 및 접근금지를 3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이에 더하여 체류와 접촉 역시 금지할 수 있다.³³⁾

형법 제107a조의 개정과 함께 스토킹 대응을 위해 새로이 삽입된 민사집행법 제382g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지관계에 있지 않거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도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 한시적 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접촉이나 따라다니기, 특정지역에의 체류, 개인정보나 사진의 전달이나 배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재화나 용역의 주문, 제3자를 통한 접촉의 사주 등의 금지가 해당한다. 제2항에서는 법원이 경찰관청에 한시적 금지조치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최장 3년간 가능하며 체류금지를 제외하고는 본안심리에 관계없이 가능하다.³⁴⁾

7) 독일

독일에서는 각 주의 경찰작용법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에게 스토키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방지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협방지라는 보호법익에 근거하여 범죄의 발생이전 단계에서 주경찰법상의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³⁵⁾

주 경찰법 제34조제1항은 경찰이 위협방지의 목적으로 일정기간 특정장소에의 체류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정하고 있다. 스토킹과 관련하여, 경찰은 피해자의 주거에 대기하고 있다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경찰법에 의해 보호되는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예견되는 경우 퇴거명령을 받

33) 이성용(2012), 위 보고서, p.110.

34) 이성용(2012), 위 보고서, pp.109-110.

35) 이성용(2012), 위 보고서, pp.84-86.

할 수 있으며, 퇴거명령과 동시에 퇴거가 발해진 지역으로의 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³⁶⁾

2. 스토킹 규제 관련 각국의 입법례

가. 미국

미국은 스토킹을 범죄화한 최초의 국가이다. 1990년 캘리포니아주를 최초로 해서 스토킹 금지법을 제정한 후 1993년까지 미국의 50개주에서 스토킹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입법화했다.³⁷⁾ 이 연방의회는 미 사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를 통해 스토킹 문제를 논의하고, 각 주에서 합헌적이고 시행가능한 스토킹 방지법을 발전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1996년에는 연방의 주간 스토킹 금지법이 제정되어 주의 경계를 넘어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스토킹 금지 관련 법률과 연방법 차원의 규제법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2004년에는 모범스토킹 규제법이 제시되었다.³⁸⁾

1)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규를 제정한 첫 번째 주이다. 한 여배우와 오렌지카운티의 5명의 여성이 스토킹을 당하고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1990년 미국에서 최초로 스토킹 금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³⁹⁾ 캘리포니아주는 주 형법 제15편제2장 기타범죄(Other Miscellaneous Crimes)에서 스토킹 범죄를 다루고 있다. 제646.9조는 일반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며, (e)항에서 (h)항에 걸쳐 “괴롭힘”, “일련의 행위”, “믿을 만한 위협”, “전자통신기기” 등 개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캘리포니아 주 형법의 개념 규정은 스토킹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민법에도 그대로 원용되고 있다.

36) 이성용(2012), 위 보고서, pp.88-90.

37) 이원상(2013), “스토킹 처벌 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p.157.

38) 김현아(2015),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제7권 1호, pp.114-115.

39) 김현아(2015), 위 논문, pp.114-115.

형법 제653조는 전화나 전자통신장비를 통하여 외설적인 언사를 하거나 반복적인 전화, 접촉 등을 하는 자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하여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단, 선의로 한 전화나 전자통신장비로 접촉을 시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 형법 646.9조 ⁴⁰⁾
<p>(a) 의도적, 악의적,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의도적,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까운 가족의 안전에 합리적인 두려움에 빠뜨릴 의도로 믿음만한 위협을 가하는 사람은 스토킹 범죄의 죄책을 지며, 1년 이하의 지역교도소 자유형 또는 1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 혹은 주립교도소 자유형에 처할 수 있다.</p> <p>(b) 일시적 접근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금지명령(Injunction), 기타 전(a)항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에 위반하여 동일한 상대방에 대하여 전(a)항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 4년 이하의 주립교도소 자유형에 처한다.</p> <p>(c) (1) 273.5조, 273.6조, 422조⁴¹⁾에 위반하여 중죄의 유죄선고를 받은 후 전(a)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지역교도소 자유형 또는 1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하거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주립교도소 자유형에 처한다.⁴²⁾</p> <p>(2) 전(a)항에 위반하여 중죄의 유죄선고를 받은 후 본조에 위반하여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주립교도소 자유형에 처한다.</p> <p>(d) 법원은 본조에 위반하여 중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본조에 정한 형에 더하여 290.006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e) 본조에서 “괴롭힘”은 특정 사람을 향한 고의적인 일련의 행위로, 그 사람을 심각하게 불안하게 하거나, 성가시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위협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목적이 없는 것을 말한다.</p> <p>(f) 본조에서 “일련의 행위”는 일정 기간 동안 목적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2개 이상의 행위를 의미한다. 헌법상 보호되는 활동은 “일련의 행위”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g) 본조에서 “믿음만한 위협”은 전자통신기기를 통한 통신을 포함한 구두상 또는 서면상의 위협, 또는 위협의 대상이나 그의 가까운 가족이 합리적인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위협을 실행할 의도와 외견상 드러나는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일련의 행위나 구두상, 서면상, 또는 전자적으로 통신되는 진술 및 행위의 조합에 의해 암묵적으로 표시된 위협을 말한다. 피고인이 그 위협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현재 수용시설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규정에 의한 기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헌법적으로 보장된 행위는 “믿음만한 위협”의 의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p> <p>(h) 본조에서 “전자통신기기”는 전화, 휴대전화, 컴퓨터, 비디오녹화기, 팩스, 호출기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전자통신”은 U.S.C. 제18편 제2510조(12)에서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p> <p>(i) 본조는 노동쟁의 중 일어난 행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p> <p>(j) 본조에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이 있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법원이 명한 상담에 참여해야 한다. 단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p> <p>(k) (1) 선고법원은 피해자와의 어떠한 접촉도 금지하는 명령을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내릴 수 있다. 금지명령 기간은 행위의 심각성, 장래 재범의 가능성, 피해자 및 가까운 가족의 안전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다.</p> <p>(2) 이러한 보호명령은 피고인의 교도소 수감 여부나 집행 및 선고유예, 보호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발부될 수 있다.</p> <p>(l) 본조에서 “가까운 가족(Immediate family)”은 배우자, 부모, 자녀, 기타 2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그 가정 내에 거주하는 사람, 6개월 내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의미한다.</p> <p>(m)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2684조에 따른 치료가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법원은 교정국으로 하여금 제2684조에 의거하여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증명서에 따라 검사를 받고 적합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는다.</p>

한편,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1708.7조(a)항은 원고가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의 모든 구성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누구든지 스토킹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스토킹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세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

- ① 원고를 따라다니거나, 집을 주거나, 괴롭히기 위할 의도로 한 행위로서
- ② 위 행위의 결과로 원고가 자신이나 가까운 가족의 안전에 합리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 것
- ③ 피고는 위 일련의 행위로 피고가 원고나 그 직계가족을 확실한 두려움에 빠뜨릴 의도로 믿을 만한 위협을 가하였고, 원고가 1회 이상 피고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계속하였거나,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위반하였을 것

이와 같은 스토킹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 손해(General Damages), 특별 손해(Special Damages)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s) 또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법원은 금지명령(Injunction)뿐만 아니라 적당한 보호조치(Relief)를 허용할 수 있다. 또한, 민법상의 구제조치는 중첩적이며 다른 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와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⁴³⁾

캘리포니아 민법 제1708.7조 (2014년 최종개정) ⁴⁴⁾
(a) 원고가 불법행위의 다음 요소를 증명하면 피고는 스토킹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1) 원고를 따라다니거나, 집을 주거나, 괴롭히기 위할 의도로 한 행위 (2) 위 행위의 결과로 원고가 자신이나 가까운 가족의 안전에 합리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경우로, (3) 다음 중 하나의 경우일 것 (A) 피고가 위 (1)에서 적시된 행위로 원고에게 원고나 원고의 가까운 가족의 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야기할 목적으로 믿을만한 위협을 가하였고, 원고가 1회 이상 피고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백히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계속한 경우 (B) 피고가 금지명령 기타 민사소송법 527.6조에 따른 명령 기타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위 (a)의 행위를 한 경우

40) 캘리포니아 형법 원문 참고 (<http://www.leginfo.ca.gov/cgi-bin/displaycode?section=pen&group=00001-01000&file=639-653.2>) 최종접속일: 2016.10.01.

41) 형법 제273.5조(가정폭력), 273.6조(접근금지명령등 위반), 제422조 협박죄(Criminal Threats)를 말한다.

42) 형기의 2/3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될 수 있는 주립교도소와 달리 지역교도소는 형기의 1/2만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43) 이승우(2011),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2권 제1호, pp.253-254.

2) 미시건주

미시간 주의 스토킹 방지법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을 지닌 스토킹 방지법으로 평가된다. 미시건주 형법전은 제750.411h조와 제750.411i조에서 스토킹과 가중된 스토킹 등 오프라인 스토킹을, 제750.411s조를 통하여 사이버스토킹을 규제하고 있다.

미시건주 형법 제750.411h-i조
<p>제750.411h조 스토킹: 정의; 경죄; 형벌;⁴⁵⁾</p> <p>(1) 정의</p> <p>(a) "일련의 행위"란 목적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2개 이상의 분리된 행위의 연속을 의미한다.</p> <p>(b) "감정적 고통"이란 의료상의 또는 기타 전문적인 치료나 상담을 요할 수 있는 중대한 정신적 괴로움이나 고통을 의미한다.</p> <p>(c) "괴롭힘"이란 피해자를 향한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동의 없는 접촉(Unconsented Contact)으로서 합리적인 개인으로 하여금 감정적 고통(Emotional Distress)을 겪게 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감정적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괴롭힘에는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활동이나 합법적인 목적에 기여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p> <p>(d) "스토킹"이란 합리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갖거나 놀라거나 겁을 먹거나 위협을 받거나 괴롭힘을 받거나 추행을 받는다고 느끼게 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느끼게 하는, 다른 개인에 대한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포함하는 고의적인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p> <p>(e) "동의 없는 접촉(Unconsented Contact)"이란 다른 개인의 동의 없이 또는 접촉을 회피하거나 단절하려는 그의 표현된 희망을 무시한 채 개시되거나 지속된 그 개인에 대한 모든 접촉을 말한다. 동의 없는 접촉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p> <p>(i) 그 개인을 따라다니거나 그의 시야내에 나타나는 것</p> <p>(ii) 공공의 장소나 사적인 재산 내에서 그 개인에게 접근하거나 대면하는 것</p> <p>(iii) 그 개인의 직장이나 주거에 나타나는 것,</p> <p>(iv) 그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거나 점유 중인 재산 내로 들어가거나 그것에 머무는 것,</p> <p>(v) 전화로 그 개인과 접촉하는 것</p> <p>(vi) 그 개인에게 우편이나 전자통신을 발송하는 것</p> <p>(vii) 그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하거나 점유 중인 재산에 어떠한 물건을 놓아두거나 배달하는 것</p> <p>(f) "피해자"란 반복적·지속적 괴롭힘을 수반하는 의도적인 일련의 행위의 목표가 된 사람을 의미한다.</p> <p>(2) 스토킹을 범한 사람은 다음의 죄책을 진다.</p> <p>(a) (b)목을 제외한 경죄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1천 달러 이하의 벌금, 양자의 병과형에 처할 수 있다.</p> <p>(b) 일련의 행위 중 어느 때이든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의 연령이 5세 이상 연상일 경우는 중죄로,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그 병과형에 처한다.</p> <p>(3) 법원은 본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p>

44) California Civil Stalking Law 참고 (<http://www.victimsofcrime.org/our-programs/stalking-resource-center/stalking-laws/civil-stalking-laws-by-state/california>) 최종접속일: 2016.12.20.

미시건주 형법 제750.411h·i조
<p>제750.411i조 가중된 스토킹⁴⁶⁾</p> <p>(1) 정의⁴⁷⁾</p> <p>...</p> <p>(b) “믿을만한 위협”이란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는 위협 또는 다른 개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으로서 그것을 듣거나 수신하는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나 다른 개인의 안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어떠한 방법 또는 문맥 하에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p> <p>...</p> <p>(2) 다음 어느 하나의 상황 하에서 스토킹을 행한 자는 가중된 스토킹의 죄책을 진다.</p> <p>(a) 일시적 접근금지명령을 실제로 통지받고도 그것에 위반하거나, 금지명령, 예비적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스토킹을 구성하는 행위 중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한 경우</p> <p>(b) 보호관찰 조건이나 가석방, 재판전 보석, 항소 중 보석 등의 조건에 위반하여 스토킹을 구성하는 행위 중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한 경우</p> <p>(c)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나 피해자나 그의 가족, 같은 가구에서 생활하는 다른 개인에 대한 1개 이상의 믿을 만한 위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p> <p>(d) 본조와 411h조의 전과가 있는 경우</p> <p>(3) 가중된 스토킹은 다음과 같은 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이다.</p> <p>(a) (b)목을 제외하고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그 병과형에 처한다.</p> <p>(b) 일련의 행위 중 어느 때이든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의 연령이 5세 이상 연상일 경우 10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1만5천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그 병과형에 처한다.</p>

미시건주 형법 제750.411s조 ⁴⁸⁾
<p>Section 750.411s 전자매체를 통한 메시지 게시 금지; 형벌: 예외; 정의</p> <p>(1) 이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또는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그밖에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게시(Post)하여서는 안 된다</p> <p>(a) 메시지의 게시가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독립적 비연속적인 접촉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p> <p>(b)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하거나, 놀라게 하거나, 위협하거나, 겁먹게 하거나(Threatened), 괴롭히거나(Harassed), 치근덕거리는(Molested) 행동을 야기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게시하는 경우</p> <p>(c) 메시지의 게시로부터 야기되는 행위가 합리적인 사람에게 감정적 고통을 겪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거나, 놀라게 하거나, 위협받게 하거나, 겁먹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치근덕거린다고 느끼게 할 것</p> <p>(d) 메시지의 게시로부터 야기되는 행위가 당해 피해자를 공포에 떨게 하거나, 놀라게 하거나, 위협하거나, 겁먹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치근덕거린다고 느끼게 할 것</p> <p>(2) (1)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죄책이 있다.</p>

45) THE MICHIGAN PENAL CODE 참고 ([http://www.legislature.mi.gov/\(S\(diwp4e55zxydhj45dobmaw45\)\)/mileg.aspx?page=getObject&objectName=mcl-750-411h](http://www.legislature.mi.gov/(S(diwp4e55zxydhj45dobmaw45))/mileg.aspx?page=getObject&objectName=mcl-750-411h)) 최종접수일: 2016.12.20.

46) THE MICHIGAN PENAL CODE 참고 ([http://www.legislature.mi.gov/\(S\(1mezrg55wizekqbojs0c4245\)\)/mileg.aspx?page=GetObject&objectname=mcl-750-411i](http://www.legislature.mi.gov/(S(1mezrg55wizekqbojs0c4245))/mileg.aspx?page=GetObject&objectname=mcl-750-411i)) 최종접수일: 2016.12.20.

47) (b)목을 제외하고는 750.411h와 동일한 정의규정임.

미시건주 형법 제750.411s조 ⁴⁸⁾
<p>(a) (b)항을 제외하면, 2년 이하의 자유형 혹은 5,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양자의 병과형에 처하는 중죄의 죄책을 진다.</p> <p>(b)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자유형 혹은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양자의 병과형에 처하는 중죄의 죄책을 진다.</p> <p>(i) 일시적 금지명령을 통지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p> <p>(ii) 메시지의 게시가 보호관찰 조건이나 가석방, 재판전 보석, 항소 중 보석 등의 조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p> <p>(iii) 메시지의 게시가 피해자나 그의 가족 혹은 피해자와 동일한 가구 내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민율만한 위협을 초래한 경우</p> <p>(iv) 본조의 규정이나 145d, 411h, 411i 등을 위반한 하여 유죄를 선고받았거나, 미국내 다른 주의 유사한 법률을 실질적으로 위반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자인 경우</p> <p>(v)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5세 연상인 경우</p>

나. 호주

1) 퀸스랜드

퀸스랜드주는 고의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2회 이상 혹은 1회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는데, 이때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의식, 두려움 혹은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공익을 목적으로 행해진 노사관계, 정치논쟁 혹은 공적인 논쟁이나 합법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형법 제33A장 제359조A~359조F (Criminal Code Act 1899 chapter 33A Unlawful Stalking) ⁴⁹⁾
<p>제359A 정의규정</p> <p>359B 불법적인 스토킹은</p> <p>(a)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것으로</p> <p>(b) 지속된 행위로 1회이거나 2회 이상의 행위이며,</p> <p>(c) 다음과 같은 행위로 구성된다.</p> <p>(i) 따라다니거나, 어슬렁거리거나, 바라보거나 접근하는 행위</p> <p>(ii) 전화, 편지, 팩스, 이메일 그밖에 모든 기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p> <p>(iii) 주거, 직장, 방문지 근처를 어슬렁거리거나 바라보거나 접근하거나 들어가는 행위</p> <p>(iv) 불쾌한 물건을 다른 사람이 발견하거나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두는 행위</p> <p>(v) 불쾌한 물건을 작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p> <p>...</p> <p>359C</p>

48) THE MICHIGAN PENAL CODE 참고 ([http://www.legislature.mi.gov/\(S\)jlcstv55gukmhbatsnhfukfz\)/mileg.aspx?page=GetObject&objectname=mcl-750-411s](http://www.legislature.mi.gov/(S)jlcstv55gukmhbatsnhfukfz)/mileg.aspx?page=GetObject&objectname=mcl-750-411s)) 최종접속일: 2016.12.20.

49) Queensland Criminal Code Act 1899 참고 (<https://www.legislation.qld.gov.au/LEGISLTN>)

2)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스토킹은 적어도 2회 이상 행해지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가해자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26.1.2014 19AA Unlawful Stalking ⁵⁰⁾
<p>(1) 스토킹은 다음과 같은 행위이다.</p> <p>(a) 2회 이상 반복하여</p> <p>(i)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거나</p> <p>(ii) 다른 사람의 주거 외부를 어슬렁거리거나</p> <p>(iii)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한 재산에 들어가거나 침입하는 행위</p> <p>(iv)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물건을 주거나/보내는 행위 혹은</p> <p>(iva) 인터넷 그밖에 전자통신을 이용하여 불편한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p> <p>...</p> <p>(b)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해악이나 심각한 불안이나 공포를 야기할 의도를 가진 행위</p> <p>(2) 다른 사람을 스토킹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죄책을 진다</p> <p>(a) 기본구성요건: 3년 이하의 자유형</p> <p>(b) 가중구성요건: 5년 이하의 자유형</p>

3) 빅토리아

Crimes Act 1958 - Sect 21A Stalking ⁵¹⁾
<p>(1) 사람은 다른 사람을 스토킹해서는 안 된다. 형량: 5단계 자유형(최고 10년)</p> <p>(2) 일련의 행위가 다음을 포함하는 것은 스토킹이다.</p> <p>(a)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을 따라다니는 행위</p> <p>(b) 우편,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이메일 기타 전자통신 등 방법에 불구하고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연락하는 행위</p> <p>(ba) 인터넷, 이메일, 그밖에 전자통신으로</p> <p>(i)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에 관한 혹은</p> <p>(ii)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에 관한 것이거나 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진술 등을 출판하는 행위</p> <p>(bb)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컴퓨터에 허가받지 않은 컴퓨터 기능을 야기하는 행위</p> <p>(bc)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의 인터넷이나 이메일, 기타 전자통신을 추적하는 행위</p> <p>(c)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의 주거, 직장 기타 자주 다니는 장소 외부나 근처에 들어가거나 어슬렁거리는 행위</p> <p>(d)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의 소유 하의 부동산에 침입하는 행위</p>

/CURRENT/C/CriminCode.pdf) 최종접속일: 2016.12.20.

50) South Australia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16.6.2016 참고 (<http://www.legislation.sa.gov.au/LZ/C/A/CRIMINAL%20LAW%20CONSOLIDATION%20ACT%201935/CURRENT/1935.2252.UN.PDF>) 최종접속일: 2016.12.20.

Crimes Act 1958 - Sect 21A Stalking ⁵¹⁾
(da)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 (db) 피해자에 대하여 혹은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모욕적·공격적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dc)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모욕적·공격적 행위를 하는 것 (dd) 모욕적·공격적 행위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하는 행위 (e) 공격적 물건을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 주거나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두는 행위 (f) 감시행위 (g) 그밖에 (i)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ii) 피해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킬 것이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일련의 행위

다. 영국

영국은 「괴롭힘 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에서 스토킹을 규율하고 있다. 이 법률은 1997년 제정되었으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시행하고 있다. 동 법률에서는 사람에 대한 괴롭힘과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때 ‘괴롭힘’이란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가 적어도 두 번 이상 반복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며, 언어적인 괴롭힘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경죄(Misdemeanor)에 해당되어 6개월 이하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 폭력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는 중죄(Felony)로 규정되며, 최소한 2회 이상의 일련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공포감을 느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비교적 엄중하게 벌하고 있다.⁵²⁾

1997년에 제정된 「괴롭힘 방지법」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아, 스토킹(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었는데, 2012년 11월 스토킹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자유보호법(the Protection of Freedoms Act 2012)」에 의해 위

51) Victoria Crimes Act 1958 Authorised Version Incorporating Amendments as at 17 September 2014 참고 (http://www.legislation.vic.gov.au/Domino/Web_Notes/LDMS/PubLawToday.nsf/95c43dd4eac71a68ca256dde00056e7b/ef535bc564cbfcb1ca257d5700218585!OpenDocument) 최종접속일: 2016.12.20.

52) 이원상(2013), 위 논문, p.160.

법률에 제2A항과 제4A항을 신설함으로써 이루어졌다.⁵³⁾

영국 괴롭힘방지법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⁵⁴⁾
<p>제1조 괴롭힘의 금지</p> <p>(1) 사람은</p> <p>(a) 타인에게 괴로움이 되고</p> <p>(b) 타인에게 괴로움이 되리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일련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p> <p>(2)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정보를 접할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한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일련의 행위는 일련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괴로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행위이다.</p> <p>제2조 괴롭힘 범죄</p> <p>(1) 1조를 위반하여 일련의 행위를 한 사람은 범죄의 죄책을 진다.</p> <p>(2) 본조를 위반하여 범죄의 죄책을 지는 자는 즉결심판에서 6월 이하의 자유형이나 5단계 이하의 벌금, 양자의 병과형을 부과받는다.</p> <p>제2A조</p> <p>(3) 다음은 스토킹과 관련된 행위 예시이다.</p> <p>(a) 특정 개인을 따라가는 것</p> <p>(b) 특정 개인에게 연락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을 시도하는 것</p> <p>(c) 특정 개인과 관련된 또는 관련이 있다고 위장하여 글이나 자료를 게시하는 것. 또는 특정 개인으로 위장하여 글이나 자료를 게시하는 것</p> <p>(d) 특정 개인의 인터넷, e-메일 또는 전자 매체 수단 사용을 감시하는 것</p> <p>(e) (공공 또는 사적 장소든 간에) 어떤 장소에서 배회하는 것</p> <p>(f) 특정 개인의 소유물에 개입하는 것</p> <p>(g) 특정 개인을 바라보거나 몰래 감시하는 것</p> <p>제4조</p> <p>그의 일련의 행위가 최소한 2회 이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한 경우에(Putting people in fear of violence) 그가 각각의 경우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이 공포를 느끼게 할 것이라는 점을 알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반사실은 그의 범죄가 유죄라는 점에 대해서 불리한 증거로 이용될 수 있다.</p>

라. 일본

일본에서는 2000년 5월 24일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이 제정되어, 그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이 법률은 스토킹 행위의 처벌요건과 피해자의 원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스토킹 행위를 “따라다니기 등 행위”와 “스토커 행위”로 구분하고

53) 박선영 외(2013),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1): 낙태 규제와 여성의 대표성 관련 심층 분석 및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319-320 참조.

54) UK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 참고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7/40>) 최종접속일: 2016.12.20.

각각에 대해 다른 대응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다니기 등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침해유형이 가벼운 형태를 규정하는 것으로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진로 막아서기, 전화를 반복하여 하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동법 제2조1항).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 경찰본부 등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경우 경찰본부장은 행위자에 대해서 “따라다니기 등 행위”를 중지할 것을 경고할 수 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할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해서 국가공안위원회가 동법 제5조에 따라 위반 행위를 중지하라는 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

침해유형이 좀 더 중한 스토키 행위로는 동법 제2조제1항1호에서 제4호까지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해 타인의 신체의 안전, 주거 등의 평온한 삶이 침해를 받거나 명예가 손상되는 것, 혹은 개인의 행동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당해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지칭한다. 이러한 스토키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3조). 위 금지명령 등을 위반하여 스토키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4조제1항). 또한 금지명령 등을 위반하고 따라다니기 등의 행위를 지속한 자도 동일한 수준에서 벌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스토키 규제법이 시행되고 10여 년이 경과하였지만 스토키 피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례로 2012년에 가나가와현 즈시시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사건은 여성이 전 교제 상대방부터 1,000통 이상의 메일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살해되었는데도 스토키 규제법에 메일을 통한 스토키 행위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3년 스토키 규제법 금지 행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여 그해 7월 3일 공포하고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개정을 통해 원하지 않는 전자메일을 계속해서 보내는 행위 또한 법에 의한 규제대상으로 상정되었다(제2조제1항제5호). 또한 경시총감 또는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지방자치단체) 경찰본부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고를 할 때는 신속하게 그 내용 및 일시를 피해자에게 당해 경고를 원하는 취지의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해야 하고, 경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제4조).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경고를 원하는 취지의 신청을 한 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

다(제5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게 스톡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부인상담소 그밖에 적절한 시설에 의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제8조).⁵⁵⁾

마. 독일

독일은 2004년 헤센 및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입법청원으로 연방참의회를 거쳐 논의되기 시작한 ‘스토킹 방지법’안에 기초하여 2007년 「스토킹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이 제정된 바 있다.⁵⁶⁾ 이는 제40차 형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해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독일형법 제238조에 스토킹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과 이와 관련된 소송법적 규정들(사인소추, 부대소송 등)에 관한 것이었다. 개정된 독일형법 제238조에 따르면 1)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근처로 접근하는 행위, 2) 전기통신수단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제삼자를 통하여 그 사람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개인관련 정보를 남용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물건을 주문, 서비스 신청, 제삼자에게 이러한 접촉을 하도록 하는 행위, 4) 다른 사람 또는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또는 자유의 침해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 5) 이에 비교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행위 등을 집요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생활형성을 중대하게 침해함으로써,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스토킹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건강침해의 위험이 야기된 경우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진다.

이처럼 독일 형법은 제1항에서 스토킹에 대한 기본구성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자유 등의 법익이 침해될 위험범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고, 제3항에서는 사망에 이른 경우를 상정하여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다만, 스토킹의 경우 형사소

55) 박선영 외(2013), 위 보고서, p.321 참조.

56) 김학태(2011), “독일과 한국에서의 스토킹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U연구』 제28호, p.184.

추기관이 특별한 공익에 의해서 직권에 의한 형사소추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스토킹은 친고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만 소추가 가능하도록 구성해 놓고 있다. 본 규정 가운데 특히 제1항제2호(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한 접촉)은 사이버스토킹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제2호에서 상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수단이나 통신수단에는 편지, 전화, 팩스와 같은 기존의 통신수단들 뿐 아니라 이메일, 휴대폰의 SMS나 MMS,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과 같은 최신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친구나 동료, 가족, 친족 등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된다.

독일 형법 제238조 ⁵⁷⁾
<p>제238조【따라다님】</p> <p>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하는 등 권한 없이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로 인해 그의 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소적으로 가깝게 찾아가는 행위 2. 대화의 수단으로 통신수단을 사용해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3. 개인에 속하는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그를 위하여 물건이나 급부를 주문하거나 또는 접촉을 계속하도록 제3자를 부추기는 행위 4. 피해자에게 그 자신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협하는 행위 5. 기타 위와 비교될 수 있는 행동을 시도하는 행위 <p>② 행위자가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이 있는 타인을 (당해) 행위를 통해 사망의 위험 또는 중한 상해의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p> <p>③ 행위자가 (당해) 행위를 통해 피해자, 피해자의 친족 또는 피해자와 가까이 있는 타인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p> <p>④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대한 특별한 공익을 이유로 직무상 개입이 허용된다고 확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p>

57) 독일 형법 참고 (<http://www.jusline.de/index.php?cpid=f92f99b766343e040d46fcd6b03d3ee8&lawid=3&paid=238>) 최종접속일: 2016.12.20.

바. 기타 국가

1) 캐나다

캐나다 형법 제264조 ⁵⁸⁾
타인을 반복적으로 쫓아다니거나 타인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교신하는 행위, 타인이 방문, 생활 또는 일하고 있는 장소를 둘러싸거나 관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다.

2) 벨기에

벨기에 형법 제442의2조 ⁵⁹⁾
이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자는 누구든지 15일에서 2년까지의 자유형 및 50유로 이상 300유로 이하의 벌금형 또는 이중 한 가지 형에 처한다. 본 조항에 규정된 경범죄는 집요하게 고통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소를 한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다.

3)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형법 제285조의 b를 신설하여 타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거나 타인에게 공포를 줄 목적으로 타인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4범주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네덜란드 형법 제285b조 ⁶⁰⁾
타인에게 특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강요하거나 수인하게 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체계적, 고의적으로 타인의 생활영역을 침해하는 자는 유죄선고를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제4범주의 벌금형에 처한다.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한 경우에 한하여 기소할 수 있다.

58) Canada Criminal Code Act current to 2016-12-08 and last amended on 2016-06-17 참고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C-46/section-264.html>) 최종접속일: 2016.12.20.

59) 벨기에 형법 참고 (http://www.ejustice.just.fgov.be/cgi_loi/change_lg.pl?language=fr&la=F&table_name=loi&cn=1867060801) 최종접속일: 2016.12.20.

60) 네덜란드 형법 참고 (<http://www.wetboek-online.nl/wet/Sr/285b.html>) 최종접속일: 2016.12.20.

4)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형법 제107a조(지속적인 추적) ⁶¹⁾
<p>① 타인에 대하여 위법하게 지속적으로 추적(제2항)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p> <p>② 지속적인 추적이란 타인의 생활영위를 기대할 수 없게 침해할 만한 방식으로 장기간 다음의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의 근처에 접근하거나 2. 통신 또는 다른 의사소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3.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물건 또는 급부를 주문하거나 4.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가 피해자와 접촉하도록 하는 것.

5) 헝가리

헝가리 형법 제222조 ⁶²⁾
<p>(1) 타인의 사생활 및 일상생활에 대한 위협 또는 임의적 간섭을 목적으로, 특히 타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연락을 위한 통신수단에 의하여 조직적 또는 상시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행위는 보다 중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괴롭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괴롭히는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p> <p>(2) 위협의 목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폭력 또는 공공위협행위에 의한 위협을 통한 타인 또는 타인의 친인척에 대한 위협 b) 신체의 완전성이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친인척의 건강상태를 위협하게 할 수 있는 행위의 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해당 행위는 범죄성을 띄는 것으로 보아 2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p>(3)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한 괴롭힘은 2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다만, (2)에 규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배우자, 전 배우자, 전 동거인 또는 전 동거인의 배우자, b) (1)에 규정하는 교육, 감독, 간호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자.

6) 이탈리아

이탈리아 형법 제612-1조 ⁶³⁾
<p>타인에게 반복적인 협박 혹은 추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 자는, 다시 말하자면 피해자 자신이나 관계자 또는 피해자와 애정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에 대해 심각한 두려움을 초래하여 일상적인 습관을 바꿀 수밖에 없게 했을 경우, 그 죄질이 더욱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 이상 4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p>

61) 오스트리아 형법 참고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10002296>) 최종접속일: 2016.12.20.

62) 헝가리 형법 참고 (http://net.jogtar.hu/jr/gen/hjegy_doc.cgi?docid=A1200100.TV) 최종접속일: 2016.12.20.

이탈리아 형법 제612-1조 ⁶⁴⁾
<p>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별거 중이거나 이혼했거나 또는 피해자와 애정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행하여졌을 경우, 그 형량을 가중한다.</p> <p>미성년자, 임산부, 또는 법률 제104호 제3조(1992.2.5)에 해당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기를 사용했을 경우 또는 가해자가 성도착자일 경우에는 형량을 최대 1/2배 가중한다.</p> <p>본건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고소 시효는 6개월이다. 그러나 범죄의 대상이 미성년자이거나 법률 제104호 제3조(1992.2.5)에 해당되는 장애인일 경우, 또는 해당 행위가 고소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범행과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p>

7)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형법 제442-2조(강박적 괴롭힘) ⁶⁵⁾
<p>스톱킹 행위로 대상자의 안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거나, 이 대상자를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고통을 주는 자는 누구든지 15일에서 2년까지의 자유형 및 251유로 이상 3,000유로 이하의 벌금형 또는 이중 한 가지 형에 처한다.</p> <p>본조에 정한 경죄는 피해자, 법적 대리인 혹은 그 권한을 가진 자가 고소한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다.</p>

8) 체코공화국

체코 형법 제354조 ⁶⁶⁾
<p>(1) 누구든지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타인과 친밀한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대한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와 함께 다음에 정하는 행위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거나 그 전문적 활동의 수행을 금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타인 또는 타인의 친인척에 대하여 신체적 위해 또는 기타 위해를 가할 것으로 위협하는 행위 b) 타인의 개인적 위치를 찾거나 타인의 뒤를 쫓는 행위 c) 전자 통신, 서면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연락하는 행위 d) 타인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행위 e) 사적 연락처 또는 기타 연락처를 취득할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오용하는 행위. <p>(2) 다음 중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조의 죄를 범하는 경우, 해당 범죄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아동 또는 가임 여성을 상대로 행위하는 경우 b) 총기를 가지고 행위하는 경우 c)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위하는 경우

63) 이탈리아 형법 참고 (<http://www.altalex.com/index.php?idnot=36774>) 최종접속일: 2016.12.20.

64) 이탈리아 형법 참고 (<http://www.altalex.com/index.php?idnot=36774>) 최종접속일: 2016.12.20.

65) 룩셈부르크 형법 참고 (<http://www.legilux.public.lu/rgl/2009/A/1889/A.html>) 최종접속일: 2016.12.20.

9) 폴란드

폴란드 형법 제190a조(지속적 괴롭힘) ⁶⁷⁾
1. 타인 또는 타인과 친밀한 사람을 스토킹함으로써 타인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2. 타인의 재산 또는 신상에 대한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진 또는 기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패러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하는 행위의 결과로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한 경우에만 기소할 수 있다.

3. 데이트 폭력 관련 각국의 입법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의는 폭력의 유형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 데이트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 혹은 연애편계에 있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등을 지칭한다. 무엇보다 데이트 폭력은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 복합적으로 뒤얽히면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폭력으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특징을 갖는다.⁶⁸⁾ 또한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며 그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⁶⁹⁾ 그러나 점차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데이트 관계 혹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연애편계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관련법 제정 및 피해자 보호방안 등이 논의되어왔다. 그런데 법적 대응에서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이 자주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스토킹은 친밀한 관계나 연인 관

66) 체코 형법 참고(<http://eagri.cz/public/web/mze/legislativa/ostatni/100304362.html>) 최종접속일: 2016.12.20.
 67) 폴란드 형법 참고 (<http://statystyka.policja.pl/st/kodeks-karny/przestepstwa-przeciwko-4/63485,Grozba-karalna-art-190.html>) 최종접속일: 2016.12.20.
 68) 배수희·손승영(2015),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과 인식의 여성주의적 분석”, 『여성학 연구』, 제26권 제1호, p.95.
 69) 장민선(2015), “데이트 폭력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입법방향”, 『법제이슈브리프』, 제9권, p.1.

계가 아닌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데이트 폭력의 유형의 하나로 스토킹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⁷⁰⁾ 이하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각국의 입법사례를 검토하고 그 특징과 시사점을 짚어본다.

가. 미국

미국은 1994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은 데이트 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왔다.⁷¹⁾ 이러한 일환으로 가정폭력의 경우에 적용해오던 ‘보호명령(Protection Order)’ 제도를 스토킹 행위나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도 확대적용하면서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왔다.⁷²⁾ 보호명령제도는 1970년대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된 민사적 명령자의 성격을 띠는데, 1970년 콜롬비아 특별구에서 ‘가족범죄법’을 제정하면서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한 것이 발단이 되어, 1976년 펜실베이니아주, 그리고 1980년대까지 미국의 많은 주에서 가정폭력방지 관련 법을 제정하고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왔다.⁷³⁾ 그런데 이러한 보호명령제도가 점차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지속적이거나 추가적인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 발생시 보호명령권을 발동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데이트 관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이다.⁷⁴⁾ 미국 내에서 보호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데이트 폭력의 대상이 되는 유형은 각 주의 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데이트관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없이 보호명령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법안 자체에 ‘데이트 관계’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⁷⁵⁾

70) 장민선(2015), 위 논문, p.2.

71) 장민선(2015), 위 논문, p.3.

72) 류병관(2014), "데이트 폭력에 있어 피해자 보호방안", 『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p.93.

73) 류병관(2014), 위 논문, pp.93-94.

74) 류병관(2014), 위 논문, p.96.

75) 류병관(2014), 위 논문, pp.96-97.

미국에서 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보호명령(Domestic Protection Orders), 스토킹/괴롭힘 보호명령(Stalking/Harassment Protection Orders), 성폭행피해자 보호명령(Sexual Assault Victim Protection Orders)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⁷⁶⁾ 가정폭력보호처분은 가족구성원, 동거인, 데이트 관계 등 가족관계로 판단할 수 있는 관계 내에 있고, 실제로 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스토킹, 성폭력, 성희롱 등에 대한 보호처분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가 증명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은 2회 이상의 스토킹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이 확인되어야하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은 1회 이상의 성폭행 피해 경험이 발생했어야 한다.⁷⁷⁾

1) 메사추세츠주

미국의 메사추세츠주는 2010년 보호처분의 적용범위를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확대했는데, 메사추세츠의 보호명령은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스토킹, 가족관계가 아닌 일반 성폭력범죄에 모두 적용된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폭력이나 학대 위협의 가능성을 보여주면, 법원은 가해자의 참석 없이도 피해자에게 ‘임시 보호명령’을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로부터 ‘보호명령’ 처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10일 이내에 법정 심리를 열어야하고, 가해자는 법정 심리에서 진술한 기회를 제공받아야한다. 피해자가 계속적인 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보호명령은 1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명령이 끝날 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이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하고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다시 고민하고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가정폭력보호명령은 민사적 성격을 갖는 처분이지만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정 모독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상 처분이 뒤따르게 되는데, 보호명령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불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⁷⁸⁾

76) 류병관(2014), 위 논문, pp.93-94.

77) 류병관(2014), 위 논문, pp.93-94.

78) 메사추세츠의 보호명령제도에 대해서는 류병관(2014)의 논문을 참고로 정리함.

2) 텍사스주

텍사스주의 경우 2001년 가정폭력의 개념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하고 있는데, 텍사스주 가족법(Family Code)⁷⁹⁾ §71.0021(a)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관계를 유지해왔거나 결혼을 앞두고 관계에서 신체적 위협, 신체 상해, 폭행, 성적 폭행이나 그 위협을 하는 개인적 행위’로 정의된다.

텍사스주는 데이트 폭력의 피해나 가해가 심각한 경우 형법§22.01(a)항, 22.02(a)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자신의 데이트 파트너에게 성적 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⁸⁰⁾

3)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가족법 §6210에서 데이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데이트 관계란 금전과 무관하게 애정이나 성적 관계를 기대하하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결합”을 의미한다.

4) 미주리주

미주리주법(Missouri Revised Statutes)은 §455.010에서 폭력 행위의 개념, 폭력 행위의 구체적 양태, 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호명령 조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때 폭력 행위에는 스토킹 행위, 애인이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이나 위협적인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5) 아리조나주

아리조나주는 미국의 주 가운데 살인죄 발생율이 매우 높은 주 가운데 하나로, 데이트 폭력을 포함하는 가정폭력 등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는데, 2008년 12월 17세의 여성 케이티(Kaity)가 헤어진 남자친구에 의해 총에 맞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이러한 배경에서 2009년 7월 13일 케이티법

79) “Texas Constitution and Statutes” 참고 (<http://www.statutes.legis.state.tx.us/?link=FA>) 최종검색일: 2016.8.25.

80) 류병관(2014), 위 논문, p.96.

(Kaity's Law)이 통과되었다.⁸¹⁾ 케이티법은 기존에 혼인중이거나 동거,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었던 가정폭력방지법상 보호명령을 연인관계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법 시행 이전에 아리조나주에서 케이티와 같이 남자친구에 의해 성폭행이나 스토킹, 살해의 위협을 받는 등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장치로는 성희롱접근금지명령(Injunction Against Harassment)제도가 존재했는데 이는 가해자를 피해자의 학교나 직장, 집에서 일정 거리 이상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이었다면, 가정폭력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보호명령은 가해자의 충기를 몰수하고, 교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반복적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⁸²⁾

나. 영국

영국의 경우 데이트 폭력의 증가에 대응하여 남자친구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가정폭력 정보공개제도(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일명 클레어법(Clare's Law)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2009년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클레어 우드(Clare Wood)의 사례를 통해 파트너의 과거 범죄 이력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폭력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도된 것이다.⁸³⁾ 새로운 파트너에게 이전의 3개의 전과를 알려주는 것은 1997년 제정된 괴롭힘 방지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9년의 사건을 계기로 추가적인 보완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1년 정부는 현재의 파트너 혹은 앞으로 파트너가 될 사람의 폭력 전과를 데이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공개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시행하고자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2년부터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14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는데, 폭력전과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세 가지 선택권이 주요한 쟁점이 되기도 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데이트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전과기록을 알고 있

81) 홍영오 외(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360-361.

82) 홍영오 외(2015), 위 보고서, pp.360-361.

83) Home Office, “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A consultation: Summary of Responses”, March 2012, p.3 참고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57807/consultation-responses.pdf) 최종접속일: 2016.8.25.

는 상황에서 관계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당사자의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본 제도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정보공개는 기초조사-대면면담-종합위험성 심사 등의 단계를 거친 후 지역의 경찰서, 보건소, 아동보호기관, 폭력방지 위원회 등의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정보공개결정위원회(the Local Decision-making Forum)의 심의를 거쳐 정보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보공개가 이루어진다.⁸⁴⁾

다. 일본

일본은 가정 내의 폭력 또한 범죄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2001년 DV(Domestic Violence)방지법이 시행된 바 있는데, 법의 전문에서 배우자의 폭력이 범죄라는 점뿐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⁸⁵⁾ 이 법은 제정 이후 2004, 2007, 2013년 각각 개정된 바 있다.

1차 개정에서는 폭력의 유형을 확대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데, 이전에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여 다루었다면, 개정을 통해 정신적 폭력, 성적관계의 강요로서 성적 폭력까지 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경제력 우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통제하고자 하는 경제적 폭력, 자녀를 이용한 폭력 등도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고려하게 되었다.⁸⁶⁾

2차 개정에서는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폭력뿐 아니라 협박 행위까지도 보호 명령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가해자에 의한 직접적인 접근뿐 아니라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사용하여 접근하는 행위까지도 접근금지의 명령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⁸⁷⁾

3차 개정에서는 생활의 본거지를 함께 하는 파트너(동거 관계) 또한 배우자에 의한 폭력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가정폭력의 범위에 데이트 상대까지도 포함시켜 가정폭력방지법을 적용하도록 했다.⁸⁸⁾

84) 강용길 외(2016), “‘데이트 폭력’의 예방 및 대응관련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pp.195-196.

85) 박용광(2015),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법적 문제: 일본의 DV(Domestic Violence)방지법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3호, pp.78-79.

86) 박용광(2015), 위 논문, pp.79-80.

87) 박용광(2015), 위 논문, pp.79-80.

88) 박용광(2015), 위 논문, pp.79-80.

4. 소결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일본, 네덜란드, 몰타,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체코공화국, 폴란드 등에서는 스토킹을 규제하는 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각국가마다 스토킹 유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형법 또는 특별법으로 스토킹을 규제하는지, 피해 결과 및 가해자의 의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포함하는지, 친고죄 여부 등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가해자는 3개월~10년의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우선, 스토킹의 구성요건에 ‘일련의 행위’나 ‘반복적 행위’ 등 행위의 지속성을 전제하고, 괴롭힘(Harassment)이나 쫓아다님(Pursuit)과 같이 개방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반면, 입법에 있어서는 영국과 아일랜드, 일본 등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스토킹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인데, 이 경우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친고죄와 관련하여서는 죄를 처벌하거나 기소의 필요조건으로 피해자의 고소를 전제하는지에 대해 각국이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특별한 공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독일)도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인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는 각국가마다 고유의 제도로써 법원의 긴급보호명령·보호명령제도·접근금지명령 등과 경찰의 출입금지명령·퇴거명령·경고 및 가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스토킹 등에 적용되는 ‘보호명령’을 확대하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도 적용하거나(미국), ‘가정폭력 정보공개제도’(영국), ‘DV(Domestic Violence)방지법’(일본)의 대상에 가족뿐만 아니라 연인관계, 데이트 상대 등을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VI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

1.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과 문제점	103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120
3. 소결	125

이 장에서는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관련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1.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과 문제점

현행법 하에서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은 「경범죄처벌법」, 형법, 「가정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 기타 특별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스토킹 범죄나 데이트 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라기보다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폭행이나 협박 등 형법 상 범죄의 피해자로서 가능한 보호를 받게 된다. 이하에서는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과 연관성이 높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법,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법을 중심으로 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정리하고, 이와 같은 보호, 지원 방안이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될 경우의 한계점을 검토한다.

가. 지원 현황

1) 상담소 및 보호·지원시설

범죄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다.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각 법률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 범죄피해자 일시보호시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제7조). 범죄피해자 일시보호시설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종합병원, 학교법인, 기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할 때에는 일시 보호시설에 피신할 수 있고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 외의 개인이나 단체가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려 할 때에는 상담소는 신고제, 보호시설은 인가제로 운영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려면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며(제5조),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비영리법인이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상담소는 ① 가정폭력의 신고 접수 및 이에 대한 상담 대응, ② 가정폭력 신고 또는 상담 요청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③ 가정폭력 피해자의 임시 보호 또는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로의 인도, ④ 법률지원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⑤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 ⑥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 홍보, ⑦ 기타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 6개월 내의 기간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 2년 내의 기간으로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장기보호시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보호하는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 피해자등을 보호하는 장애인보호시설이다(제7조의2). 외국인보호시설과 장애인보호시설도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한다. 단기보호시설은 3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보호시설은 ① 숙식의 제공, ②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③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④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⑤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⑥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⑦ 타 법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⑧ 기타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 입소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타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

비, 의료비를 보호시설의 장이나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제7조의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법률구조법」에 따른 상담소,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정복지나 사회복지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거나 설치,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제14조).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이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여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때에는 현행법 하에서도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지원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구성원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배우자, 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 관계, 적모와 서자 관계, 동거 친족을 말한다. 동거 친족을 제외하고는 과거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포함된다.

다)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상담소는 신고제, 보호시설은 인가제로 운영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제10조),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비영리법인이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2조).

상담소는 ① 성폭력의 신고 접수 및 이에 대한 상담, ② 성폭력 보호시설 연계, ③ 의료기관 인도 등 의료 지원, ④ 수사기관 조사 및 증인신문 등의 동행, ⑤ 사법 절차에 관한 협조와 지원 요청, ⑥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⑦ 기타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한다(제11조).

보호시설에는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 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 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공한다(제12조). 일반보호 시설과 외국인보호시설은 1년 이내,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피해자가 19세가 될 때까지, 그 외의 보호시설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장이 가능하다(제16조). 보호시설은 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②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③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④ 피해자등의 의료기관 인도 등 의료 지원, ⑤ 수사기관 조사 및 증인신문 등의 동행, ⑥ 사법 절차에 관한 협조와 지원 요청, ⑦ 타법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⑧ 기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제1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소자가 타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범위를 제외하고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보호시설의 장이나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제14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기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에 성폭력이 수반된다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 심리,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사법 절차 지원, 자립지원, 보호시설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법’)은 특정강력범죄를 비롯하여 특정범죄⁸⁹⁾에 해당하는 경우의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신고자

89) 「범죄신고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 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법」에 따라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이나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이하 ‘범죄신고 등’)을 한 사람(이하 ‘범죄신고자 등’)은 사건의 조사 및 재판에서 개인 정보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의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나 기타 서류를 작성할 때 그 취지를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제7조).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적사항 기재 생략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류에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였다면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인적사항은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검사가 관리하게 된다. 범죄신고자 등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원관리카드는 제한될 경우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법원이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신고자 등이나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열람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범죄신고자법」상 범죄신고자 등을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하는 경우, 판사는 소환된 증인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증인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제11조). 이 경우 판사는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증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 고소, 고발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 「범죄신고자법」의 규정 일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복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보복 우려 요건을 제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제23조).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적사항 기재 생략 및 신원관리카드의 기재 등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

며, 이 경우 보복 우려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이거나 「범죄신고자법」의 범죄신고자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건의 조사 및 재판에서 인적 사항의 정보 보호가 가능하다.

3) 신변안전조치

「범죄신고자법」에 따라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13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변안전조치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판사가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변안전조치는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또는 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말한다.

스토킹 또는 데이트 폭력이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난 때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도 가능하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변안전조치는 ①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 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②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③ 기타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원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피해자 구조 및 응급조치

가) 피해자 구조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성폭력방지법」 제31조). 만일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하여 경찰의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나) 응급조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으로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에게 즉시 현장 출동 및 응급조치의 의무가 있다(제5조).

응급조치의 내용은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응급조치는 특히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범죄를 수반하는 스토킹에 유의미하다. 별거중인 배우자 등 가정구성원 사이에 스토킹이 발생하고 그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안에 포함될 경우,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도하며, 재발 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재발을 막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보호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때 피해자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제18조). 치료보호의 내용은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신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신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나 치료,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를 말하며, 치료보호 비용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부담한다.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비를 지급한 뒤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치료보호 또한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이 가정구성원 사이에 일어난 가정폭력인 때라야 가능하다.

나)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공립 병원, 보건소, 민간의료시설을 성폭력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27조).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친지,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료지원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28조). 따라서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에 성폭력이 수반된 경우, 전담의료기관에서 성폭력에 대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 성폭력 피해자의 법률구조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국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7조의2).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이 성폭력과 관련된 때에는 대상자 요건의 해당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법률구조가 가능하다.

6)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가) 피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범죄피해자는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때문에 법률에서 수사기관의 직권 또는 피해자측의 신청으로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모든 범죄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한다(제259조의2). 통지 내용은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급에 관한 사실 등이다.

「범죄신고자법」은 보복 우려에 따른 통지를 규정한다.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주요 변동 상황을 범죄신고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제15조). 통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이며, 통지의 대상도 같다. 통지 내용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 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 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재판 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 형집행정지, 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의 정보 제공 규정은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해당되므로 스톡킹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범죄신고자법」의 통지는 스톡킹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동법의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에 해당되어야 하고,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야 적용 가능하다.

나)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정보 제공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두고 있다(제8조의2).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정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정보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보 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기타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

7)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보호 및 지원

가) 피해자의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피해자의 변호사 제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조사 참여 및 의견진술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 출석 및 의견진술권,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권, 기타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다. 피해자는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만일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때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가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성폭력 이외의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나) 성폭력범죄 전담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은 성폭력 범죄 전담관 또는 전담부를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사건을 조사, 재판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한다(제26조). 국가는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제28조). 전담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스톡킹 및 데이트 폭력 또한 성폭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사 및 재판에서 성폭력범죄 전담부로 배당될 수 있을 것이나, 성폭력과 무관한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

다) 증인지원시설

각급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증인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증인지원관을 둔다(제32조). 증인지원시설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증인으로 출석할 때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성폭력처벌법」은 법원이 증인지원관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지원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한 이후, 각 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 이외의 증인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성폭력을 수반한 스톡킹 및 데이트 폭력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성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스톡킹 및 데이트 폭력 사건의 경우는 각 법원의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증인지원시설의 이용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라) 신뢰관계인 동석

모든 범죄 피해자는 경찰, 검사,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해자 조사 및 증인 신문 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21조제3항). 범죄가 성폭력범죄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도록 할 의무가 있게 된다. 법원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법원은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을 때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4조).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는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따라

서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도 경찰, 검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으며,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에 성폭력이 수반되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진술을 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이유가 없는 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마) 비디오 등 증계장치 및 차폐시설을 이용한 증인신문

법원은 증인 신문 시 비디오 등 증계장치에 의한 신문을 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을 할 수 있다. 증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피해자는 화상증언실 등 법정 외의 장소에서 카메라, 마이크 등을 통하여 증언을 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증계장치 또는 차폐시설을 이용한 증인신문은 피해자가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일부 범죄의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이거나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이나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제165조의2).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때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증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제40조).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또한 해당 사건이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증계장치나 차폐시설을 이용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경우 범죄의 성질상 피고인과 대면하여 진술할 때 심리적인 부담으로 증언하기 어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통하여 증계장치나 차폐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 비공개 심리

모든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성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에도 비공개 심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은 증인으로 소환 받는

경우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제31조),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증인으로 소환 받는 때에는 사생활 보호,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제32조). 스톡킹 또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 또한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 법원에 증인 신문 of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스톡킹 또는 데이트 폭력이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사건을 포함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재판이나 가정보호사건 심리에서 스톡킹 또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가족이 증인으로 소환된다면 그 가족 또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성폭력처벌법」은 수사기관, 법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조사, 심리, 재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조사, 심리, 재판의 횡수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스톡킹 또는 데이트 폭력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조사, 심리,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 법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려 의무가 적용된다.

아) 소송진행의 협의

「범죄신고자법」이 적용되는 특정범죄의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검사, 변호인과 해당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이나 기타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제12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신고자법」의 위 규정이 준용되지만 보복 우려를 요하지는 않으므로,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보복 우려가 없더라도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가 가능하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 스톡킹 또는 데이트 폭력 역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소송진행의 협의가 가능하며,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복 우려가 없더라도 소송진행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8) 생활지원

가)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는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퇴소일부터 2년 이내인 사람,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퇴거일부 터 2년 이내인 사람이다(「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4조의2). 스토킹 또는 데이트 폭력이 가정폭력에 해당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보호시설 및 주거지원시설에 입주하였다가 퇴소하였다면 요건에 따라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나) 취학 및 취업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으로 서 피해자의 보호,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4).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성폭력방지법」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또는 데이트 폭력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포함하고 있고 취학 및 취업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9)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성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가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고용상의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두 법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성폭력방지법」 제8조,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5). 이 규정 또

한 스토킹 또는 데이트 폭력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포함하고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분이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과 관련이 있을 경우 각 법률의 위반이 된다. 다만 두 조항은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나. 문제점

현행법에서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할 뿐이고 그 이외의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행위는 폭행이나 상해, 강간 등 형법 및 기타 특별 형법에서 범죄에 해당되거나 가정폭력으로 분류될 때 그에 따른 규제를 할 수 있다.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 역시 해당 행위가 현행법 중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가에 따라 해당 범죄의 피해자로서 그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호, 지원이 가능하겠으나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이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였다면 「가정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 지원이 가능하고, 성폭력을 수반한다면 「성폭력방지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 지원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각기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의 행위 유형이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행위들이 단일한 법이 아닌 여러 법에 걸쳐져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적용 가능한 보호·지원 역시 규정이 분산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앞서 살펴본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현황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한계점을 살펴본다. 다만 데이트 폭력의 경우 스토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법률에 따라 보호·지원을 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으며 스토킹을 포함하는 데이트 폭력에서는 스토킹에 대한 논의와 중복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스토킹을 중심으로 현행 보호·지원의 한계점을 알아본다. 문제의 핵심은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 지원을 명시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이 되어야만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하여 스토킹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첫째, 보호시설을 생각해보면, 범죄피해자 일시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일시적인 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좀 더 긴 기간이나 밀착적인 보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부족할 것이며 스토킹 피해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도 어려움이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각각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호시설을 운영한다. 때문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닌 스토킹 피해자는 현재로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법 개정을 통하여 스토킹 피해자가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성폭력 보호시설과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남성 스토킹 피해자의 이용에 한계가 있고,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들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최적화되어 있어 해당 범죄를 경험하지 않은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더구나 현재의 보호시설도 넉넉한 규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보호시설의 주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스토킹 피해자가 시설에 입소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둘째, 피해자의 정보 보호 차원에서, 스토킹 피해자는 다른 범죄 피해자에 비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크다. 스토킹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더 많이 노출될수록 추가 피해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학, 이직, 이사, 개명 등을 하였을 경우 변경된 이후의 정보는 특별히 더 보호되어야 한다. 현행법에서 형사질차상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면 스토킹 행위 중에 「범죄신고자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범죄나 성폭력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 이외의 스토킹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보호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스토킹이 현재와 같이 경범죄로 처리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다.

셋째, 가해자의 정보 제공 문제이다.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의 접근을 두려워하고 접근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병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는 그 범위가 좁고, 스토킹에서 우려되는 지속적인 접근의 반복은 「범죄신고자법」의 통지 요건인 ‘보복 우려’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 얻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넷째, 스토킹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거 규정이 미

비하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로서의 스토킹은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 피해자를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 인도, 폭력행위가 재발했을 때의 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이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지만, 당시의 문제가 가정폭력이 아니라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으며, 다만 담당 경찰관의 역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다섯째,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 문제이다.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지원은 「성폭력처벌법」을 중심으로 여러 정책들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수사 및 재판에서 전담부에 배당될 수 있으며, 증언 시 증인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화상증언, 차폐시설을 이용한 증언, 비공개심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소송진행의 협의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스토킹 피해자가 이와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스토킹에 성폭력이 포함되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만이 적용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스토킹은 다른 일반적인 범죄들과 같이 단일한 하나의 행위로 완결되는 범죄가 아니다. 스토킹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들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범죄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우리 법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범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스토킹이 다른 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여러 행위의 합산으로 구성되는 스토킹을 개별 법률에 따라 나누어 판단하게 되면 각각은 심각하지 않게 보여서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지원이 가능한 경우라도,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 법률에 따른 지원의 특성 상 스토킹 피해의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행해질 수 있어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중국에는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 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가. 상담소 및 보호·지원시설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을 별도로 설립할 것인가는 필요한 지원 규모와 예산, 스톱킹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문제이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을 활용하면 기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중복을 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19대 국회 이후 발의된 스톱킹에 대한 특별법안들을 살펴보면, 남인순 의원안⁹⁰⁾, 정춘숙 의원안⁹¹⁾에서도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하였고, 김제남 의원안⁹²⁾은 스톱킹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법안 비용추계에 서 예상되는 피해자 수가 적어 기존의 성폭력 및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시설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가 재정소요가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김삼화 의원안⁹³⁾은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과 스톱킹 피해자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방식을 혼합하여 규정하였다.

기존의 상담소와 시설을 이용할 경우 또 다른 장점은, 여성폭력과 연관성이 있는 스톱킹이 적지 않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스톱킹만이 아니라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둔 지원이 종합적으로 요구된다는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가정구성원 관계에서 스톱킹이 발생하였다면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수반한 스톱킹이 발생하였다면 성폭력 상담소

90) 남인순 의원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2차례에 걸쳐 스톱킹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여기에서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남인순 의원안’이라고만 한다.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스톱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1913972, 제안일 2015.2.13.;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스톱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000102, 제안일 2016.6.3.

91)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스톱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002537, 제안일 2016.9.30.

92) 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스톱킹 방지법안, 의안번호 1905532, 제안일 2013.6.19.

93)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002641, 제안일 2016.10.13.

및 보호시설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때, 스토킹을 단지 개인적 집착이나 병리적인 문제로만 이해하지 않고 사회구조적인 여성폭력으로서 접근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무관한 스토킹 사건 또는 피해자가 남성인 사건은 기존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설도 부족하여 입소를 원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이 즉시 입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스토킹 사건이 많지 않아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을 별도로 설립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스토킹의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 처리 건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지속적 괴롭힘 처리 건수는 2014년 총 297건⁹⁴⁾으로, 사건 수가 적어 보인다. 그런데 지속적 괴롭힘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스토킹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없고, 스토킹에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등의 범죄가 수반되었다면 피해자가 지속적 괴롭힘으로 신고하지 않아 사건 수로 집계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속적 괴롭힘은 처벌의 수준이 8만원의 벌금, 구류, 과료에 불과하여 처벌의 수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굳이 신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스토킹을 처벌하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원기관이 설치되면 스토킹 상담 및 지원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⁹⁵⁾

스토킹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에 대한 연구도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스토킹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지,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94) 국회예산정책처(2016),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95) 수도권 거주 16~59세 남녀 1,200명을 조사한 박철현 외(2000)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스토킹 피해 경험은 남성 4.2%, 여성 6.6%에 달하였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연간 스토킹 피해 인원수를 추산하면 약 175만 명이 된다. 박철현·이상용·진수명(2000),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특별법을 마련하는 초기에는 기존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에서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성격이 다른 각 시설에서 산발적으로 피해자를 상담, 지원하게 되면 스토킹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안 마련을 위한 경험의 축적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중앙센터를 한 곳이라도 설치하여 스토킹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지원 기관에 피해자를 연계하며, 다른 지원 시설에서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례를 집적하여 향후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만하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스토킹 상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스토킹 관련 정책의 마련 등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⁹⁶⁾

나.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정보가 추가로 제공되는 문제를 논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거지나 학교, 직장 등의 정보, 가족 관련 사항 등 피해자나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면 스토킹이 더욱 확대되고 후속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신고 이후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행위자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범죄신고자법」의 피해자, 신고자 보호 조치를 준용하고 보복 우려 요건을 적용 제외하고 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 이에 따라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서도 정춘숙 의원안이 「범죄신고자법」의 피해자, 신고자 보호 조치를 준용하면서 보복 우려 요건을 적용 제외하였고, 김삼화 의원안은 「범죄신고자법」의 보호 조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 스토킹 특별법

96) 17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염동연 의원안에서 스토킹피해센터의 설치가 제안되었던 바 있다. 이 법안에서는 경찰청 산하에 스토킹피해센터를 설치하고 스토킹 수사를 전담하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심리상담사를 두도록 하였다. 염동연 의원 대표발의,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173472, 제안일 2005.11.28.

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한 바 있다. 이처럼 스톡킹 사건에서도 인적사항 기재 생략을 비롯하여 피해자 및 신고자의 정보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범죄신고자법」에서는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검사의 허가에 따라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스톡킹 사건에서는 그 허가를 더욱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신고자법」 제9조제1항은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외에는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열람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톡킹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라는 데 본질이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나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갖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열람 허용의 범위를 더욱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보복 우려를 배제하고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송낙, 위험성 평가 등 별도의 열람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스톡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 신변안전조치

스토킹 신고 후의 응급조치만으로는 대상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고,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대상자 신변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될 수 있기 때문에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대상과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스톡킹은 1회로 중단되지 않는 행위의 속성상 스톡킹을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스톡킹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 따라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신고자만을 신변안전조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라 하겠다. 신고자 외에 피해자에게도 신변안전조치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신변안전조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에 대해서는, 발의된 의원안 중 정춘숙 의원안에서 총 7가지의 조치 종류⁹⁷⁾를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고 그 외의 법안들도 대체로 4~5가

97) 정춘숙 의원안에서 제시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2.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3. 시간대·동선·횡수 등 피해자 맞춤형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4. 112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별로 등록·관리, 핫라인 구축

지 정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나열하면 스토킹 범죄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좀더 유의하여야 할 조치를 제시하는 의의가 있을 수 있지만, 나열되어 있는 조치들은 실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신변안전조치는 스토킹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경찰의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개별 유형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다. 대신 경찰에서는 향후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에 적합한 신변안전조치를 실무상 적절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라.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스토킹 규제는 행위자의 지속적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고 피해자는 신고 이후 스토킹 행위자로부터의 안전감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토킹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 여부, 재판의 결과, 출소 등 수사 및 재판의 진행 상황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에 따른 통지는 범위가 협소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때에는 범죄의 특성상 추가 요건을 필요로 하지 말고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자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통지 내용을 알리고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자측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마.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보호 및 지원

스토킹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증언할 때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조치로서 신뢰관계인 동석, 화상증언, 차폐시설을 이용한 증언, 비공개심리, 피고인

-
5. 피해자 이름, 전화번호, 자동차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지원
 6. 보호시설 입소·거주지 이전·일시 휴직 등 피신 권고 및 관련 절차 안내·보조 실시
 7. 그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의 퇴장,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소송진행의 협의 등은 스톡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원활한 진술을 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구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라는 스톡의 특성상, 피의자, 피고인과의 대면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스톡 피해자에게 이상과 같은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스톡 피해는 직장 내의 관계에서 성희롱이나 일방적인 구애와 연계되어 발생하기도 하고, 상급자에 의하여 일어나기도 하며, 직장 외의 관계라도 상대방이 피해자의 직장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업무에 방해를 주거나 직장 동료 또는 고객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스톡 그 자체로 인하여 또는 스톡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제재가 필요할 것이다. 「성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방지법」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스톡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며, 금지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위반 시의 제재 수단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3. 소결

현행법 하에서 스톡·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톡 행위가 각기 다른 범죄의 피해자 지원을 명시한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 되어야만 한다. 즉, 일반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호·지원이 가능하겠으나, 스톡·데이트 폭력이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였다면 「가정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지원이 가능하고, 성폭력을 수반한다면 「성폭력방지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스톡·데이트 폭력의 행위 유형이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행위들이 단일한 법이 아닌 여러 법에 걸쳐져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적용 가능한 보호·지원 역시 규정이 분산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

하에서 스토킹·데이트 폭력 고유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 법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담소 및 보호·지원시설을 별도로 설립할 것인지 또는 기존 관련 시설을 활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현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정보가 추가로 제공되는 문제를 논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거지·학교·직장 등의 정보, 가족 관련 사항 등이 노출되면 추후 스토킹이 더욱 강화되고 후속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고 이후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행위자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스토킹 신고 후의 응급조치만으로는 대상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대상자 신변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될 수 있기 때문에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스토킹을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스토킹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긴급하고 중요하다. 넷째, 피해자는 신고 이후 스토킹 행위자로부터의 안전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금 여부, 재판의 결과, 출소 등 수사 및 재판의 진행 상황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VII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벌 방안

1. 가해자 조치 현황 및 문제점	129
2. 가해자 처벌 및 재범 방지 방안	130
3. 소결	134

이 장에서는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가해자 처벌 및 재범 방지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1. 가해자 조치 현황 및 문제점

제2장에서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처리의 현황을, 제3장에서 스토킹·데이트 폭력의 현행법 적용 가능성 및 한계를 살펴보았다. 현행법 체계 하에서 스토킹·데이트 폭력에 대한 제재는 크게 나누어보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한 보호처분, 그 외의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트 폭력은 이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연인관계라는 관계적 특성으로 묶은 개념이라 어떤 행위에 여러 법률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경합 관계에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뿐이지만, 스토킹의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 스토킹은 상해나 살인 같은 중한 형사범죄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중대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들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한 ‘가벼운’ 개별적 행위들이 종합적으로 피해자에게 끼치는 위해는 개별 행위들로 나누어 설명하기 어렵다.

현행법의 한계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경범죄처벌법」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지속적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범칙금 8만원을 부과한다. 유형과 피해의 정도가 매우 다양한 스토킹의 일부만을, 가벼운 범죄인 경범죄로 분류하는데 그친 것도 문제이지만, 범칙금의 액수 또한 스토킹의 중단과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매우 적다. 그리고 지속적 괴롭힘 유형 외의 행위는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해당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할 뿐이다.

만일 스토킹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된다면 피해자 보호를 중심에 둔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 긴급한 필요 등에 따라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로서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의료기관 및 요양소 위탁,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등이 가능하고,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하여 행위자가 상담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즉 접근 제한, 친권 제한, 사회봉사·수감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 중에서 행위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두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퇴거 등 격리, 접근 제한, 친권 제한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보호처분을 할 경우 스토킹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고, 이 모든 절차는 스토킹 행위 중 가정폭력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로 분류되기 어려운 따라다니기, 지켜보기, 문자 보내기 등의 행위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져 상대방을 괴롭히는 지경에 이른다면 그야말로 접근금지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만 가정폭력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처분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2. 가해자 처벌 및 재범 방지 방안

이렇듯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여러 행위들의 총합으로서의 스토킹을 규제하는 새로운 행위유형을 신설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토킹을 구성하는 개별적 행위들이 아니라 그 행위들의 총합으로서의 스토킹이 갖는 고유한 성격을 평가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범죄나 불법행위와는 구분되는 행위유형으로서 스토킹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1) 응급조치

스토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다. 경고와 기소유예에서 그칠 것인가, 형사처벌까지 나아갈 것인가 등은 그 다음 문제이다. 스토킹은 경고 정도로 중단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악의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개별 당사자들의 특성에 따라서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적인 행위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규제의 수단이나 방법은 모두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만은 모든 스토킹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바일 것이다.

응급조치에 대하여 최근 발의된 스토킹 처벌 법안들을 살펴보면, 김제남 의원안에서는 응급조치로서 행위자에게 스토킹 중단 통보, 임시조치 청구 가능성 통보,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보호시설 인도를 의무화하고 있고, 김삼화 의원안은 ‘현장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행위자에게 지속적 괴롭힘 중단과 잠정조치 부과 가능성에 대한 경고,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요청, 피해자 지원조치 신청, 피해자 지원기관의 지원 등을 안내,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피해자 지원기관에의 연계를 의무화하였다. 남인순 의원안 또한 응급조치의 의무를 규정하였는데, 앞선 두 개의 안과는 달리 스토킹 중단 통보,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지원시설 연계 외에도 접근금지, 퇴거명령을 응급조치에 포함하고 있다.

스토킹의 중단과 피해자의 보호에서 응급조치가 갖는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경찰의 응급조치 이행 의무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응급조치의 종류는 스토킹에 대한 제재 수단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 법안들의 차이는 각 법안이 스토킹 제재의 틀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다. 스토킹에 대한 규제를 가정폭력범죄와 같이 보호처분,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으로 구성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한다면, 응급조치에는 좀 더 많은 내용이 담겨야 한다.⁹⁸⁾ 단지 신고 시점에만 당사자들을 분리하고 추가적 제재에 대한 경고 및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 직장, 기타 주 활동 지역에 대한 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퇴거할 것을 명령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 더 나아가 스토킹 재발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유치하는 것까지도 응급조치에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접근금지, 퇴거명령, 정보통신망을 위한 접근금지와 같이 행위자에게 구속적인 응급조치가 사후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면, 행위자가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형사처벌 조항을 두어 응급조치의 실효성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98) 위 법안 중 남인순 의원안은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스토킹에 대한 특별법을 구성한 사례이다.

2) 보호명령

스토킹의 규제를 형사처벌 중심으로 구성하게 되면, 피의자가 계속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가 공백으로 남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자의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기본 틀로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 중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그 모델이 될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결정으로서 주거, 방실에서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친권 제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고(제55조제1항), 결정 전에도 긴급성이 인정되면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제55조의4).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제63조제1항).

그간 발의된 법안 중에서 남인순 의원안과 정춘숙 의원안이 피해자보호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안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보호명령 미이행시 벌칙 규정을 두었으며, 임시보호명령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춘숙 의원안은 접근금지, 퇴거명령,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뿐 아니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등 격리, 기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고 피해자보호명령 미이행, 상습 미이행에 대한 벌칙을 두었으며 마찬가지로 임시보호명령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스토킹을 신고하거나 경찰로부터 경고, 접근금지를 받은 이후 스톱킹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접근금지, 퇴거 외에 유치 등 격리, 기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두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스토킹은 그 성격이 다른 범죄와 달라 행위자에 대한 규제의 방향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처벌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치료가 필요하기도 한 것이다. 때문에 그간 발의된 법안들도 재범 방지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병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남인순 의원안, 정춘숙 의원안은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 선고 시 1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의무적으로 병과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병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김삼화 의원안 역시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 선고 시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병과 여부는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두었다. 반면 이낙연 의원안⁹⁹⁾ 및 김제남 의원안에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강명령을 보호처분 중 하나로 두고 형사처벌과는 구분하였다.

스토킹은 대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로서 반복성과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행위자의 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스토킹에 대한 규제에서 처벌과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어 재범 방지 규정이 상징적인 조항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벌칙

스토킹을 범죄로서 처벌할 때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중요한 쟁점이다. 스토킹 처벌과 관련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처벌 범위가 1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까지 다양하다. 이낙연 의원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기본으로 두고,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스토킹, 흉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을 각각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반면 정춘숙 의원안, 김삼화 의원안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99)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901321, 제안일자: 2012.8.27.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량을 좀 더 높였으며, 정춘숙 의원안에서는 스토킹의 상대방이 데이트 상대, 배우자, 동거인, 친족 등 인적 신뢰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 흉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스토킹으로 인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치사한 때에는 가중의 정도를 그보다 더 높이도록 하였다. 김제남 의원안과 남인순 의원안은 스토킹 처벌의 수위를 위법인들의 중간 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흉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였다. 남인순 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스토킹의 재범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는 규정을 두었다.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 기존의 다른 범죄의 법정형과의 균형도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은 스토킹의 정의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 피해자나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행위 등의 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그 가벌성이 낮지만은 않다. 스토킹을 형법상의 범죄와 비교하여보면,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데, 상습 협박은 그 형의 1/2까지 가중된다. 스토킹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감안한다면, 스토킹의 법정형은 적어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스토킹에 대한 규제를 별도의 입법으로 두는 것은 형법이 포섭하지 못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스토킹이 형법상의 다른 범죄들보다 피해나 가벌성이 약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3. 소결

현행법 하에서 스토킹·데이트 폭력에 대한 제재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한 보호처분, 그 외의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문제는 「가정폭력처벌법」 및 그 외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고,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상대방의 명시

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범칙금 8만원만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형과 피해의 정도가 매우 다양한 스토킹 행위의 일부만을 가벼운 범죄인 경범죄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범칙금의 액수 또한 스토킹의 중단과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적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법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스토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므로, 응급조치를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경찰의 응급조치 이행을 의무화하고, 행위자가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형사처벌 조항을 두어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셋째, 스토킹은 그 성격이 다른 범죄와 달라 행위자에 대한 규제의 방향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처벌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치료 등이 요구된다. 즉, 재범 방지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병과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처벌수위와 관련하여,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은 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면, 처벌 범위가 1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까지 다양하다.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범죄의 구성요건 및 기존의 다른 범죄의 법정형과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되, 적어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VIII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제 정비 방안

1. 스톱킹·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139
2. 제19대 국회 이후 발의된 스톱킹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및 과제 143
3. 스톱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157

이 장에서는 앞 장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스톡킹·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에 대해 살펴본 후에 제19대 국회 이후 발의된 스톡킹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톡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을 마련한다.

I. 스톡킹·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가. 형법 개정

앞서 외국 입법례에서 본 것처럼 독일은 형법 제238조에서 스톡킹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스톡킹·데이트 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형법을 개정하여 도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형법에 규정한다면 형법 각칙의 ‘협박의 장’에 스톡킹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이 있다.¹⁰⁰⁾

현재 우리 형사법 체계 속에서 형법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적절한 범죄대응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입법자들은 제·개정이 용이한 형사특별법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개정하는 입법정책을 취하여 왔다. 이 때문에 특별법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기본법인 형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사특별법에 의한 대응은 그때마다 발생하는 사회적인 불안요소와 위험요소를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형벌의 위하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형사정책의 수립이

100) 의안번호 1914186, 안효대의원 등 30인 발의, 제안일 2015.03.06.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30장의 제목 “脅迫의 罪”를 “협박의 죄 등”으로 한다.

제2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4조의2(지속적 괴롭힘) ①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변에 접근하거나 또는 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2.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거나 잠복하여 기다리는 행위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85조 중 “第283條第1項, 第2項 또는 前條”를 “제283조제1항, 제2항, 제284조 또는 제284조의2”로 한다.

제286조 중 “前3條”를 “제283조, 제284조 및 제285조”로 한다.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라는 지적이 있다.¹⁰¹⁾ 따라서 형사 특별법의 난립을 막고 기본법인 형법에서 규정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형법에 다양한 스토킹의 행위 유형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형법에 규정된다면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수사 및 재판에서 전담부에 배당될 수 있으며, 증언 시 증인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비공개심리 등의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책을 형법에 함께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스토킹을 규정하는 법률 체계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으로 이원화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형법 각칙상의 규정들만으로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여성폭력 피해자의 범감정을 반영할 수 없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는 중요한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기존의 법을 개정하여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가정폭력처벌법」에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의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에, 추가로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을 규정하는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이 「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어 개정된다면, 기존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101) 탁희성 외(2011), 「2011년도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p.421.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기존의 형사법과 달리, ‘가정의 유지’라는 특수 목적을 위하여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보호처분을 통하여 가정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데 스토킹이 이러한 가정폭력에 준하는 범죄로 해석된다면,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문제로 인식된다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보호처분은 그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처벌법」에 추가하여 ‘가정’이라는 범주에 넣고 보호처분으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스토킹 처벌의 입법목적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처벌하고 예방한다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가정폭력을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내에서 보호처분으로 처벌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스토킹을 입법화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스토킹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개정 방식은 「성폭력처벌법」상의 피해자 보호나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즉 성폭력을 수반한 스토킹이 발생하였다면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때, 스토킹을 여성폭력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는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폭력처벌법」상의 성폭력범죄에 ‘스토킹’의 행위태양을 규율하기 어렵다. 스토킹의 전형적인 한 예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일 등

을 보내는 행위, 물건을 보내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스토킹의 유형은 배우자 스토킹, 애정추구형 스토킹, 망상형 스토킹¹⁰²⁾ 등으로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 중 정신적인 집착이나 망상으로 인한 스토킹 행위는 성폭력에 포섭되기 어렵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 유형을 추가하여 「성폭력처벌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은, 기존의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유형과 정합성이 없으며, 스토킹 행위를 모두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스토킹이 성폭력의 한 유형이라거나 성폭력의 전단계라는 인식보다, 스토킹 관련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률들에서 포괄되지 않았던 피해상황이나 범죄행위를 여성폭력에 대한 사각지대로 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특별법 제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법률의 개정으로 스토킹을 규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부터 11차례의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동안, 안효대의원(제19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특별법 방식으로 스토킹 관련 법안을 제안하였다.

법의 규율 방식은 피해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구제수단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간 우리 형사법 체계의 특징인 형사특별법의 난립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다. 형법전의 규범력 약화 및 형법전의 형해화(形骸化), 집행기관 및 사법부에서 보이는 법 적용의 혼란과 같은 형법체계의 혼란 등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형사특별법의 형법에의 흡수·편입문제와 편입 후의 정비문제 등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형사 처벌함과 동시에,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응급조치,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등의 근거를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등의 실효적 수단을 확보하는데는 특별법이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¹⁰³⁾

각국의 스토킹에 대한 법적 규제방식은 크게 형법에 의한 규제와 특별법에

102) 이건호(2004). “스토킹 행위의 형사법적 규제와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15(14), pp.209-222.

103) 박선영 외(2014), 「여성 가족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II): 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p.127-128.

의한 규제에 양분된다. 많은 국가에서 기존의 형법에 스토킹 관련 조항을 새로이 도입하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스토킹을 범죄화하고 있다. 특별법 형식을 취한다면 단순히 가해자의 처벌뿐 아니라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스토킹을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분류해 처벌뿐 아니라, 스토킹에 대한 피해자보호와 지원방안 등까지 효과적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에 기여할 수 있고, 사법적 처벌 외에도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함께 강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법기관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스토킹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피해자를 위한 지원 조치 마련을 포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스토킹이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제19대 국회 이후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 및 과제

스토킹 처벌 특별법 제정안 시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국회에 발의되었던 스토킹 관련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검토한 후에 미비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19대 국회 이후에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인 이낙연의원안,¹⁰⁴⁾ 김제남 의원안,¹⁰⁵⁾ 남인순의원안 2건¹⁰⁶⁾을 스토킹 정의, 행위자 규제, 피해자 보호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면서 스토킹 처벌 관련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104)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901321, 제안일 2012.8.27.

105) 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스토킹 방지법안, 의안번호 1905532, 제안일 2013.6.19.

106) 남인순 의원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2차례에 걸쳐 스토킹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여기에서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남인순 의원안’이라고만 한다.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1913972, 제안일 2015.2.13.;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000102, 제안일 2016.6.3.

가. 스토킹 정의

스토킹의 정의와 관련하여 남인순의원안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목10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낙연의원안은 ‘스토킹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다음 각 목10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김제남의원안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10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

-
- 107) 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특정인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다.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그림 또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
 라.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특정 물건·그림 또는 사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
 마.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바. 그밖에 피해자, 피해자의 동거인,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의 직장동료 등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등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
- 108)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특정인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다.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그림 또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
 라.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특정 물건·그림 또는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마. 스토킹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행위
- 109) 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특정인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다.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그림 또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
 라.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특정 물건·그림 또는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
 마. 그밖에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행위

다'라고 규정하여, 각각 '생명 신체에 위협을 느낄 것'과 '정당한 이유없이'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스톡'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먹이감을) 몰래 따라가다', '(사냥을 위하여) 그 대상을 추적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스톡'이라는 말로부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또는 추근대는 행위를 일컫는 '스토킹'이라는 말이 시작되었다고 보여진다.¹¹⁰⁾ 이런 스토킹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법적으로 포섭하여 처벌할 것인가는 늘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관련하여 선두에 있는 쟁점이다. 그러나 언론이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스토킹'이라는 표현은 현행 법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에서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표제 하에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따라다니기·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스토킹 정의와 관련하여 넓게 본다면 기존의 형사사범으로 포섭되는 범죄도 포함되고, 좁게 해석한다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위 법안들의 스토킹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위자의 어떤 행위 자체를 스토킹으로 보는 것부터,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행위까지 그 범위가 넓다.

우리보다 먼저 스토킹을 입법화한 외국의 경우, 스토킹에 대한 법적 정의로부터 몇 가지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벨기에를 제외한 입법례는 대체로 스토킹의 법적 정의로 '일련의 행위'나 '반복적 행동'을 요구한다. 둘째, 모든 법적 정의는 괴롭힘(Harassment)이나 쫓아다님(Pursuit)과 같은 개방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¹¹¹⁾

많은 스토킹 피해 사례에서 보듯이, 스토킹 피해자는 신체의 안전에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주거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현실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의 정의가

110) 이건호(2004),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그 한계,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와 법률적 대응방법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p.123 재인용.

111) 박선영 외 (2014), 위 보고서, p.83.

필요하다.

또한 위의 법안들은 스토킹을 유형화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스토킹 행위 유형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에 준하는 행위도 포함할 수 있는 보충적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스토킹 행위자 규제

1) 응급조치

남인순의원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제4조제1항1~4호의 내용을 담고 있다.¹¹²⁾ 김제남의원안 역시 응급조치 의무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¹¹³⁾

이에 비해 이낙연의원안은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행위자에게 즉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¹⁴⁾ 다만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스토킹피해자 지원법인이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112) 제4조(응급조치 등) ①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제16조에 따른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에 연계

113) 제4조(응급조치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스토킹이 사실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
2.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이 운영하는 보호시설로 인도

114) 제3조(신고 및 응급조치) ① 피해자, 피해자의 동거인, 피해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스토킹을 사법경찰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행위자에게 즉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2.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스토킹피해자 지원법인이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인도

특례법이 통과된 후 특례법안이 담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응급조치 등 모든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는 1차 공권력인 경찰이 스토킹 범죄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특례법 규정은 가지고 있지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도 경찰의 소극적인 개입으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고를 받은 경찰의 응급조치는 ‘할 수 있다’의 임의사항이 아닌, ‘하여야 한다’의 의무규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열거된 응급조치 외에 추가로 “기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각 법안들의 내용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가 있다면, 경찰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경찰에게 피해자를 위해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보호명령

남인순의원안은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해 이낙연의원안과 김제남의원안은 ‘임시조치’의 내용으로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행위자가 치료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행위자를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를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선고되는 형이 집행유예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행위자와 피해자가 분리되는 조치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가 가지는 2차 피해, 즉 신고 후 가해자와의 접촉가능성 등의 부분에 대한 고민이 법률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의료시설등에 연계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이낙연의원안과 김제남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자의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피해자 보호명령의 구체적 내용으로 「가정폭력특별법」을

준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¹¹⁵⁾

3) 재범방지 수강명령

남인순의원안은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의무적 병과’로 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 조에서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낙연의원안과 김제남의원안의 수강명령은, 판사가 심리 결과를 인정할 경우 결정으로 할 수 있는 보호처분 중 하나이다.

스토킹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반복성과 지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상담 건수 중 스토킹의 비율은 2010년 43건(3.3%), 2011년 26건(2.3%), 2012년 49건(3.7%), 2013년 37건(2.6%), 2014년 5건(3.4%)이다. 행위자는 이전에 데이트 했던 사람이 가해자의 58%를 차지하였다. 스토킹 유형은 지나친 전화, 문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협박, 모욕, 물리적 폭력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행위태양이 전화 등 다소 소극적이 방식에서 협박, 물리적 폭력 등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가 28%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성폭력실태조사(2013년)에 의하면 스토킹 피해가 1회에 그친 경우는 33.2%, 2회 이상이 66.7%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떤 범죄보다 수강명령을 통한 행위자의 개선은 중요하다.

1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스토킹이라는 행위의 특성을 처벌하는 특례법안에는 가해자의 처벌 뿐 아니라 가해자의 개선을 통한 재범 방지 규정은 중국적으로는 피해자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조항이다.¹¹⁶⁾

4) 벌칙

스토킹 처벌과 관련된 법안을 살펴보면, 남인순의원안과 김제남의원안은 스토킹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낙연 의원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또 세 법안 모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남인순의원안은 스토킹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이낙연의원안은 청소년을 상대로 스토킹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형법적 성격을 갖는 스토킹 특례법안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처벌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이다. 지금까지 발의된 스토킹 특례법안들의 대부분이, 형법상 협박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징역형의 법정형은 낮지만 벌금형은 높다. 스토킹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보다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처럼 돈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식이 근저에 있는 듯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스토킹 특례법안들은 모두 스토킹의 정의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를 공통의 요건으로 하고 있거나, 그밖에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상습 협박은 그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스토킹

116)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의 법정형을 2년 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 처벌의 균형이 검토되어야 한다.¹¹⁷⁾

따라서 스토킹이 행위로 하는 협박임을 고려할 때 협박죄를 기준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형법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한 법제정이지, 형법보다 약화된 범죄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위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고, 2차 피해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1) 상담기관 및 지원시설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과 관련하여 각 법안들은 모두 다른 안을 제시하고 있다. 남인순의원안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대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반면 이낙연의원안과 김제남의원안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별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낙연의원안에서는 설립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등록 및 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반면에, 김제남의원안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117)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5조(상습범)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을 별도로 설립할 것인가는 필요한 지원 규모와 예산, 스토킹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을 활용하면 기존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과의 중복을 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남인순의원안에서도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시하였고, 김제남의원안은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법안 비용추계에서 예상되는 피해자 수가 적어 기존의 성폭력 및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시설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가 재정소요가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기존의 상담소와 시설을 이용할 경우 또 다른 장점은 여성폭력과 연관이 있는 스토킹이 적지 않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만이 아니라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둔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가정폭력이 있었던 관계에서 스토킹이 발생하였다면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수반한 스토킹이 발생하였다면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때, 스토킹을 단지 개인적 집착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여성폭력으로서 접근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무관한 스토킹 사건 또는 피해자가 남성인 사건은 기존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설도 부족하여 입소를 원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이 즉시 입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스토킹 사건이 많지 않아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을 별도로 설립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스토킹의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 처리 건수를 참고할 수 있다. 경찰의 지속적 괴롭힘 처리 건수는 2014년 총 297건¹¹⁸⁾으로 사건 수가 적어 보인다. 그런데 지속적 괴롭힘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

118) 국회예산정책처(2016),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스토킹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없고, 스토킹에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등의 범죄가 수반되었다면 피해자가 지속적 괴롭힘으로 신고하지 않아 사건 수로 집계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속적 괴롭힘은 처벌의 수준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불과하여 처벌의 수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굳이 신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스토킹을 처벌하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원기관이 설치되면 스토킹 상담 및 지원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감안하여야 한다.¹¹⁹⁾

스토킹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에 대한 연구도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스토킹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지,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별법을 마련하는 초기에는 기존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에서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성격이 다른 각 시설에서 산발적으로 피해자를 상담, 지원하게 되면 스토킹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안 마련을 위한 경험의 축적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중앙센터를 한 곳이라도 설치하여 스토킹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지원 기관에 피해자를 연계하며, 다른 지원 시설에서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례를 집적하여 향후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스토킹 상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스토킹 관련 정책의 마련 등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¹²⁰⁾

2)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119) 수도권 거주 16~59세 남녀 1,200명을 조사한 박철현 외(2000)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스토킹 피해 경험은 남성 4.2%, 여성 6.6%에 달하였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연간 스토킹 피해 인원수를 추산하면 약 175만 명이 된다. 박철현 외(2000),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0) 17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염동연 의원안에서 스토킹피해센터의 설치가 제안되었던 바 있다. 염동연 의원 대표발의,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172815, 제안일 2005.9.27.

정보가 추가로 제공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거지나 학교, 직장 등의 정보, 가족 관련 사항 등 피해자나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면 스토킹이 더욱 확대되고 후속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신고 이후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행위자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피해자, 신고자 보호 조치를 준용하고 보복 우려 요건을 적용 제외하고 있다.(제22조) 이에 따라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조서 등 서류를 작성할 때 피해자나 신고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고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검사가 별도로 관리하며,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에도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나 신고자, 그 법정대리인은 인적사항 기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다. 인적사항 기재 생략한 피해자나 신고자를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할 때에도 판사는 증인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판사는 증인의 인적사항이 신원확인, 증인선서, 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원관리카드는 사유를 소명하고 검사의 허가를 얻어 열람가능한데, 열람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른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이다.

스토킹 사건 역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을 비롯하여 피해자 및 신고자의 정보를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는 변호인이 피고인의 변호에 필요한 경우 검사의 허가에 따라 신원관리카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스토킹 사건에서는 그 허가를 더욱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제1항은 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열람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라는데 본질이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나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갖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열람 허용의 범위를 더욱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승낙, 위험성평가 등 별도의 열람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신변 안전조치

법안들은 모두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두고 있다. 각 법안의 공통적인 사항을 먼저 살펴보면, 첫째,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검찰청장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자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판사는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신고자는 판사, 검사, 주거지나 현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각 법안은 신변안전조치의 요건이나 종류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김제남의 원안, 이낙연 의원안은 신고자만 대상으로 둔 반면에 남인순의원안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인순의원안에서는 판사, 검사,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도 신고자 또는 피해자이다. 또한 김제남의원안과 이낙연의원안에서는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남인순의원안은 보복 우려 대신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였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를 보면, 이낙연의원안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였고, 김제남의원안과 남인순의원안은 법안에 직접 나열하였다. 김제남 의원안에서 신변안전조치는 총 5가지로,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이다. 남인순의원안은 이 중에서 시설 보호를 제외한 네 가지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시설 보호를 제외한 것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 연계를 경찰의 응급조치 중 하나로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고 후의 응급조치만으로는 대상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고,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대상자 신변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될 수 있기 때문에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 문제는 대상과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스토킹은 1회로 중단되지 않는 행위의 속성상 스토킹을 신고한 사람 뿐만 아니라 스토킹의 직·간접적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 따라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신고자만을 신변안전조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신고자 외에 피해자에게도 신변안전조치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신변안전조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점에서 남인순의원안은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로는 주기적 순찰의 범위를 대상자의 주거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스토킹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 피해자의 직장 부근이라면, 주거지가 아닌 직장 부근의 순찰이 필요할 것이다. 주거로 제한하지 말고 대상자의 위험에 따라 순찰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24시간 지원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직접 순찰 외의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호 나목)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13조의2제4호)에서는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보호에 주기적 순찰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4)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보호 및 지원

19대 국회 이후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 중에서 남인순의원안은 수사,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스토킹 범죄 전담부, 피해자변호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배려이다. 먼저 피해자 조사 및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 전담 검사를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고, 이들에게 스토킹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법원에서는 스토킹 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스토킹 범죄를 재판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피해자변호사 제도를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때에는 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 참여 및 의견진술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 출석 및 의견진술권,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 열람·등사권, 기타 피해자등의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배려 조항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소송관계인은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후유장애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피해자 조사, 심리·재판 시에는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명시하였다.

경찰, 검찰, 법원에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도록 하는 조항은 현재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들이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제도들이다. 스토킹 또한 여성폭력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남성중심적 이성에 각본 아래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관계 맺기나 허용되는 구애 행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과민하다고 평가되거나 피해자의 고통이 무시되고 도리어 스토킹의 원인 제공자로 여겨져 비난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당연히 요청되는 사항이며,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역시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향후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이어서, 스토킹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상의 지원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증인신문 시의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스토킹 처벌에 대한 특별법에 규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화상증언을 하도록 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65조의2).

스토킹 범죄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하여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인 부담을 느껴 진술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이야기하는 ‘범죄의 성질’에 해당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에 대한 특별법에서 화상증언 또는 차폐시설을 이용한 증언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를 재확인하고 시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안

가. 법안의 구성체계

이 법은 총 5장 23개의 조문과 부칙(3개의 조문)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토킹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였다. 제2장 ‘스토킹 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에서는 응급초치, 신변안전조치 등을,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등’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기간, 임시보호명령 등을 규정하였다. 제4장 ‘피해자보호조치 등’에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불이익 처우의 금지, 피해자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상황 통지,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규정하였다. 제5장 ‘벌칙’에서는 벌칙,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응급조치 등의 불이행죄,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죄 등을 규정하였다.

제1장 총칙	i) 목적 ii) 정의 ii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iv) 스토킹 실태조사
제2장 스토킹 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i) 응급조치 등 ii) 신변안전조치, iii)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등 iv) 고소제하에 대한 예외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등	i)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ii) 피해자보호명령 iii)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iv) 임시보호명령 v) 다른 법률의 준용
제4장 피해자보호조치 등	i)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ii) 불이익 처우의 금지 iii)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 통지 iv)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v)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
제5장 벌칙	i) 벌칙 ii)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iii) 응급조치 등의 불이행죄 iv)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죄

나. 법안의 주요 골자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 법은 스토킹 범죄의 형사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및 사생활의 안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둘째, 이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음에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i)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ii) 주거지·근무지·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iii)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iv)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v)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와 그밖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생활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만한 두려움을 주는 등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안 제2조제1항).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스톡킹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3조).

넷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스톡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톡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안 제4조).

다섯째, 스톡킹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행위자에게 스톡킹 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였다(안 제6조).

여섯째,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7조).

일곱째,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1조).

여덟째,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5조).

아홉째, 사용자가 스톡킹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안 제16조).

열째, 스톡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은 직권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재판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형집행정지·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7조)

열하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9조)

열둘째,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1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1조).

열셋째, 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보호명령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안 제22조 제1항, 제2항)

열넷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안 제22조3항)

열다섯째,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안 제22조제4항).

열여섯째,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제23조).

다. 법안 시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스톡킹 범죄의 형사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및 사생활의 안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스토킹”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음에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지근무지·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또는 물건(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한 물건 등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6. 그밖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생활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만한 두려움을 주는 등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

② “행위자”란 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③ “피해자”란 스톡킹의 직접적인 대상자로서 제1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톡킹 범죄의 예

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스토킹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토킹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스토킹 범죄의 처리 절차에 관한 특례

제5조 (응급조치 등) ① 스토킹 범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즉시 중단할 것을 통보 및 스토킹을 계속할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기재한 서면으로 경고
3. 피해자에게 제6조의 신변안전조치 신청, 제11조의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제19조의 피해자지원기관의 지원 등을 안내
4.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피해자지원기관에 연계
5.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6. 피해자에 대한 우편·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단을 이용한 접근금지
7.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서의 유치장예의 유치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청구는 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의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응급조치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해당 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 (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직권 또는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신고자 또는 피해자는 판사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찰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수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며, 그 즉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등

제9조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제10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한다.
- ③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 및 항고·재항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2. 피해자에 대한 우편·전화·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단을 이용한 접근금지
3.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등 피해자로부터 격리
4. 그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판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10조제1항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준용) 스톡킹 범죄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5, 제55조의7부터 제55조의9까지를 준용하되, “가정폭력범죄”는 “스토킹 범죄”로 본다.

제4장 피해자지원조치 등

제14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불이익 처우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는 스톡킹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 통지) ① 스톡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재판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형집행정지·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신고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변동 상황의 통지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스톡킹 범죄의 피해자 등 또는 스톡킹 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톱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별도의 피해자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제19조 (벌칙) 스톱킹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스톱킹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1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톱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 조에서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⑤ 스톱킹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1조 (응급조치 등의 불이행죄) ① 제5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응급조치(법원이 응급조치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아니 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사람(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이수명령을 부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죄) 제15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개의 스톡킹 범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를 삭제한다.

참고문헌

- 강용길 외(2016), “데이트 폭력’의 예방 및 대응관련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1호.
- 곽영길·임유석·송상욱(2011), “스토킹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7권 제3호.
- 국회예산정책처(2016),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김성룡(2007), “독일의 ‘스토킹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 김학태(2011), “독일과 한국에서의 스톱킹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U연구』 제28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김한균(2014),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법제화의 전략”,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 스톱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자료집(2014.4.16.).
- 김현아(2015),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제7권 1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남궁석(2015.6.),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보고서”(남인순의원 대표발의(2015.2.13.)),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류병관(2014), “데이트 폭력에 있어 피해자 보호방안- 미국의 데이트 폭력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경상법학』 제22권 제3호(2014.7.),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선영 외(2013),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Ⅰ): 낙태 규제와 여성의 대표성 관련 심층 분석 및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선영 외(2014), 「여성 가족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출생등록의 무자 및 스톱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응광(2015),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법적 문제: 일본의 DV(Domestic Violence)방지법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3호.

- 박철현 외(2000),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희영(2007), “사이버스토킹의 형벌규정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연구”, 『선진상사법률』 제39호, 법무부 상사법무과.
- 배수희·손승영(2015),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과 인식의 여성주의적 분석”, 『여성학연구』, 제26권 제1호.
- 손문숙·조재연(2016), “데이트 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의전화.
- 송란희(2016), “한국의 스토킹 피해 실태 및 특징”,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회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교토여자대학교 공동주최, 한일 심포지엄: 스토킹 피해 실태 및 법적 대응 자료집(2016.8.25.).
- 여성가족부(2013), 「2013년 성폭력실태조사」.
- 여성부(2002),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 이건호(2004),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그 한계,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와 법률적 대응방법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기현(2002), “스토킹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2호.
- 이성용(2012), 「스토킹 방지를 위한 선제적 행정경찰 작용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 이승우(2011),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2권 제1호.
- 이원상(2013), “스토킹 처벌 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민선(2015), “데이트 폭력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입법방향”, 『법제이슈브리프』, 제9권, 한국법제연구원.
- 장정범·이상철(2014),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제10권 제2호, 한국재난정보학회.
- 조훈(2003), “위법성 인식으로서의 Mens Rea”,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 최희진(2015), “처벌되지 않는 범죄 스토킹”,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년 제2차 젠더법 연구포럼 자료집(2015.5.7.).
- 탁희성 외(2011), 「2011년도 형법·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 제·개정안 분석과 입법정책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의전화(2015), “여성대상폭력에 대한 연구.”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3), 「해외 가정폭력방지 법·정책 및 활동」.
- 홍영오 외(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Lamplugh, D. and Infield, P.(2003), “Harmonising Anti-stalking laws”,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34(4),
- Paul E. Mullen et al.(2000), *Stalkers and their victi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 한국여성의전화 피해자 상담통계 각년도.

◎ 참고기사

- 한국경제(2016.4.30.), “경찰팀 리포트- 남자친구가 괴물로 변해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경고뿐”(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2956711#AA.11617085.1) 최종접속일: 2016.12.20.

◎ 참고 웹사이트

- 경찰청 보도자료(2016.02.02.), “연인 간 폭력(데이트 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전국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 구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연인 간 폭력 피해 집중신고기간(16.2.3~3.2)운영.”(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1&ntId=18111&menuNo=200067) 최종접속일: 2016.12.20.
- 뉴질랜드 Harassment Act 1997.(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1997/0092/latest/whole.html#DLM417732) 최종접속일: 2016.12.20.
- 몰타공화국 CRIMINAL CODE.(http://www.justiceservices.gov.mt/DownloadDocument.

aspx?app=lom&itemid=8574&l=1) 최종접속일: 2016.12.20.

아일랜드 Non-Fatal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1997.

미국 캘리포니아주 형법. (<http://www.leginfo.ca.gov/cgi-bin/displaycode?section=pen&group=00001-01000&file=639-653.2>) 최종접속일: 2016.10.01.

미국 캘리포니아주 Civil Stalking Law. (<http://www.victimsofcrime.org/our-programs/stalking-resource-center/stalking-laws/civil-stalking-laws-by-state/california>) 최종접속일: 2016.12.20.

미국 미시건주 PENAL CODE. ([http://www.legislature.mi.gov/\(S\(diwp4e55zxydhj45dobmaw45\)\)/mileg.aspx?page=getObject&objectName=mcl-750-411h](http://www.legislature.mi.gov/(S(diwp4e55zxydhj45dobmaw45))/mileg.aspx?page=getObject&objectName=mcl-750-411h)) 최종접속일: 2016.12.20.

호주 퀸스랜드주 Criminal Code Act 1899. (<https://www.legislation.qld.gov.au/LEGISLTN/CURRENT/C/CriminCode.pdf>) 최종접속일: 2016.12.20.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16.6.2016. (<http://www.legislation.sa.gov.au/LZ/C/A/CRIMINAL%20LAW%20CONSOLIDATION%20ACT%201935/CURRENT/1935.2252.UN.PDF>) 최종접속일: 2016.12.20.

호주 빅토리아주 Crimes Act 1958 Authorised Version incorporating amendments as at 17 September 2014. (http://www.legislation.vic.gov.au/Domino/Web_Notes/LDMS/PubLawToday.nsf/95c43dd4eac71a68ca256dde00056e7b/ef535bc564cbfcb1ca257d5700218585!OpenDocument) 최종접속일: 2016.12.20.

독일 형법. (<http://www.jusline.de/index.php?cpid=f92f99b766343e040d46fcd6b03d3ee8&lawid=3&paid=238>) 최종접속일: 2016.12.20.

캐나다 Criminal Code Act current to 2016-12-08 and last amended on 2016-06-17.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C-46/section-264.html>) 최종접속일: 2016.12.20.

벨기에 형법. (http://www.ejustice.just.fgov.be/cgi_loi/change_lg.pl?language=fr&la=F&table_name=loi&cn=1867060801) 최종접속일: 2016.12.20.

네덜란드 형법. (<http://www.wetboek-online.nl/wet/Sr/285b.html>)

오스트리아 형법.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10002296>) 최종접속일: 2016.12.20.

헝가리 형법. (http://net.jogtar.hu/jr/gen/hjegy_doc.cgi?docid=A1200100.TV) 최종접속일: 2016.12.20.

이탈리아 형법. (<http://www.altalex.com/index.php?idnot=36774>) 최종접속일: 2016.12.20.

룩셈부르크 형법. (<http://www.legilux.public.lu/rgl/2009/A/1889/A.html>) 최종접속일: 2016.12.20.

체코 형법. (<http://eagri.cz/public/web/mze/legislativa/ostatni/100304362.html>) 최종접속일: 2016.12.20.

폴란드 형법. (<http://statystyka.policja.pl/st/kodeks-karny/przestepstwa-przeciwko-4/63485,Grozba-karalna-art-190.html>) 최종접속일: 2016.12.20.

Metropolitan Police Service(2000), "Stalking and other forms of harassment: An investigator's guide."(<http://www.hamishbrownmbe.com/img/stalking.pdf>). 최종접속일: 2016.12.20.

Texas Constitution and Statutes. (<http://www.statutes.legis.state.tx.us/?link=FA>) 최종검색일: 2016.8.25.

Home Office(2012), "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A consultation: Summary of Responses"(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57807/consultation-responses.pdf) 최종접속일: 2016.8.25.

Abstract

Measures for Improving Legisl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Focusing on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Park, Seon-Young

Hwang, Jung-Im

Song, Chi-Seon

Kim, Hyun-Ah

Kim, Jeong-Hye

Korean society has been aware of the seriousness of violence against women, including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and has been continuously establishing legal systems to eradicate such violence.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women constitute most of the victims of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legal regulations are still weak in these areas, which have not been addressed by the efforts to protect women.

Currently,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can be punished under the Criminal Act if such behavior amounts to an established crime, such as violence(Article 260), intimidation(Article 283), intrusion upon human habitation(Article 317), illegal search of human habitation and body(Article 321), defamation(Article 307), insult(Article 311), and coercion(Article 324).

In addition, as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was fully amended on March 21, 2012, stalking came to be punished according to Article 3 Paragraph 1 (41) of the Act under the title “consistent harrassment”: Any person who requests to meet or date by consistently attempting approaches any third person or watches,

follows, or secretly waits for any third party against the explicit will of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one hundred thousand won, by misdemeanor imprisonment, or by a minor fine. Accordingly, stalking was included in the legal regulations and thus a legal basis for punishing stalking was provided, albeit being at a weak level.

However, even if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can be punished by applying the above-mentioned Criminal Act and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these laws catch the outer superficial behavior only and fall short of fundamental regulations. In the case of violence in relationships such as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most victims have already been delivered serious injuries when their assailants can be punished by applying the current criminal regulations. Also, it is crucial to protect the victims and prevent damage or injury before the occurrence of such violence, because unlike other crimes, such behavior as even very weak violence at first may gradually develop into a serious crime of violence. The regulations of the present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re limited in that the sentence for minor offences is extremely limited.

According to statistical data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the numbers of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cases have not recently decreased and the types of crimes are those of very intense violence, including murder, foul play, sexual violence, bodily injury, destruction and damage of property. Therefore, the government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and concluded "the Performance of Implementing the Project to Eradicate Four Major Social Evils and 2016 Plans" in its national policy coordination meeting on January 28, 2016. It is currently reviewing measures for making laws to reinforc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stalking.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improve laws related to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by preparing policy measures and bill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punishment of offenders in order to raise the national safety awareness of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This study includes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it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and analyzed their characteristics in reference to the official statistical data on crimes issued by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statistical data of counseling provided by support centers for female victims of violence, and the government's survey data on sexual violence.

Second, it looked into the current laws on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and analyzed their limitations. To this end, the study reviewed i) applicability and limitations of particulars of the Criminal Act, including intimidation (Article 283), special intimidation (Article 284), defamation (Article 307), insult (Article 311), coercion (Article 324), inflicting bodily injury (Article 257), intrusion on human habitation (Article 319), illegal search of human habitation and body (Article 321), extortion (Article 350), and destruction and damage, etc. of property (Article 366), ii) applicability and limitation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nd Act on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ii) applicability and limitations of "consistent harrasment" of Article 3 Paragraph 1(41) of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nd iv) applicability and limitations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which has the nature of general law on police enforcement.

Third, it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investigators or the police related to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and workers at support centers for victims of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including counseling centers and shelters for victims of violence. Through the interviews, we surveyed the interviewees' experiences and problems of taking action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and identified their experiences and difficulties of supporting the victims of violence. In other words, we additionally examined the applicability and limitations of related legal systems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s.

Fourth, it analyzed overseas legislative cases of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We

compared ways of regulation by laws (regulation by criminal law, regulation by special law) i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legal concepts of stalking, its requirements,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or not, the scope of the sentence, and measures for protecting the victims, then identifie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Fifth, it examined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in the existing support systems for victims of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and identified their problems in order to prepare ways for protecting and supporting victims of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Then we made suggestions for specific protective measures, including protection order, safety measures,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victims of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In the same manner as described above, we review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regarding the measures for punishing offenders of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then prepared measures for punishing the offenders and preventing repeated crimes. In particular, in preparing ways for complementing these systems, we reviewed bills on stalking that had been recently proposed since the 19th term National Assembly and referred to the strong and weak points of the bills.

Lastly, based on the above-mentioned discussions, the study presented measures for improving the legislation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and date violence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In other words, we examined a few feasible measures for improving the legis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then, in conclusion, prepared a draft proposal for legislating a law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nd protection of the victims.

연구보고 2016-44

여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2016년 12월 19일 인쇄

2016년 12월 23일 발행

발행인 : 강 은 희

발행처 :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000 (代)

인쇄처 : (주) 서보미디어

전화 / 02-2253-7800 (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3000-000789-01